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유해미·박은정·홍희정·신윤정·송신영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저

자

유해미, 박은정, 홍희정, 신윤정, 송신영

연구진

연구책임자 유 해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홍 희 정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신 윤 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 신 영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0-01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발행일 2021년 5월
발행인 박상희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04535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90485-81-4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06년부터 주력해 온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여전히 힘겨운 과제로 남겨져 있으며, 무엇보다도 연일 불거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우리사회가 아동의 생존권조차 온전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직면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으로 아동돌봄 분야는 긴급돌봄 대응 등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이처럼 복잡해진 육아지원의 정책 환경 하에서 지난해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에서는 영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 수요를 반영하는 영아수당을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발달을 지원하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영아수당의 목표와 기대효과를 보다 명료화하고, 세부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아동수당 등 타 제도와와의 관계를 포괄하여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0~1세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와 도입 방식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고, 영아기에 부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외국사례도 비교분석하였다.

이 보고서가 영아자녀의 양육에 도움이 되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연구과정에 참여해주신 부모님들과 고견을 주신 전문가들께도 감사를 전한다. 보고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21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목차

요약	1
I. 서론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및 절차	14
II. 연구의 배경	21
1. 영아의 발달 특성과 양육환경	23
2.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	25
III. 영아 대상 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33
1. 아동관련 수당 지원	35
2. 돌봄서비스 지원	37
3.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50
IV. 외국사례 및 시사점	61
1. 독일	63
2. 프랑스	81
3. 스웨덴	97
4. 핀란드	112
5. 종합 비교 및 시사점	123
V. 영아수당의 기대 인식과 요구	129
1. 0~1세아 양육 실태와 어려움	131
2. 0~1세아 양육방식의 선호도와 육아지원 욕구	153
3.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과 지원방식에 관한 요구	177

4. 소결	198
VI. 정책 방안	203
1.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05
2. 영아수당의 세부 도입 방안	210
3. 영아수당의 중장기 발전방안	214
참고문헌	219
부록	227
1. 설문조사표: 부모용	227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241



표 목차

〈표 Ⅰ-3- 1〉 설문조사 세부 항목	16
〈표 Ⅰ-3- 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17
〈표 Ⅰ-3- 3〉 심층면담 세부 항목	18
〈표 Ⅰ-3- 4〉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징	19
〈표 Ⅱ-2- 1〉 낮 시간 동안 주양육자	26
〈표 Ⅱ-2- 2〉 아동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	27
〈표 Ⅱ-2- 3〉 만 0, 1, 2세 양육가구의 주양육 실태와 선호하는 양육방식	28
〈표 Ⅱ-2- 4〉 가정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 동기	29
〈표 Ⅲ-1- 1〉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2021)	36
〈표 Ⅲ-1- 2〉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규모 추이(2014~2021)	36
〈표 Ⅲ-2- 1〉 만 0~5세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1)	38
〈표 Ⅲ-2- 2〉 만 0~5세 보육료 지원 단가(2021)	39
〈표 Ⅲ-2- 3〉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지원 단가(2021)	40
〈표 Ⅲ-2- 4〉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 아동연령(2021)	42
〈표 Ⅲ-2- 5〉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차등지원 금액(2021)	43
〈표 Ⅲ-2- 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2021)	43
〈표 Ⅲ-2- 7〉 0~1세아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규모 (2019~2020)	44
〈표 Ⅲ-2- 8〉 시간제(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중 0~1세아 비율 추이(2012~2020)	45
〈표 Ⅲ-2- 9〉 시간제보육 지원내용(2021)	46
〈표 Ⅲ-2-10〉 0~1세아의 시간제보육 공급 현황(2021.1)	46
〈표 Ⅲ-2-11〉 0~1세아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급 현황(2021. 1)	48
〈표 Ⅲ-2-12〉 0~1세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 현황(2021. 5)	49
〈표 Ⅲ-3- 1〉 출산전·후휴가 주요내용(2021)	51
〈표 Ⅲ-3- 2〉 출산전·후휴가 지원내용(2021)	51
〈표 Ⅲ-3- 3〉 단태아,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수준(2021)	52
〈표 Ⅲ-3- 4〉 배우자 출산휴가의 주요내용(2021)	53
〈표 Ⅲ-3- 5〉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2021)	54
〈표 Ⅲ-3-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내용(2021)	56

〈표 III-3- 7〉 가족돌봄휴가제도의 주요내용	58
〈표 IV-1- 1〉 독일의 아동수당 지급액(2002/2010/2020/2021)	68
〈표 IV-3- 1〉 스웨덴의 아동수당 지급액(2021)	102
〈표 IV-3- 2〉 스웨덴의 이혼가정 대상 아동수당 지급액(2021)	103
〈표 IV-4- 1〉 핀란드의 아동수당 지급액(2021)	114
〈표 IV-4- 2〉 올란드의 아동수당 지급액(2021)	114
〈표 IV-5- 1〉 4개국 현금급여 제도 비교	124
〈표 V-1- 1〉 24개월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평일 기준)	132
〈표 V-1- 2〉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주양육자의 희망 양육방식 여부:	
1) 전반	133
〈표 V-1- 3〉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희망 양육방식 여부:	
2) 주양육자별	134
〈표 V-1- 4〉 24개월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별 희망 양육방식 여부:	
3) 가족형태별	135
〈표 V-1- 5〉 24개월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별 희망 양육방식 여부:	
4) 직종별	135
〈표 V-1- 6〉 24개월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별 희망 양육방식 여부:	
5)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35
〈표 V-1- 7〉 (현재 주양육자가 희망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24개월 미만 자녀의 희망 양육방식	136
〈표 V-1- 8〉 24개월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	138
〈표 V-1- 9〉 24개월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의	
적합성 인식 여부	139
〈표 V-1-10〉 24개월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시기가	
빠른 이유(중복응답)	141
〈표 V-1-11〉 어린이집 이용 중인 24개월 미만 자녀의	
서비스 병행이용(정기적) 여부	143
〈표 V-1-12〉 어린이집 이용 중인 24개월 미만 자녀의 병행이용	
서비스 내용(중복응답)	144
〈표 V-1-13〉 어린이집 이용 중인 24개월 미만 자녀의 병행이용	
서비스 월평균 지출비용	146
〈표 V-1-14〉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비용/부담 정도:	
1) 돌봄서비스 이용비용/부담 정도	147

〈표 V-1-15〉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비용/부담 정도:	
2) 육아용품 구입비용/부담 정도	149
〈표 V-1-16〉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 1순위/1+2순위	150
〈표 V-1-17〉 주요 변인별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 (1순위 기준)	150
〈표 V-1-18〉 24개월 미만 자녀의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한 퇴직 경험 유무	151
〈표 V-1-19〉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주된 퇴직 사유	153
〈표 V-2- 1〉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자녀연령	154
〈표 V-2- 2〉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 적정 자녀연령	155
〈표 V-2- 3〉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1+2순위	158
〈표 V-2- 4〉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1) 전반	158
〈표 V-2- 5〉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2) 주양육자별	160
〈표 V-2- 6〉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60
〈표 V-2- 7〉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1+2순위	161
〈표 V-2- 8〉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1) 전반	161
〈표 V-2- 9〉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2) 주양육자별	163
〈표 V-2-10〉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63
〈표 V-2-11〉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 1순위/1+2순위	165
〈표 V-2-12〉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1순위): 1) 전반	165
〈표 V-2-13〉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1순위): 2) 주양육자별	166
〈표 V-2-14〉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1순위): 3) 가족형태별	167
〈표 V-2-15〉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1순위): 4)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67
〈표 V-2-16〉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 1순위/1+2순위	168
〈표 V-2-17〉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1) 전반	168
〈표 V-2-18〉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2) 주양육자별 ..	169

〈표 V-2-19〉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3) 가족형태별	170
〈표 V-2-20〉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4) 직업별	170
〈표 V-2-21〉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5)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71
〈표 V-2-22〉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1) 전체	172
〈표 V-2-23〉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2) 맞벌이 가구 여부별	173
〈표 V-2-24〉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73
〈표 V-2-25〉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 인식: 1) 전체	174
〈표 V-2-26〉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 인식:	
2) 맞벌이 가구 여부별	175
〈표 V-2-27〉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 인식: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76
〈표 V-3- 1〉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1) 전체	178
〈표 V-3- 2〉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2) 맞벌이 가구 여부별	179
〈표 V-3- 3〉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79
〈표 V-3- 4〉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4) 출생순위별	180
〈표 V-3- 5〉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5) 월평균 가구소득별	181
〈표 V-3- 6〉 영아수당 지급 시 희망하는 육아 가능성 여부: 1) 전반	182
〈표 V-3- 7〉 영아수당 지급 시 희망하는 육아 가능성 여부:	
2) 주양육자별	183
〈표 V-3- 8〉 영아수당 지급 시 희망하는 육아 가능성 여부:	
3) 희망하는 양육방식별	183
〈표 V-3- 9〉 영아수당 지급 시에도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힘든 이유	184
〈표 V-3-10〉 영아수당 지급 시에도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힘든 이유:	
1) 주양육자별	186
〈표 V-3-11〉 영아수당 지급 시에도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힘든 사유:	
2) 희망하는 양육방식별	186

〈표 V-3-12〉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1) 전체	188
〈표 V-3-13〉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2) 직업별	189
〈표 V-3-14〉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3) 맞벌이 가구 여부별	189
〈표 V-3-15〉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4)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89
〈표 V-3-16〉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5) 자녀수별	190
〈표 V-3-17〉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6) 월평균 가구소득별	192
〈표 V-3-18〉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1) 전체	192
〈표 V-3-19〉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2) 맞벌이 가구 여부별	193
〈표 V-3-20〉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193
〈표 V-3-21〉 24개월 미만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위한 영아수당액: 1) 전반	194
〈표 V-3-22〉 24개월 미만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위한 영아수당액: 2) 주양육자별	195
〈표 V-3-23〉 24개월 미만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위한 영아수당액: 3) 희망하는 양육방식별	195
〈표 V-3-24〉 영아수당 희망 지급방식	197
〈표 V-3-25〉 (바우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영아수당 바우처의 사용 항목	198



그림 목차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분석내용	20
[그림 III-1-1]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율(2019)	37
[그림 III-2-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과 유치원 취원률(2019)	39
[그림 III-2-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2008~2019)	40
[그림 III-2-3] 0~1세아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규모 (2019~2020)	44
[그림 III-2-4] 시간제(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중 0~1세아 비율 추이(2012~2020)	45
[그림 III-3-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자 추이(2010~2019)	55
[그림 III-3-2] 성별 육아휴직자 추이(2010~2019)	55
[그림 III-3-3]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추이(2011~2018)	57
[그림 IV-1-1] 독일의 부모수당 지급률(2008~2016)	80
[그림 IV-2-1] 프랑스의 연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94~2018)	83
[그림 IV-2-2] OECD 국가의 모성 고용률(2019)	84
[그림 IV-2-3] OECD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	85
[그림 IV-2-4] 프랑스 0~2세아의 주중 낮 시간 주양육자 비율(2013)	86
[그림 V-1-1]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주양육자의 희망 양육방식 여부: 전체	134
[그림 V-1-2] 24개월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의 적합성 인식 여부: 전체	140
[그림 V-2-1]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0세아/1세아 비교	164
[그림 V-2-2] 맞벌이 가구에 적합한 양육방식(1순위): 0세아/1세아 비교	171
[그림 V-2-3]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 인식: 0세아/1세아 비교	177
[그림 V-3-1]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방식 선택권 보장 여부	181
[그림 V-3-2]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항목별 평균점수 비교	188
[그림 V-3-3] 영아수당 희망 지급방식	196
[그림 VI-2-1] 영아수당 도입 방안	211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이하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영아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영아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함.
 - 현재 0~1세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영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충족하고자 함.
- 영아수당은 제도 도입에 앞서 그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논거를 요함.
 - 모든 아동의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특히 0~1세아에 집중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현금지원 방식이 부모의 선택권 보장 등에 효과적인 방식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현재 영아 대상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 특성과 영아수당이 0~1세아를 둔 부모의 다양한 육아지원 욕구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함.

나. 연구내용

- 영아의 발달 특성, 영아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호도, 양육지원 요구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영아 대상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 현황과 각 제도별 이용률 및 이용자 특성을 파악함.
- 아동수당에 더하여 영아기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외국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도입의 배경, 지원내용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0~1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영아수당의 필요도와 기대효과, 즉, 영아수당

의 필요도 및 도움 정도 인식, 가구특성별 양육방식 선호도, 영아수당의 부모 선택권 보장 등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영아수당 지원방식에 관한 요구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영아수당 도입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및 절차

□ 연구방법

-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 조사
- 통계자료 분석
- 설문조사: 0~23개월 자녀를 둔 총 506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수당 수요 파악
- 심층면담: 18인을 대상으로 총 7차에 걸쳐 실시

□ 연구 절차 및 분석틀

연구 절차	분석내용
선행연구 검토	- 영아의 발달 특성과 양육환경 -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 및 요구 → 영아 발달에 부합하는 환경과 육아지원 요구 파악
영아 대상 육아지원제도 및 이용 현황 조사	- 아동관련 수당 지원 - 돌봄 및 육아지원서비스 -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제도: 육아휴직제도 등 → 0~1세아 육아지원제도의 이용 추이와 이용가능성 등 파악
외국사례 분석: 영아집중 수당지원	- 독일: 부모수당 등 - 프랑스: 영아보육수당 등 - 스웨덴: 부모수당 등 - 핀란드: 양육수당 등 → 영아자녀에 대한 현금지원제도의 종합 비교 및 시사점 도출
영아수당 관련 요구 조사 (설문조사 + 심층면담)	- 0~1세아 양육 실태 및 어려움 - 0~1세아 양육방식의 선호도와 육아지원 요구 -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과 지원방식에 관한 요구 → 영아수당의 기대효과, 세부 도입 방안 도출
↓	
영아수당의 필요도와 기대효과 제시 / 세부 도입 방안 제안	

2. 연구의 배경

가. 영아의 발달 특성과 양육환경

- ☐ 영아기는 생애 발달의 기초를 이루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발달 특성상 주양육자의 전적인 돌봄과 양질의 양육이 요구됨.
- ☐ 영아기 발달에 있어 주양육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이러한 역할은 가정내 양육자 특히 어머니에 한정되지 않으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서비스 질을 담보할 경우 아동 발달에 부정적이지 않다고 밝혀진 바 있음.

나.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

- ☐ 영아기 내에서도 각 연령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현금지원과 자녀돌봄 시간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음.

3. 영아 대상 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가. 아동관련 수당 지원

- ☐ 아동수당제도
 -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같은 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21년 기준 지원대상 아동수는 247만 2천명임.
- ☐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인 최대 86개월 미만 전(全)계층 아동임.
 - 2019년 기준으로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율은 0~11개월과 12~23개월 아동이 각각 40.9%와 30.9%로 가정내 양육에 대한 선호를 확인시켜줌.

나. 돌봄서비스 지원

- ☐ 보육료

- 연도별 0~1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살펴보면, 영아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2년 이후로도 특히 0세아(보육연령 기준)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 이하 수준에 그쳐 가정내보육 선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2019년 기준으로 0세아는 0.3%, 1세아는 0.6%가 이용함.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중에서 0~1세아의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0세아는 9%, 1세아는 13.5% 선임.

□ 시간제보육

- 2021년 1월 기준으로 총 6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해의 각 시·도별 0~1세아 수를 기준으로 1개소 당 아동수는 최소 346명(대전)부터 최대 2,036명(경기)으로 지역적 격차가 두드러짐.

□ 기타 육아지원서비스

- 2021년 1월 기준으로 공동육아나눔터는 총 331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122개소가 전국적으로 설치됨.

다.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 출산전·후휴가제도

□ 육아휴직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 외국사례 및 시사점

가. 독일

- 아동수당(Kindergeld), 부모수당(Elterngeld), 양육수당(Betreuungsgeld)을 다룸.

- 부모수당은 부모수당 플러스 및 파트너십 보너스를 도입하여 부모가 자녀돌봄과 근로시간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다둥이와 저

소득층 가구까지 포괄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 및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관련되어 있음.

나. 프랑스

-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AF), 취약 가정의 영아를 위한 수당, 영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을 다룸.
 - 영아보육수당에는 출산입양장려금, 기초수당, 자녀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자녀교육분담 수당이 포함되어 다양한 수요에 부응함.

다. 스웨덴

- 아동수당(Barnbidrag), 부모보험 및 부모수당 등을 다룸.
 - 부모수당은 자녀의 부모이거나 양육권이 있는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 학생 또는 구직 대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고, 스웨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할 수 있음.

라. 핀란드

- 아동수당(Child Benefit), 양육수당 (Child Care Allowance), 출산보조금 (Child Care Grant)을 다룸.
 - 양육수당은 생후 1개월 이상 3세 미만의 아이를 둔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직접 돌볼 때 지급되며, 민간양육수당, 유연양육수당이 포함됨.

5. 영아수당의 기대 인식과 요구

가. 0~1세아 양육 실태와 어려움

- 0~1세아의 평일 낮 시간 동안 주양육자는 부모(육아휴직 포함)가 59.1%로 과반을 넘고,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24.7%, 조부모 10.7% 순으로 조사됨.
- 현재 0~1세아의 주된 양육방식이 희망하는 양육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9%로 조사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비율은 0세아는 18.8%, 1세아는 28.9%이고, 이들

가구에서 어린이집이 희망하는 양육방식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68.0%임.

-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 자녀연령은 평균 11개월이며, 12~18개월이 4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6~11개월이 26.4%, 3~5개월 19.2% 순으로 조사됨.
-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가 적합하였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비율은 36.8%이고, 해당 시기가 이르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0.8%로 나타남.
-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에서 부모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5%이고, 어린이집과 병행하여 이용 중인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평균 724,400원으로 조사됨.
- 0~1세아 양육 시의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염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와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각각 36.4%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 0~1세아 양육방식의 선호도와 육아지원 욕구

- 0~1세아를 둔 부모들이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자녀연령은 평균 33.2개월, 어린이집 입소에 적합한 자녀연령은 평균 31.9개월로 조사됨.
-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으로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하여 각각 49.6%와 61.5%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 부모가 일할 경우 0세아를 누가 돌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부모의 직접돌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와 1, 2순위를 합하여 각각 46.0%와 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0세아(0~11개월)의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제도가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3.80점, 가정양육수당 3.75점,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72점 순으로 조사됨.

다.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과 지원방식에 관한 요구

- 정부에서 현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세와 0~1세아가 각각 3.97점(5점 만점)과 3.95점으로 높은 수요를 보임.

- 영아수당을 도입할 경우 영아자녀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8.9%임.
- 0~1세아(0~23개월) 대상 영아수당의 도입이 이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자유로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이 평균 3.80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됨.
- 0~1세아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정한 영아수당액은 평균 606,3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41~50만원 27.3%, 51만원 이상이 30.2%로 조사됨.
- 영아수당의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이 59.9%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바우처와 현금을 합한 방식 25.3%, 바우처 14.4% 순으로 조사됨.

6. 정책 방안

가.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성: 부모의 직접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영아기 자녀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원할 만함.
- 영아수당의 기대효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내보육 등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할 여지가 일부 있음.

나. 영아수당의 세부 도입 방안

- 지원내용: 현금지원의 확대가 다양한 육아지원 수요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가구특성별로 그 효과성을 진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 지원대상: 정부가 현금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는 0~1세와 1~2세아가 비슷한 수요를 보이고 외국사례에서도 영아기 집중투자 기간은 만 2세까지 포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 2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점검할만함.
- 지원수준: 희망하는 양육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영아수당액으로 평균 약 60만원으로 응답하였으므로 아동수당 10만원을 반영하면 영아수

당액은 50만원 선을 고려할 만함.

- 지원방식: 영아수당의 지원방식으로는 현금 수요가 높으므로(응답률 59.9%) 해당 수요를 반영하되, 그 목적 부합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됨.

다. 영아수당의 중장기 발전방안

- 타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 2세아부터 적용되는 가정양육수당의 변화,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육아 휴직제도 이용률 변화 등을 포괄하여 육아지원 전반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검토가 요구됨.
-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종합적 설계 모색
 - 영아수당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2~5세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제도의 발전 과정 등을 감안하여 향후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의 종합적인 설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I

서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03 연구방법 및 절차

I. 서론

제1장에서는 영아수당 도입의 배경 등을 파악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명료화하고, 영아수당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연구 절차 및 분석내용을 제시하였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이하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는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영아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영아수당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¹⁾ 현재 0~1세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영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에 충족하고자 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즉,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보육료(부모보육료 47만원, 기관보육료 50만원)를 지급받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시에는 0세아는 20만원, 1세아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각각 지급받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영아수당을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이러한 시도는 0~1세아의 발달 특성과 양육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이 0세아의 경우 3.4%, 1세아의 경우 36.6%에 불과하고, 부모의 직접양육을 선호하는 비율이 만 0세아의 경우는 98.6%, 만 1세아의 경우는 85.9%로 높게 나타난 점을 그 배경으로 들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1: 77). 영아의 기관 이용률이 낮고 부모의 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상황에서 보육료 지원 위주의 육아지원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영아기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지급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12. 15), 보도자료:「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하게 만들겠습니다.

하고, 2025년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로 지출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와 육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아수당은 모든 0~1세아를 대상으로 기존의 아동수당에 더하여 영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해당 연령에 속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함과 동시에 영아를 둔 부모에게는 양육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이에 앞서 2019년에 발표된 수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육 공공성 미흡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아동 중심의 양육지원체계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언급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1). 양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과 연계한 아동수당 확대 및 양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왔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19: 19). 특히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등으로 인해 그 폐지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어린 자녀는 부모가 직접 돌보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육아휴직제도는 대기업 위주로 활용되는 등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어린 자녀의 부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추가적인 장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아수당은 제도 도입에 앞서 그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논거를 요한다. 모든 아동의 발달 및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그 연령으로 보아 영아기, 특히 0~1세아에 보다 집중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현금지원 방식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0~1세아의 낮은 어린이집 이용률은 영아수당을 새롭게 도입하는 주된 배경으로 언급되나, 성평등 차원에서 공보육 인프라의 공급 수준은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물론이고 여성 위주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핵심적

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기관의 서비스 질과 무관하게 영아기의 발달 특성상 이외 연령대에 비해 부모의 직접양육 또는 가정내 양육이 보다 선호되는 경향도 뚜렷하다. 그러므로 영아수당이 이처럼 다양한 부모의 여건과 욕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0~1세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질문에 대한 점점이 요구된다. 첫째,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택권 강화 효과로서, 육아휴직 제도 이용률의 전반적인 제고와 해당 제도의 남성 이용률 제고, 둘째, 가정내 양육에 대한 선택권 보장 강화로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능성 제고(민간 육아도우미 포함)와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시간제보육 등) 이용가능성 제고, 셋째, 종일제보육의 접근성 제고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영아 대상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이용 특성, 그리고 이들 지원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영아수당이 이들 한계점을 해소할 여지가 있는지, 궁극적으로 0~1세아를 둔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양육방식을 보장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구체적인 도입 방식을 제안하였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발달 특성과 영아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호도와 양육 지원 요구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영아의 발달 특성과 영아기 재정투자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영아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시 어려움과 양육방식에 대한 선호도 등 수요를 파악한다.

둘째, 영아 대상의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 현황을 조사하고, 각 제도의 이용률과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돌봄서비스 분야는 해당 인프라의 공급 수준을 조사하여 실제 이용가능성을 진단하고, 선별적인 제도의 경우는 사각지대 현황도 파악한다. 그 밖에도 개별 사업 및 제도의 지원대상 등 주요내용을 이해함은 물론,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 간 상충 또는 정합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셋째, 아동수당에 더하여 영아기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는 외국사례를 조사하여 제도 도입의 배경 및 연혁, 지원내용, 유관 제도와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해당 국가로는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핀란드를 살펴본다.

넷째, 0~1세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 영아수당의 필요도와 기대효과를 조사한다. 즉, 영아수당의 필요도 및 도움 정도 인식, 가구특성별 양육방식 선호도, 영아수당의 부모 선택권 보장 등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영아수당 지원방식 등에 관한 요구에 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과성 제고를 위한 영아수당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및 절차

이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방법

1) 문헌연구와 인터넷 자료 조사

가) 문헌연구: 영아 발달과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 및 요구 관련 선행연구 검토

영아기 발달의 특성 및 중요도와 그에 부합하는 양육환경 구성에 관한 논의와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 및 선호도, 양육 시 어려움과 지원 요구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다루었다.

나) 인터넷 자료 조사 1: 영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 조사

0~1세아 대상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을 조사하여 위해 관련 지침 및 업무편람(보육사업안내,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복지포(<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조사하였다.

다) 인터넷 자료 조사 2: 외국의 영아 대상 수당지원 현황 조사

OECD 국가의 모(母)고용률,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중 등을 파악하기 위해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 독일의 수당제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WSI GenderDatenPortal(<https://www.wsi.de>) 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라) 인터넷 자료 조사 3: 전국지역의 육아지원서비스 공급 현황 조사

전국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 시간제보육시설의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시간제보육 기관 찾기(<http://www.childcare.go.kr>)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자료를 추출하였다.

2) 통계자료 분석

전국 시·도의 시간제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급 수준을 각 지역별 2021년 1월 기준 아동인구수(0~1세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0~1세 인구수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현황(<http://kosis.kr>)을 활용하였다.

3)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영아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영아수당의 필요도와 도움 정도 인식, 특히 기대효과 측면에서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효과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0~23개월 자녀를 둔 총 506 가구이며, 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효과를 진단하기 위해 영아수당의 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맞벌이 가구와 육아휴직 유경험 가구는 각각 40%와 20% 선으로 임의 할당 하였다. 조사는 전문조사업체 패널을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결과는 그 규모가 제약되는 등 일반화의 한계를 지님을 밝혀둔다.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1)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애로사항, 희망하는 양육방식 여부 및 그 사유, 2) 0~1세아(0~23개월) 자녀의 육아지원 요구, 3) 영아수당의 필요도와 도움 정도 인식과 지원방식 등이다. 세부 질문 항목은 이하 <표 I-3-1>과 같다.

〈표 I-3-1〉 설문조사 세부 항목

조사 영역	질문 항목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	• 주중 낮 시간 주양육자 • 주양육자의 희망양육 방식 여부 / 희망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그 사유 • (어린이집 이용가구)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 •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의 적합성 및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 어린이집과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 여부 및 해당 이용비용 • 돌봄서비스/육아용품 이용비용 및 부담 정도 인식 • 자녀양육 시 어려움 •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력단절 경험 여부 및 세부 사유
0~1세아 육아지원 요구	•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자녀연령 • 어린이집 이용에 적합한 자녀연령 • 0~1세아에 적합한 정부지원 방식 • 맞벌이 가구에 적합한 육아지원 방식 • 0세아 대상 육아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 1세아 대상 육아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도움정도 인식	• 현금지원 집중이 필요한 자녀연령대 • 영아수당 지급에 따른 희망하는 양육방식의 선택 가능성 여부 • 영아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희망하는 양육방식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 •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도움 정도 인식(양육방식의 선택권 보장 등) •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의 동의 정도 • 희망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적정 영아수당액 • 영아수당 지급방식 • 영아수당 바우처 지급 시 포함 항목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역 • 총 자녀수, 응답자녀의 출생순위와 연령 • 월평균 가구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 응답자 취업 여부, 맞벌이 가구 여부, 가구형태

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I-3-2〉와 같다. 응답자는 남성이 61.9%이고, 평균 연령은 37.6세이며, 맞벌이 가구는 51.6%로 나타난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99만원 이하가 16.4%이고 600만원 이상이 26.3%를 차지한다. 자녀수는 평균 1.5명이고 자녀가 1명인 가구가 55.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0~11개월과 12~23개월 아동의 비율은 각각 41.1%와 58.9%이다.

〈표 I-3-2〉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적 특징

단위: %(명)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성별		자녀연령(막내)	
남성	61.9 (313)	0~11개월	41.1 (208)
여성	38.1 (193)	12~23개월	58.9 (298)
연령		평균(개월)	12.8 (506)
19~29세	5.1 (26)	총 자녀수	
30~34세	25.9 (131)	1명	55.1 (279)
35~39세	37.2 (188)	2명	38.5 (195)
40세 이상	31.8 (161)	3명 이상	6.3 (32)
평균(세)	37.6 (506)	평균(명)	1.5 (506)
거주지역		월평균 가구소득	
대도시(광역시)	69.2 (350)	199만원 이하	3.0 (15)
중소도시	28.1 (142)	200~299만원	13.4 (68)
농산어촌(군 지역)	2.8 (14)	300~399만원	25.5 (129)
맞벌이 가구 여부		400~499만원	16.8 (85)
맞벌이	51.6 (261)	500~599만원	15.0 (76)
홀벌이	46.8 (237)	600~699만원	10.3 (52)
모두 근로 안함	1.6 (8)	700~799만원	5.7 (29)
		800만원 이상	10.3 (52)
계(수)			100.0 (506)

4)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1차는 설문조사 문항의 개발, 2차~7차는 영아수당의 필요도와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수요자의 인식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가)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영아자녀를 둔 부모이며, 영아수당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포괄될 수 있도록 맞벌이 여부, 자녀의 출생순위, 거주지역, 어린이집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으며, 총 18인을 대상으로 총 7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1) 영아자녀 양육 실태와 애로사항 전반, 2) 영아자녀의 육아지원 욕구, 3)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과 세부 도입 방안 등이다. 세부 질문 항목은 이하 <표 I-3-3>과 같다.

<표 I-3-3> 심층면담 세부 항목

조사 영역	질문 항목
아동 및 가구특성/ 양육 실태 전반	1) 아동 및 가구 특성 • 자녀 특성: 총 자녀수, 자녀 연령, 장애아 여부, 기관 이용 현황 등 • 가구 특성: 다양한 가족 여부(한부모 등), 취업 및 근로특성 등 2) 영유아 자녀의 양육 실태 • 주양육자, 기관이용 및 미이용 관련, 자원인력 여부, 추가 출산 의향 • 추가출산 의향 여부, 포기 사유, 희망자녀수, 출산의 연기/포기 경험 사유
0~1세아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요구	1) 자녀연령 및 가구특성에 따른 양육 시 어려움 • 타 연령대비 영아기 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 • 근로 특성에 따른 양육 시 어려움 등 2) 0~1세 자녀의 적합한 양육방식 •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 희망하는 양육방식 및 그 이유 • 부모가 일할 경우 적합한 육아지원 방식 3) 육아지원제도 및 정책의 도움 정도 인식: 연령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등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도와 도움 정도 인식	1) 타 연령 대비 0~1세아 대상 현금지원의 필요도 • 필요도 및 그 사유 • 불필요함과 그 사유 2)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 • 희망하는 양육방식과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 •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3)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의 동의 정도: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영아수당 지급 등 4) 영아수당의 희망 액수
이외 육아지원 요구	1) 영아기 자녀 양육을 위한 정부지원 요구 2) 타 연령 대비 0~1세아 대상 차별화된 육아지원 필요성 인식

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징

심층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징은 이하 <표 I-3-4>와 같다. 참여자는 모두 여성이며, 연령은 27~40세에 걸쳐 있고, 거주지역, 맞벌이 여부, 자녀연령과 월평균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한다. 특히 다양한 양육방식에 따른 수요를 파

악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부모가 직접양육하는 가구, 어린이집 기본보육 또는 연장보육, 조부모 돌봄(및 친인척 돌봄), 어린이집과 개인양육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가구 등을 배분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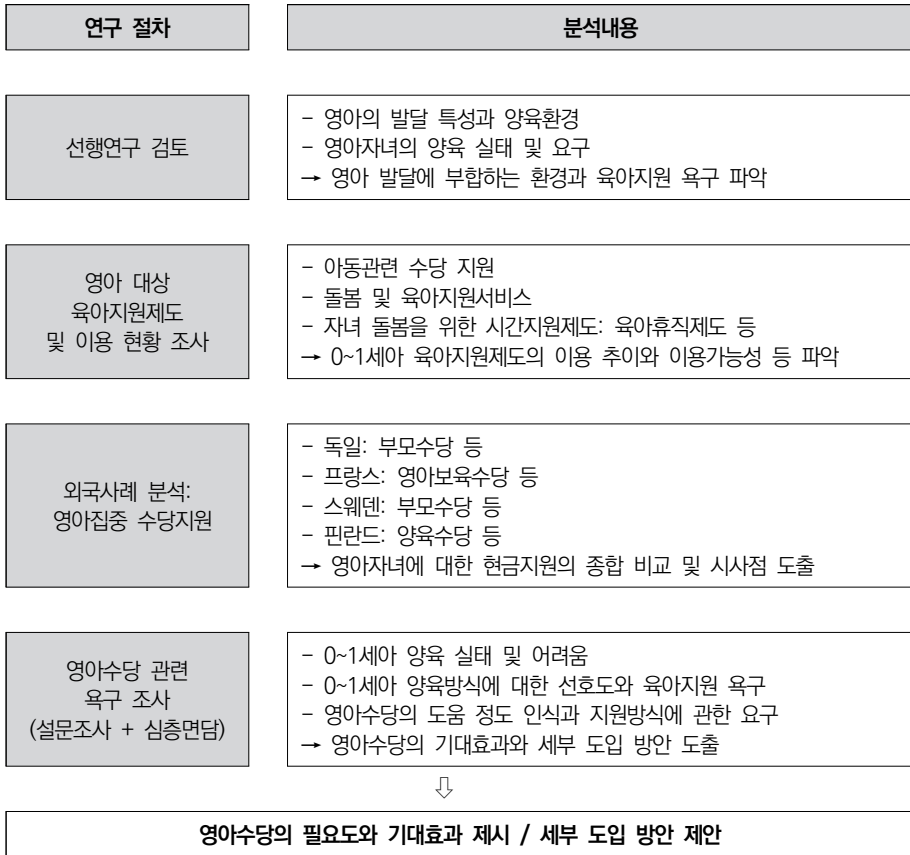
〈표 I-3-4〉 심층면담 대상자 일반적 특징

회차	일시	면담 순번	연령	맞벌이 여부	자녀특성(자녀수/자녀연령) /주양육자	거주 지역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1차	3.12	1	37세	홀벌이	1세/가정내 양육	서울	150~199
		2	35세	홀벌이	1세/가정내 양육	경기	350~399
		3	34세	홀벌이	1세/가정내 양육	경기	700 이상
2차	4.21	4	36세	홀벌이	둘째 0세/가정내양육	경기	600 이상
		5	36세	맞벌이	0세/육아휴직 중	경기	700 이상
		6	27세	홀벌이	0세//가정내 양육	전남(군)	250~299
3차	4.22	7	34세	맞벌이	1세/어린이집+단축근로	서울	700 이상
4차	4.24	8	37세	홀벌이	1세/어린이집+단축근로	인천	700 이상
		9	37세	맞벌이	둘째 1세/어린이집	-	700 이상
		10	40세	홀벌이	셋째 2세/어린이집	인천	500~599
5차	4.24	11	35세	맞벌이	10개월/육아휴직 중	경북(군)	500~599
		12	36세	맞벌이	둘째 1세/어린이집+조부모	인천	600 이상
		13	37세	맞벌이	둘째 0세/어린이집 (육아휴직 중 복귀 예정)	경기	600 이상
6차	4.24	14	35세	홀벌이	1세/가정내 양육	충북(군)	400~499
		15	36세	맞벌이	둘째 2세/어린이집+조부모	대구	700 이상
7차	4.26	16	34세	맞벌이	1세/어린이집	서울	700 이상
		17	33세	맞벌이	1세/친인척 돌봄	경기	700 이상
		18	34세	맞벌이	1세/조부모 돌봄	서울	700 이상

나. 연구 절차 및 분석틀

이 연구의 절차는 [그림 I-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영아 발달의 특성 및 이에 부합하는 양육환경을 이해하고, 0~1세아 대상 현행 육아 지원정책 및 제도 현황을 파악한다. 그 다음으로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외국사례의 정책 원리 및 그 효과성을 비교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0~1세아를 둔 가구의 영아수당 수요를 파악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영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료화하고, 세부 도입 방안을 도출한다.

[그림 I-3-1] 연구 절차 및 분석내용



II

연구의 배경

01 영아의 발달 특성과 양육환경

02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

II. 연구의 배경

제2장에서는 영아 발달의 특성과 이에 부합하는 양육환경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에 관한 연구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영아기의 발달은 유아기와 질적으로 다르며, 이들 가구의 육아지원 욕구는 매우 다양하나 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추가적인 정책 방안이 요구됨을 파악하였다.

1. 영아의 발달 특성과 양육환경

영아기 자녀의 발달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애착이 중요시되고, 이를 위해 일관된 양육방식과 양질의 돌봄이 강조된다.

가. 영아의 발달 특성

취학 전 아동을 연령에 따른 영역별 주요 발달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로 구분된다. 이 중 영아기는 생후 1개월부터 18개월 또는 24개월(Lamb, Bornstein, & Teti, 2002: 1)까지에 해당하며, 학자에 따라서는 36개월까지로 보기도 하나(이영 외, 2015: 17), 일반적으로는 생후 2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곽금주 외, 2005: 9).

영아기는 모체로부터 분리되어 바깥세상에 적응해가는 전환기인 신생아기(박성연, 2006: 111)를 지나, 스스로를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기간이다(박성연, 2006: 225). 생의 초기에 해당하는 이 시기는 이후 발달의 기초를 이루어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서문희·최혜선, 2007: 13). 인간의 발달은 순서가 있으며, 누적적이며, 발달의 각 측면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기 때문이다(박성연, 2006: 9-11; 이사라·이주연·박민선·송승민·박선영, 2013: 13). 동시에 아직 신체적 발달이 미흡하고 자조기술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조차 스스로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곽금주

외, 2005: 10) 누군가의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영아기는 기간은 짧지만 발달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많은 발달 과업을 포함하는 시기이다(이영, 2000; 서문희·최혜선, 2007: 13 재인용). 이 때문에 같은 영아기라 할지라도 월령에 따른 차이가 크며, 개별적 차이가 두드러진다. 대표적으로 신체운동 발달 능력 및 언어능력의 기초를 갖추고, 특히 두뇌 발달은 무게 면에서 1세 경 성인 두뇌의 66%까지 급등하며 시냅스 수는 2세에 절정에 이르게 된다(박성연, 2006: 138-140). 부모를 비롯한 주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관계인 애착을 형성해 사회관계의 기틀을 마련하며, 이러한 애착 경험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기대감인 내적작업모형으로 평생에 걸쳐 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친다(Bowlby, 1969; 박성연, 2006: 65에서 재인용).

나. 영아의 발달을 위한 양육환경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영아기 발달 과업의 달성을 위해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직접적이고 다양한 자극의 제공과 함께 양육자의 민감하고 즉각적인 반응, 그리고 일관적인 양육을 강조한다(박성연, 2006; 이사라 외, 2013; 이영 외, 2015). 이는 이 시기 발달과업의 성격과 발달 수준에 따른 것으로, 우선 인지발달에 있어 발달 수준상 정신적 표상이 불가함에 따라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학습이 주를 이루며, 신체운동 발달에서는 활동성은 증가하는 한편 아직 깊이 지각과 위험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균형감각이 떨어짐에 따라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박성연, 2006: 250). 정서·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는, Erikson에 따르면 영아기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획득하는 시기로, 이는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정적이고, 민감하고 일관적인 반응이 요구된다(박성연, 2006: 197). 애착 역시 양육자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됨에 따라, 안정적 애착 형성을 위해서는 주 양육자가 영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회가 충분하고, 질적으로도 영아가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관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영 외, 2015: 318-319).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도 영아는 유아에 비해 자기중심성이 강해 자신만의 관점으로만 주위를 바라봄에 따라 또래에 대한 관심도 낮고 갈등도 잦아 또래관계를 넓히기보다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영아의 마음을 읽어주고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등

의 노력이 필요하다(이영 외, 2015: 324). 정리하면 영아기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밀접하고 세심한 전적인 돌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영아기 발달에 있어 주양육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역할이 반드시 어머니일 필요는 없으며,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역시 서비스의 질적 수준만 보장된다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Howes, 1990; Howes & Spieker, 2008). 국내에서도 2008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인 한국아동패널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 영아기 돌봄 유형에 따라 아동의 행동문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은지 외, 2019: 52). 안정적 애착 형성 역시 애착 대상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영향마저 상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유주연, 2020; Barnas & Cummings, 1994). 이에 따라 영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한 양육지원 정책 수립 시에 부모의 필요 및 여건에 따라 선호하는 양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떠한 양육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양질의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지원 요구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전반적으로 현금지원에의 수요가 높고 부모의 직접양육과 가정내 양육의 선호가 높은 경향을 보이나, 희망하는 양육방식은 가구여건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가. 영아자녀의 양육 특성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양육의 질은 어느 시기에 상관없이 중요하지만, 특히 영아기에는 전적인 보살핌과 상호작용의 질이 중요시되는 바,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직접돌봄이 선호되며 실태 또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다. 김나영·황선영·엄지원(2019)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영아기 양육의 특징을 “직접돌봄 선호”와 “전일적 돌봄 필요”로 정리하였다(김나영 외, 2019: 38).

여기서는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양육 실태를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영아자녀의 양육 특성을 파악하였다.

1) 양육 실태 및 선호도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128)에 따르면, 낮 시간 동안 자녀를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이 어머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영아 54.1%, 유아 29.6%로 영아는 과반수 이상이며, 영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76.8%, 1세 40.8%, 2세 37.5%로 0세는 어머니가 돌보는 비율이 매우 높다. 기관에 맡긴다는 비율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며 영아 36.2%, 유아 63.5%, 연령별로는 0세 11.5%, 1세 48.5%, 2세 56.3%로 2세부터는 과반수 이상이 기관을 이용한다(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128). 해당 조사에서 각 연령이 보육연령임을 감안하면, 23개월까지는 기관보다는 가정내 양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이 있다면 기관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영아 부모 21.9%, 유아 부모 9.5%(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203)에 달해 영아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기관 보육은 직접돌봄 또는 개인대리양육자를 이용하지 못할 때 선택하게 되는 차선택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선택이 보육서비스의 질이나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시 비용 부담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의 직접돌봄 시 야기되는 소득감소와 관련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II-2-1〉 낮 시간 동안 주양육자

단위: %(명)

구분	부	모	부모 형제 자매	친조 부모	외조 부모	기타 친인척	비혈연	육아 전문 인력	기관에 맡김	계(수)	$\chi^2(df)$
전체	0.7	41.6	0.1	2.2	3.3	0.1	0.3	1.7	50.0	100.0(3,775)	
영유아											
영아	0.9	54.1	0.2	2.5	4.6	0.1	0.5	1.0	36.2	100.0(1,911)	316.3
유아	0.6	29.6	-	1.9	2.0	0.1	0.1	2.3	63.5	100.0(1,864)	(8)***
보육연령											
0세	0.8	76.8	0.4	3.3	5.8	0.3	0.8	0.4	11.5	100.0(803)	
1세	1.1	40.8	0.1	2.7	4.6	-	0.5	1.7	48.5	100.0(540)	
2세	0.7	37.5	-	1.3	3.0	-	0.1	1.1	56.3	100.0(568)	668.6
3세	0.3	30.0	-	2.2	2.3	0.2	-	1.7	63.3	100.0(650)	(40)***
4세	0.4	31.8	0.1	1.1	1.8	-	0.2	2.8	61.8	100.0(549)	
5세	1.0	27.4	-	2.2	1.8	-	0.2	2.5	64.9	100.0(665)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p. 128.

연령별로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정양육으로 응답한 비율은 1세 미만 98.6%, 1~2세 미만 85.9%이며, 이에 비해 2~3세 미만은 43.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며, 기관양육이 더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세 미만 1.4%, 1~2세 미만 14.1%, 2~3세 미만 55.3%로, 2세를 기준으로 기관 양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급증하고 가정양육보다 앞선다(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155).

〈표 II-2-2〉 아동연령별 가장 적절한 양육지원서비스

단위: %(명)

구분	1세 미만	1세~2세 미만	2세~3세 미만	3세~4세 미만	4세~5세 미만	취학 전 (5세 이상)
가정양육	98.6	85.9	43.9	11.9	2.8	1.4
기관양육	1.4	14.1	55.3	87.5	96.6	97.8
잘 모르겠음	-	-	0.8	0.6	0.6	0.8
계(수)	100.0(2,533)	100.0(2,533)	100.0(2,533)	100.0(2,533)	100.0(2,533)	100.0(2,533)

주: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사례수는 실제 응답자 수임.

자료: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2018).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p. 155.

김나영 외(2019)의 연구에서도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게 주 양육자와 선호하는 양육방식을 조사하였는데,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2018) 조사와 선택지가 달라 절대적 비교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0세 58.7%, 1세 41.7%, 2세 17.6%이며, 선호하는 형태는 0세는 67.4%, 1세 52.1%, 2세 28.8%로 전반적으로 실제 양육 현황보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2세부터는 부모의 직접돌봄보다는 어린이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김나영 외, 2019: 149, 154, 160).

부모가 직접 돌보는 형태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영아 시기에는 부모가 직접양육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1.8%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0.8%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응답은 어머니가 정규직/전일제 임금근로자인 집단에서 40% 이상 응답되어 모(母)의 고용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김나영 외, 2019: 165-166).

〈표 II-2-3〉 만 0, 1, 2세 양육가구의 주양육 실태와 선호하는 양육방식

단위: %(명)

구분	주 양육 실태			선호하는 양육 방식		
	0세	1세	2세	0세	1세	2세
부모가 직접돌봄	58.7	41.7	17.6	67.4	52.1	28.8
어린이집	29.3	48.1	79.5	22.2	37.8	62.4
조부모	6.6	5.3	1.1	2.9	2.0	1.5
시간제 사교육 기관	1.5	1.5	0.3	0.8	1.2	0.9
아이 돌봄 서비스	1.1	0.5	0.1	2.3	1.9	0.4
사설 베이비시터	0.9	0.5	0.4	1.0	0.6	0.5
기타 친인척	0.4	0.4	-	0.2	0.2	0
반일제 이상 학원	0.4	0.4	0.3	1.3	2.1	2.5
시간제 보육	0.4	0.9	0.3	1.4	1.3	2.1
기타	0.8	0.6	0.3	0.5	0.7	0.8
계(수)	100.0(1,400)	100.0(1,117)	100.0(698)	100.0(1,400)	100.0(1,400)	100.0(1,400)

자료: 김나영 외(2019). 영아 양육자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p. 149, 154, 160.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조부모/친인척, 아이돌보미/가정보육사, 기타의 양육방식 중 0, 1세에서는 조부모/친인척에게 맡긴다는 비율이 50.3%, 50.9%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2세에서 22.3%로 줄어든다(김나영 외, 2019: 121). 반면에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7.1%, 1세 34.5%에서 2세에서 63.9%로 증가하며²⁾, 특히 어린이집 이용률은 2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나영 외, 2019: 121).

2) 양육방식의 선택 사유

부모가 주양육자가 아닌 경우, 개인대리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대체로 영아의 발달상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원 등(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 2018)이 실시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에서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영아는 가정에서 일대일로 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가 64.4%로 가장 많고, ‘자녀가 시설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것 같아서’가 16.1%로 두 번째로 많이 응답되었다(이정원·이정림·권미경 외, 2018: 62-63). 김나영 외(2019)의 연구에서도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시 0, 1세에서는 ‘자

2) 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조사 결과를 재분석한 결과임.

녀가 어려서 기관 적응이 힘들까 봐'라는 이유가 57.4%, 52.7%로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기관 이용 후 돌볼 사람이 필요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김나영 외, 2019: 124-125).

유해미·이규림·이민경(2016)의 연구에서는 영아자녀를 둔 가구에서 가정어린이집 이용 사유를 조사하였다. 이에 따르면 0세의 경우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83.6%로 압도적으로 높고, 해당 응답률은 1세에서 59%로 과반수에 초과하나, 2세 42.1%, 3세 43.9%로 연령이 높을수록 점차 감소한다. 대신에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세 18.1%, 3세 이상 21.7%로 나타나, 2세를 기점으로 아동 발달이 중요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유해미 외, 2016: 120).

〈표 II-2-4〉 가정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서비스 이용 동기

단위: %(명)

구분	전체	자녀 연령				맞벌이 여부	
		0세	1세	2세	3세 이상	맞벌이	홀벌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51.3	83.6	59.0	42.1	43.9	78.1	5.4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13.3	0.0	6.8	18.1	21.7	8.6	21.5
다른 자녀를 돌봐야 해서	10.7	0.0	9.8	11.5	14.6	3.1	23.7
혼자 양육하기 힘들어서	10.5	10.9	10.1	12.6	6.4	3.5	22.6
구직활동을 하려고	8.2	5.5	11.5	6.5	5.7	4.0	15.5
교육이 필요한 시기여서	5.7	0.0	2.7	8.9	7.0	2.8	10.7
기타	0.3	0.0	0.1	0.3	0.7	0.0	0.6
계(수)	100.0 (960)	100.0 (55)	100.0 (366)	100.0 (382)	100.0 (157)	100.0 (606)	100.0 (354)

자료: 유해미 외(2016).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p. 120.

한편 김나영 외(2019)은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김은설 외, 2016)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양육수당 수혜 경험, 기관보육료 수혜 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하여 로짓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김나영 외, 2019: 115).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개인대리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은 가구소득과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기관보육료 수혜 확률, 즉 어린이집의 이용가능성은 자녀수가 많고 자녀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맞벌이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3) 보조양육 병행 실태

영아기 양육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보조양육 수단을 병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보조양육은 부모가 직접돌봄하거나 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이용 이유는 주 양육형태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김나영 외(2019)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직접 돌본다는 응답자 중 61.9%가 보조양육³⁾을 병행하며, 이용 사유에 있어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김나영 외, 2019: 169). 전체적으로 '양육 시간 외에 부모 개인 시간의 확보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전체 연령별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는 0, 1세에서는 '육아부담이 커서'라는 응답이, 2세는 '자녀에게 교육적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3세는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연구진은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적 발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김나영 외, 2019: 170).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는 개인양육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기관 병행이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영아의 경우 43.5%가 해당하며, 자녀연령에 따라 0세 5.6%, 1세 41.6%, 2세 74.8%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인다(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520).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를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 중인 시간제보육은 해당 제도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15년과 2018년에 실시한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김은설 외, 2016;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에 의하면, 시간제보육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0.7%, 39.8%이며, 제도를 이용한 경험이라는 응답은 각각 4%와 7%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서비스 이용 만족도 및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는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3.7점, 4.0점에 달하고 특히 1, 2세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나. 영아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시 어려움과 지원 요구

1) 영아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

자녀의 출생은 부모 개인과 가족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으로 가족 스트레스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요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전까지 경험

3) 어린이집, 반일제 이상 학원, 시간제 사교육기관, 시간제보육, 조부모 및 친인척, 아이돌보미 및 베이비시터 등

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삶을 맞이하며, 초보 어머니들은 아기 다루기부터 월령에 맞는 교육의 결정과 같은 자녀 돌봄에 대한 지식 부족,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 부부관계의 변화 등(이대균·황주미, 2008: 103)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첫째 자녀가 아니더라도 영아기 양육자는 전일적 돌봄을 필요로 하는 영아기의 특성에 따라 양육에 많은 시간과 품을 들이게 되며(김나영 외, 2019: 32), 이는 곧 양육스트레스 증가를 야기한다. 구체적으로는 수면 부족과 신체적·정신적 피로, 그리고 외부활동 제약과 사회로부터의 단절과 고립 등(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40-43, 김은주·서영희, 2012: 108; 유해미·최효미·강신혜, 2017: 143)의 어려움을 보고한다.

2) 영아자녀의 육아지원 수요

영아 대상의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별 수요를 파악하기에 앞서, 영아기의 특성에 주목하여 차별화된 육아지원의 방향성을 부각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권미경 외, 2016; 김나영 외, 2019; 유해미·김아름·김진미, 2015; 유해미·배윤진·김문정, 2014;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 2013; 이정원·이윤진·김희수, 2017;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

이들 연구에서는 양육 어려움 해소라는 성인 중심의 관점에서 영유아의 행복과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영유아 중심의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권미경 외, 2016; 이미화 외, 2013)과 부모의 양육 가치관 및 근로여건 등의 환경에 따라 양육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유해미 외, 2014; 이정원 외, 2017).

전일적 돌봄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지원에서 시간, 비용, 서비스의 모든 정책 필요도와 관계된다. 직접돌봄을 선택할 때 취업부모의 경우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필요하고,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기본보육시간 외 연장보육이나 등·하원 도우미를 고용하는 현실이며(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이는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미취업부모의 경우에도 온종일 계속되는 돌봄 노동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양육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김은주·서영희, 2012)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영아기 부모의 구체적인 지원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영아기 내에서도 각 연령 간에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현금지원과 돌봄시간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유해미 외, 2015; 최효미 외, 2020). 유해미 외(2015)의 연구에서는 영아 부모의 경우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하고, 특히 0세에서 현금지원 수요가 다른 연령에 비해 많고 휴직 기회 보장에 대해서도 0세와 1세 부모에서 수요가 높은 반면, 2세부터는 기관보육 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유해미 외, 2015: 123). 최효미 외(2020: 229-230)의 연구에서도 영유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중 양육수당 등 현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35.1%로 가장 많았고, 이는 맞벌이 보다는 외벌이 가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은 집단에서 많이 선택되었다. 또한 현금지원 시 지원수준 제고, 신청 방법, 대상 확대, 지원방식 등에 대한 개선 요구로는 지원수준 제고, 즉, 지원액을 높여 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최효미 외, 2020: 235-236).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시에 받게 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인상된다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할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2018: 348-350)의 연구에서는 그만 두고 집에서 본다는 비율은 2.2%에 불과하고, 계속 다닌다는 비율이 87.8%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평균 추가인상 요구액은 28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0세에서 집에서 본다는 비율이 11.4%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김나영 외(2019)의 연구 역시 69.9%가 관계없이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하였고, 금액에 따라 다르다는 응답은 24.8%, 중단하겠다는 응답은 5.3%에 불과하였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사람 중에서 희망하는 가정양육수당액은 평균 46.9만원으로 산출되었다(김나영 외, 2019: 179).

한편 유해미 외(2015)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양육을 조부모가 맡을 시 정부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해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57.4%,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27%로 응답되었다(유해미 외, 2015: 131).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은 조부모의 삶의 질에 대한 우려와 아동 돌봄의 재가족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며, 보다 근본적으로 일관된 지원기준의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등에서 자녀가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 이용을 기피하지만 믿을 수 있는 가정내보육서비스의 접근성도 낮아 조부모 돌봄을 불가피하게 선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정책적 고민이 제기된다.

III

영아 대상 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 01 아동관련 수당 지원
- 02 돌봄서비스 지원
- 03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Ⅲ. 영아 대상 양육지원 제도 및 정책 현황

제3장에서는 영아자녀 대상의 양육지원제도 및 정책을 살펴보았다. 현금지원으로는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기관보육과 가정내 보육, 그리고 육아휴직제도 등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제도 현황을 다루었다. 또한 0~1세아의 제도별 이용률과 서비스 공급 수준 등을 파악하여 이들 자녀의 양육에 대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인지를 검토하였다.

1. 아동관련 수당 지원

가구특성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아동관련 수당으로는 미취학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아동수당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가정양육수당을 들 수 있다.

가. 아동수당

아동수당제도는 2018년 9월에 도입되어 2019년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같은 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83개월)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⁴⁾ 2021년 기준 대상아 수는 약 247만 2천명이다(보건복지부, 2021a: 20).

아동수당 예산은 2020년 2조 2,834억원에서 2021년 2조 2,195억원으로 639억원(2.8%p)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21a: 20).

나.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인 최

4)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6441>, 2021. 2. 28. 인출.

대 86개월 미만 전(全)계층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1b: 371).

수당 지급액은 만 12개월 미만은 20만원, 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은 15만원, 만 24개월 이상 최대 8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다(보건복지부, 2021a: 25).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신청일로부터 0~최대 86개월 미만 영유아)의 경우는 차등지급되어 장애아동은 36개월 미만 20만원, 36개월에서 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 아동은 월령별로 10~20만원이 지급된다(표 III-1-1 참조).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예산은 2021년 7,608억 원이며, 2020년 8,157억 원인 전년 대비 6.7%(549억원)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21a: 25).

한편 이들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방과후보육료,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⁵⁾

〈표 III-1-1〉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2021)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개월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보육사업안내. p. 371.

지원대상 아동수는 2021년 59만 5천명으로 2020년 64만 4천명에서 전년 대비 4만 9천명(7.5%p)이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21a: 25).

〈표 III-1-2〉 가정양육수당 수급자 규모 추이(2014~2021)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수급자 수	1,012,336	1,009,346	933,153	836,290	745,677	658,450	644,000	59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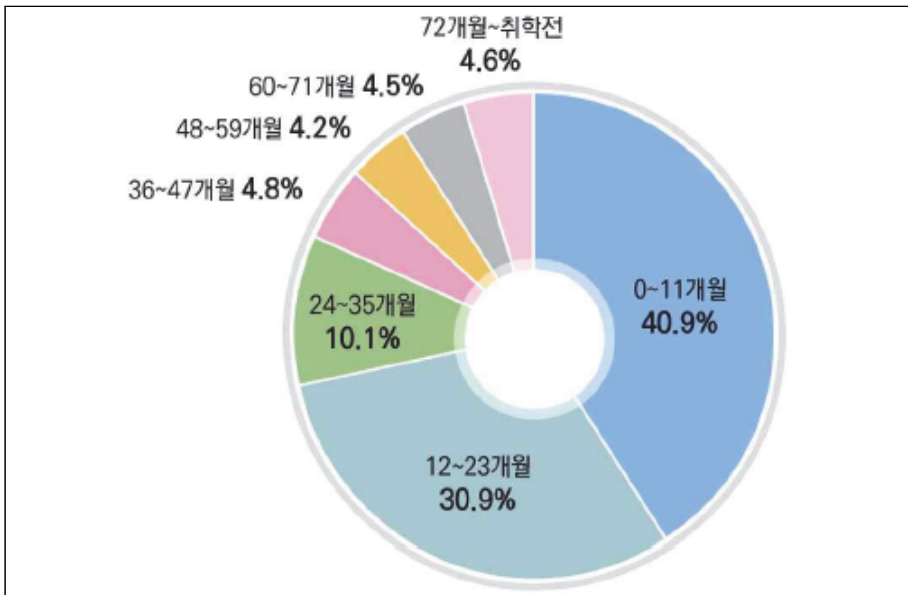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p. 25.

5)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295>, 2021. 2. 28. 인출

2019년 기준으로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율은 [그림 III-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1개월과 12~23개월이 각각 40.9%와 30.9%를 차지하여 해당 자녀의 가정내 양육에 대한 선호를 확인시켜준다.

[그림 III-1-1] 연령별 가정양육수당 수급 비율(2019)

단위: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통계. p. 53.

2. 돌봄서비스 지원

0~1세아가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로는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지역사회내 종합육아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를 들 수 있다. 2020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 실시로 종일제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는 2019년에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가정내 양육을 위한 시간제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급 수준 제고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준으로 해당 인프라의 공급 수준은 수요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가. 보육료

1) 지원대상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의 경제를 돕는 목적을 지닌다⁶⁾.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1b: 329).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지원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표 III-2-1〉 만 0~5세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1)

구분	기준일자
0세반	'20. 01. 01. 이후 출생
만 1세반	'19. 01. 01. ~ '19. 12. 31.
만 2세반	'18. 01. 01. ~ '18. 12. 31.
만 3세반	'17. 01. 01. ~ '17. 12. 31.
만 4세반	'16. 01. 01. ~ '16. 12. 31.
만 5세반	'15. 01. 01. ~ '15.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4. 1. 1.~'14.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4. 01. 01. ~ '08. 12. 31.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보육사업안내. p. 348.

2) 지원내용 및 이용률

보육료는 연령별로 종일반과 야간보육 시의 지원 단가가 동일하다. 영아에 한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0세반은 종일반과 야간보육의 지원 단가는 0세아 484,000원, 1세아 426,000원, 2세아는 353,000원이다(보건복지부, 2021b: 349). 24시간 보육의 경우는 해당 연령별로 각각 726,000원, 639,000원, 529,500원이 지원된다. 만 3~5세아는 종일반은 240,000원이 지원된다(표 III-2-2 참조).

2019년 보육연령 기준으로 0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2%이고, 1세아는 81.1%이며, 2세아는 91.3%로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진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6)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92>, 2021. 3. 2. 인출

27)(그림 III-2-1 참조).

〈표 III-2-2〉 만 0~5세 보육료 지원 단가(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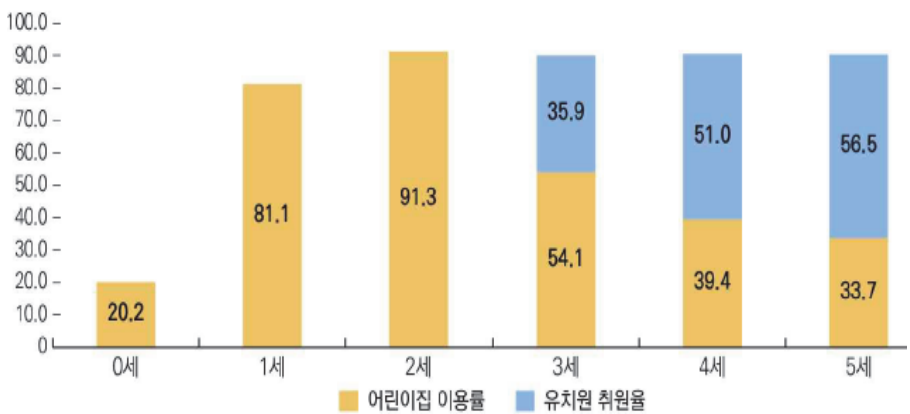
단위: 원

연령	지원 단가		
	종일반	야간	24시
만0세반('21.1.1~)	484,000	484,000	726,000
만1세반('21.1.1~)	426,000	426,000	639,000
만2세반('21.1.1~)	353,000	353,000	529,500
만3~5세반('21.1.1~2.28.)	240,000	240,000	360,000
만3~5세반('21.3.1~)	260,000	260,000	390,000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보육사업안내. p. 349.

〔그림 III-2-1〕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과 유치원 취원률(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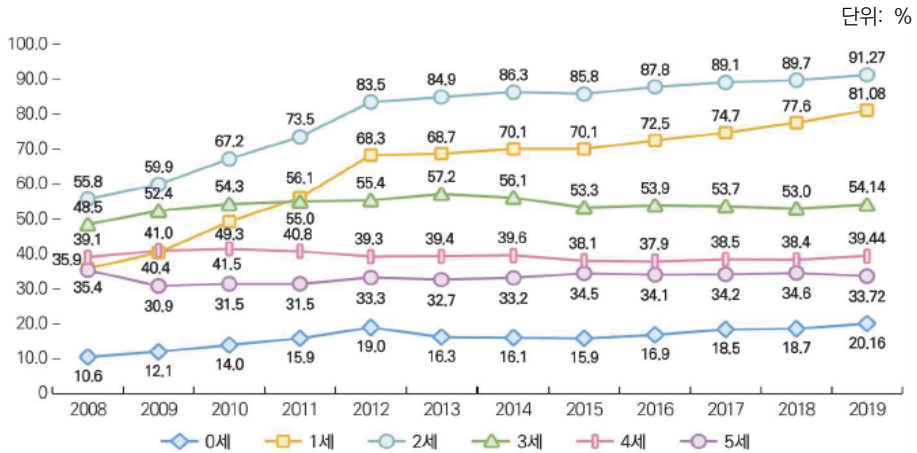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통계. p. 27.

한편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0세아는 영아 무상보육이 도입된 2012년에 19.0%까지 증가하였다가, 2015년에 15.9%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해당년도의 맞춤형 보육제도 도입에 따른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로도 증가 폭은 둔화되어 가정내 양육에 대한 선호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림 III-2-2]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 추이(2008~2019)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통계. p. 29.

가) 연장보육료

연장보육은 어린이집 이용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연장보육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의 필요 정도를 판단하여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b: 350). 연장보육시간은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이며(보건복지부, 2021b: 351), 17시 이후에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b: 357).

[표 III-2-3] 어린이집 연장보육료 지원 단가(2021)

단위: 원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주: 연장반에 편성되지 않은 아동은 기본반 보육연령에 따라 지원(0세·장애아: 3,000원, 1~2세: 2,000원, 3~5세: 1,000원)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보육사업안내. p. 357.

나)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2020년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이 실시됨에 따라 기존의 시간연장형보육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로 명시되며,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가 포함된다(보건복지부, 2021b: 368).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0~2세 연장보육료(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

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이다(보건복지부, 2021b: 368).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1b: 368).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만 8세까지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1b: 368). 야간 12시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되며(보건복지부, 2021b: 368),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1b: 368).

다) 야간연장 보육료

야간연장 기준 시간은 평일은 19시 30분~24시, 토요일은 15시 30분~24시이다(보건복지부, 2021b: 368).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7시 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야간연장 보육료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b: 368).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60시간 까지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1b: 369).

라) 야간 12시간 보육료

야간 12시간 보육의 운영시간은 19시 30분부터 익일 7시 30분이다(보건복지부, 2021b: 369).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12시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학아동은 야간 12시간 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다(보건복지부, 2021b: 369).

마) 24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의 운영시간은 7시 30분부터 익일 7시 30분이다(보건복지부, 2021b: 370). 주간보육(7시 30분~19시 30분)과 야간 12시간 보육(19시 30분~익일 7시 30분)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b: 370).

지원대상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21b: 370).

바)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보육의 운영시간은 일요일, 공휴일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이다. 지원 단가는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를 적용한다.

나.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 하고자 한다(여성가족부, 2021b: 10). 자녀양육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⁷⁾

아동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며, 가구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 만 0~5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복지로 <http://www.bokjiro.go.kr>, 2021. 3. 1. 인출).

동 사업의 예산은 2021년 기준으로 총 2,514억원으로, 전년 대비 3.1%(75억원) 증가하였다(여성가족부, 2021c: 51).

〈표 III-2-4〉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및 지원대상 아동연령(2021)

구분	지원대상 아동연령
시간제 서비스(기본형 및 종합형)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이용 아동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12세 아동

자료: 여성가족부(2021b).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p. 10.

가) 지원내용 및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시간당 기본요금은 영아종일제 10,040원, 시간제 일반형 10,040원, 시간제 종합형 13,050원, 질병감염아동 12,050원, 기관연계 서비스

7)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164>, 2021. 3. 1. 인출

는 16,870원이다(여성가족부, 2021b: 10).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의 <표 III-2-5>와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

<표 III-2-5>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차등지원 금액(2021)

구분	지원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13.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2.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8,534원 지원, B형 7,53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6,024원 지원, B형 2,008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1,506원 지원, B형 1,506원 지원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시간당 8,534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간당 6,024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시간당 1,506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3,657,218원 • 기준 중위소득 120%: 5,851,548원 • 기준 중위소득 150%: 7,314,435원

자료: 복지포 (http://www.bokjiro.go.kr, 2021. 3. 1. 인출)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내용(2021)

구분	지원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서비스 제공 • 영아 대상: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서비스 지원

자료: 복지포 (http://www.bokjiro.go.kr, 2021. 3. 1. 인출)

나) 서비스 이용률

서비스 유형별 0~1세아의 이용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2019년 기준⁸⁾으로 0세아의 0.3%, 1세아의 0.6%가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8) 2020년 이용아동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그 이용 양상이 예외적이라고 판단되므로 2019년 기준으로 다룸.

〈표 III-2-7〉 0~1세아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규모(2019~2020)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만0세	총인구수	295,132	265,087
	영아종일제 이용아동수	834	1,926
	영아종일제 이용아동 비율	(0.3)	(0.7)
만1세	총인구수	330,970	304,651
	영아종일제 이용아동수	2,130	1,233
	영아종일제 이용아동 비율	(0.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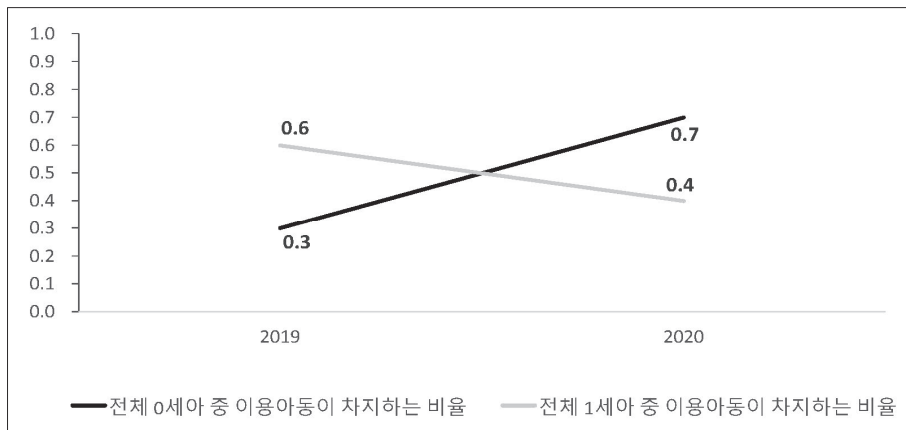
주: 총인구수는 각 해당연도의 전국 0세, 1세 인구수를 산출함.

자료: 1) 0, 1세 총인구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http://kosis.kr>, 2021. 4. 28. 인출) 활용

2) 0, 1세 영아종일제 이용아동수는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21a) 활용

〔그림 III-2-3〕 0~1세아의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아동 규모(2019~2020)

단위: %



주: 총인구수는 각 해당연도의 전국 0세, 1세 인구수를 산출함.

자료: 1) 0, 1세 인구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http://kosis.kr>, 2021. 4. 28. 인출) 활용

2) 0, 1세 영아종일제 이용아동수는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21a) 활용

다음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중에서 0~1세아의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일관된 경향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가운데, 2019년 기준으로 0세아의 9%, 1세아의 13.5%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III-2-8 참조).

한편 여성가족부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영아자녀를 걱정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비율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d: 70).

〈표 III-2-8〉 시간제(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중 0~1세아 비율 추이(2012~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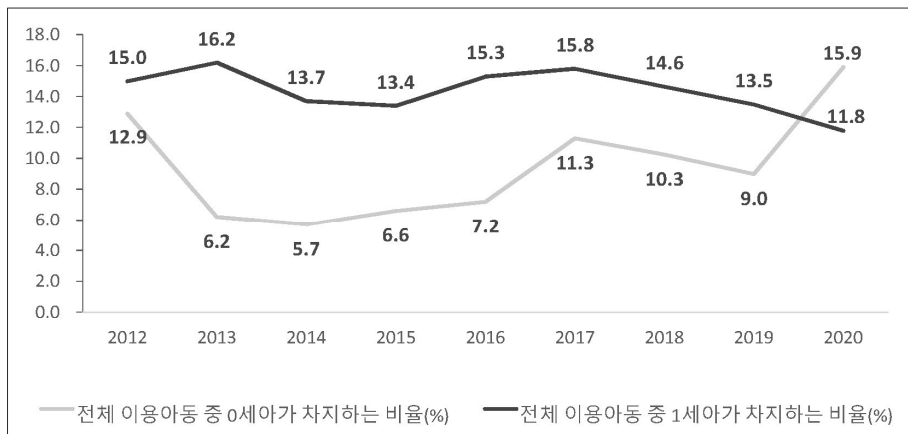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59,794	70,994	75,623	78,800	83,206	87,131	89,655	88,021	83,575
만0세	7,719 (12.9)	4,413 (6.2)	4,321 (5.7)	5,194 (6.6)	5,957 (7.2)	9,832 (11.3)	9,196 (10.3)	7,900 (9.0)	13,259 (15.9)
만1세	8,961 (15.0)	11,531 (16.2)	10,334 (13.7)	10,603 (13.4)	12,752 (15.3)	13,746 (15.8)	13,129 (14.6)	11,845 (13.5)	9,886 (11.8)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21a).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그림 III-2-4〕 시간제(일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 중 0~1세아 비율 추이(2012~2020)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21a).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다. 시간제보육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을 받는 영유아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한다(보건복지부, 2021b: 305). 동 사업 예산은 2021년 기준 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9%인 50억원이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a: 85).

가)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이다(보건복지부, 2021b: 305).

서비스 이용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2021b: 314). 시·군·구가 지정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인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제공된다(보건복지부, 2021b: 305).

지원시간은 월 80시간이며, 시간제보육료 이용단가 4,000원 중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1,000원은 학부모가 부담한다(보건복지부, 2021b: 313).

〈표 III-2-9〉 시간제보육 지원내용(2021)

구 분		지원내용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지원대상		양육수당 수급 가구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 육 료	이용 단가	시간당 4천원
	지원 단가	시간당 3천원
	부모 부담	시간당 1천원

자료: 보건복지부(2021b). 2021년 보육사업안내. p. 313.

나) 인프라 공급 현황

전국지역의 시간제보육시설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총 6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같은 해의 각 시·도별 0~1세아 수를 기준으로 1개소 당 최소 346명(대전)부터 최대 2,036명(경기)으로 지역적 격차가 두드러진다.⁹⁾

한편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1년에는 890개반 운영을 목표로 제시하고(보건복지부, 2021c: 11), 관련 제도 개선과 신규모델의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표 III-2-10〉 0~1세아의 시간제보육 공급 현황(2021.1)

단위: 명, 개소				
구분	0~1세 아동수	자차구 수(시·군·구)	시간제보육시설 수	1개소 당 아동수
총계	561,121	229	696	806
서울	94,159	25	105	897
부산	31,418	16	87	361

9)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cpin/contents/040507000000.jsp>. 2021. 4. 28. 인출

구분	0~1세 아동수	자치구 수(시·군·구)	시간제보육시설 수	1개소 당 아동수
대구	23,849	8	38	628
인천	32,306	10	33	979
광주	15,729	5	30	524
대전	15,581	5	45	346
울산	13,515	5	15	901
세종	7,049	1	8	881
경기	162,906	31	80	2,036
강원	16,124	18	28	576
충북	17,466	11	43	406
충남	24,641	15	22	1,120
전북	16,807	14	22	764
전남	19,783	22	46	430
경북	26,556	23	31	857
경남	34,950	18	43	813
제주	8,282	2	20	414

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1개소 당 영유아 수=(시·도별 영유아 수/시·도별 기관 수).

자료: 1) 0, 1세 인구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http://kosis.kr>, 2021. 4. 28. 인출) 활용

2)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시간제보육 기관찾기(<http://www.childcare.go.kr>, 2021. 4. 28. 인출) 활용

라. 기타 육아지원서비스

1)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의 자녀돌봄 품앗이를 구성하여 핵가족화로 인한 육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지닌다.¹⁰⁾ 지원대상은 취학 전·후의 자녀 및 부모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1년 기준 9,238 백만원이다(여성가족부, 2021c: 97).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은 자녀돌봄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 하며,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여성가족부, 2021a: 7). 또한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여성가족부, 2021a: 7).

10)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lInfo/retrieveGvmtWellInfo.do?wellInfSno=65>, 2021. 2. 28. 인출.

운영시간은 주5일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이며,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a: 17). 맞벌이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경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연장 운영을 권장하며, 주말 운영 시에는 평일에 휴무가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1a: 17).

전국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총 33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시·도별로 0~1세아 수를 기준으로 1개소 당 최소 474명(강원)부터 최대 3,258명(경기)으로 앞서 다른 시간제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공급 격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21b).

〈표 III-2-11〉 0~1세아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급 현황(2021. 1)

단위: 명, 개소

구분	0~1세 아동수	자치구 수(시·군·구)	공동육아나눔터 수	1개소 당 아동수
총계	561,121	229	331	1,695
서울	94,159	25	29	3,247
부산	31,418	16	13	2,417
대구	23,849	8	16	1,491
인천	32,306	10	31	1,042
광주	15,729	5	7	2,247
대전	15,581	5	5	3,116
울산	13,515	5	7	1,931
세종	7,049	1	14	504
경기	162,906	31	50	3,258
강원	16,124	18	34	474
충북	17,466	11	12	1,456
충남	24,641	15	29	850
전북	16,807	14	15	1,120
전남	19,783	22	18	1,099
경북	26,556	23	21	1,265
경남	34,950	18	27	1,294
제주	8,282	2	3	2,761

주: 1) 설치 수는 군관사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한 수치임.

2) 총인구수는 지역별 0세, 1세의 인구수를 2021년 1월 기준으로 산출함.

3) 나눔터 1개소 당 영유아 수=(시·도별 영유아 수/시·도별 나눔터 수).

자료: 1) 0, 1세 인구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http://kosis.kr>, 2021. 4. 28. 인출) 활용

2)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21b). 2021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개요. p. 3.

한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자녀돌봄 공간 확충의 일환으로 공동육아나눔터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야간, 주말 등 운영시간을 확대하며, 주요 이용아동의 연령에 따른 유형화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여성가족부, 2021d: 66).

2)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설보육 및 가정양육 상담, 일시보육, 장난감 및 도서대여, 교재교구 대여, 놀이공간 제공 등 원스톱 육아지원을 위해 중앙(1개소)과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¹¹⁾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1년 기준 1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1%(48억원) 감소하였다(보건복지부, 2021a: 87).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중앙 센터의 경우 2,174백만원이 전액 국비 지원되고, 시·도 센터는 평균 327백만원으로 국비(서울 20%, 지방 50%), 지방(서울 80%, 지방 50%)가 지원되며, 시·군·구 센터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한다(보건복지부, 2021b: 486).

전국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총 122개소로 시간제보육시설과 공동육아나눔터에 비해 기관수가 적고, 각 시·도별 0~1세아 수를 기준으로 1개소 당 최소 2,253명(울산)부터 최대 11,925명(대구)으로 앞서 다른 시간제보육시설, 공동육아나눔터와 마찬가지로 지역적 공급 격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양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4개소 확충한다고 밝힌 바 있다(보건복지부, 2021c: 11).

〈표 III-2-12〉 0~1세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급 현황(2021. 5)

단위: 명, 개소

구분	0~1세 아동수	자치구 수(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	1개소 당 아동수
총계	561,121	229	122	4,599
서울	94,159	25	26	3,622
부산	31,418	16	9	3,491
대구	23,849	8	2	11,925
인천	32,306	10	7	4,615
광주	15,729	5	3	5,243

11) 복지로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43>, 2021. 2. 28. 인출.

구분	0~1세 아동수	자치구 수(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수	1개소 당 아동수
대전	15,581	5	2	7,791
울산	13,515	5	6	2,253
세종	7,049	1	1	7,049
경기	162,906	31	31	5,255
강원	16,124	18	4	4,031
충북	17,466	11	5	3,493
충남	24,641	15	3	8,214
전북	16,807	14	5	3,361
전남	19,783	22	4	4,946
경북	26,556	23	6	4,426
경남	34,950	18	6	5,825
제주	8,282	2	2	4,141

주: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외한 수치임.

2) 총인구수는 지역별 0세, 1세의 인구수를 2021년 1월 기준으로 산출함.

3) 센터 1개소 당 영유아 수=(시·도별 영유아 수/시·도별 센터 수)

자료: 1) 0, 1세 인구수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http://kosis.kr>, 2021. 4. 28. 인출) 활용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전국센터 현황(<http://central.childcare.go.kr>, 2021. 4. 28. 인출) 활용

3. 자녀돌봄을 위한 시간지원

0~1세아를 부모가 직접양육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를 들 수 있다.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도입한 2001년 이래 육아휴직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제도를 2019년 8월에 도입하였으며, 육아휴직자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여성가족부, 2021d: 79). 그러나 이들 제도를 강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의 활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가. 출산전·후휴가제도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서 출산전과 후에 최소한의 휴가를 부여하기 위함이다(고용노동부, 2021: 9).

출산전·후휴가의 주요 대상은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이며,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무기간 등과 관계없이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1: 11).

출산전·후 휴가 기간은 출산을 전후하여 단태아는 90일을 부여하고, 출산후는 45일을 보장한다(고용노동부, 2021: 11). 단, 다태아일 경우는 120일을 부여하며, 이때 출산 후에는 60일을 보장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1: 11).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법정 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 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역일상 90일을 부여한다(고용노동부, 2021: 11). 휴일 또는 휴무일에 출산한 경우는 출산 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다.

분할사용 기간은 단태아 기준 최대 44일이며, 다태아는 59일이다(고용노동부, 2021: 13).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초·중기에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III-3-1〉 출산전·후휴가 주요내용(2021)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대 상	• 출산을 앞둔 임신 중인 근로자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 간	• 출산을 전후하여 90일 부여(출산 후 45일 보장) 단, 다태아 일 경우 120일 부여하며, 이때 출산 후에 60일 보장해야 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할사용	•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분할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
소득보장	•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분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 (단, 최초 60일은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 (대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 최종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200만원)
복귀시 업무보장	•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분보장	•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제한 • 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p. 9.

〈표 III-3-2〉 출산전·후휴가 지원내용(2021)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00만원까지)

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p. 16.

출산전·후휴가의 소득보장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1: 14).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월 최대 200만원 지원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14).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다태아 45일)은 유급기간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용노동부, 2021: 15).

단, 정부가 월 통상임금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급하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200만원이므로 최초 60일 동안에(다태아 75일) 이를 초과하는 통상임금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1: 15).

단태아의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하고, 다태아는 최초 75일을 초과한 45일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한다(고용노동부, 2021: 14). 이때,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단태아, 다태아의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I-3-3〉 단태아, 다태아 출산전·후휴가 기간 및 급여수준(2021)

구 분	단태아		다태아
전체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출산후 45일)		120일 (출산후 60일)
기업의 유급 의무 기간	60일		75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고용보험) 월 200만원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모두 지원	120일 모두 지원
	대규모 기업	무급 30일 지원	무급 45일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p. 15.

배우자 출산휴가의 목적은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 및 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21: 51). 주요 대상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이다(고용노동부, 2021: 52). 계약직·파견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53).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10일이며 유급이다(고용노동부, 2021: 53).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58). 단,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 내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58).

출산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53).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53).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 중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분할 사용일수는 제한이 없다. 두 번째 분할 시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1: 58).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21: 53).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급여액은 휴가를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용노동부, 2021: 64).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최초 5일분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원받으며,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용노동부, 2021: 53). 반면,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단, 유산·사산의 경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고용노동부, 2021: 52).

〈표 III-3-4〉 배우자 출산휴가의 주요내용(2021)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근속기간·근로형태·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
기간	• 10일 부여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분할사용	• 1회	분할 사용일수 제한 없음
소득보장	• 대기업10일 사업주가 지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최초 5일분 고용보험에서 지급(단,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급분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함)	통상임금 지급(고용보험 지원은 최대 382,770원)
신분보장	•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p. 51.

나.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며,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21: 121).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이다(고용노동부, 2021: 124). 사업주는 남녀구분 없이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고용노동부, 2021: 124). 단,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124).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부모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용노동부, 2021: 125).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다(고용노동부, 2021: 126). 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1년만 육아휴직으로 인정하고, 초과하는 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의로 부여한 휴직으로 본다(고용노동부, 2021: 126).

〈표 III-3-5〉 육아휴직제도의 주요내용(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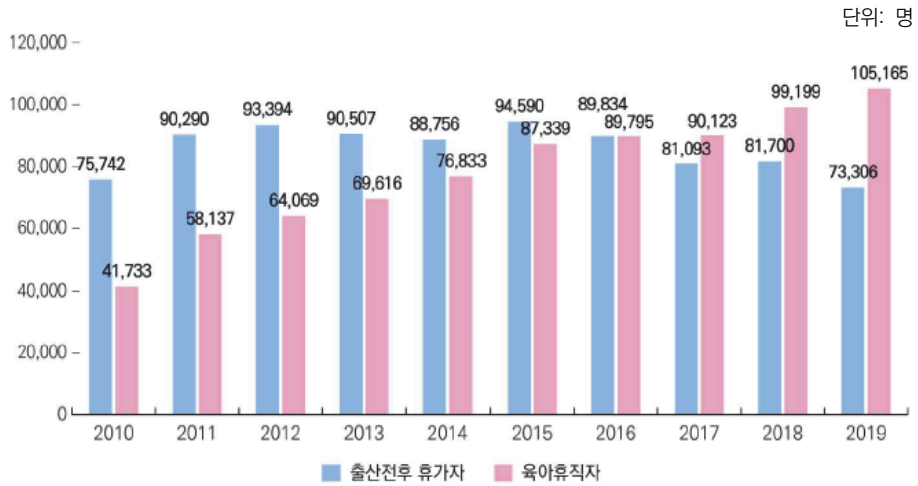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대상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불문)	남·녀 근로자 각 1년씩 사용가능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	1년 이내	분할사용은 1회
신분보장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처우 금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원제도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 절차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p. 121.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 3개월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이다(고용노동부, 2021: 149).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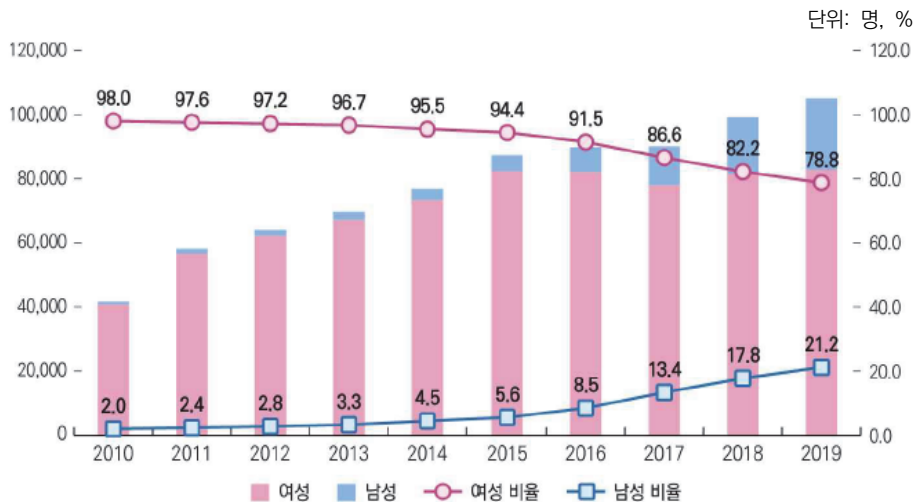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며,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 이다. 휴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용노동부, 2021: 150).

[그림 III-3-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자 추이(2010~2019)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통계. p. 50.

[그림 III-3-2] 성별 육아휴직자 추이(2010~2019)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통계. p. 51.

[그림 Ⅲ-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육아정책연구소, 2020: 50), 육아휴직제도를 여성 위주로 활용하는 양상은 여전하다. 또한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는 2.0%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는 21.1%로 증가하였다(그림 Ⅲ-3-2 참조)(육아정책연구소, 2020: 51). 그러나 육아휴직자 중 300인 이상 기업종사자 64.6%를 활용하고 전체 취업자 중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는 12.7%를 차지하는 등 대기업 위주로 활용된다(여성가족부, 2021d: 79).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21: 182).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육아휴직과는 달리 지속적으로 근로함으로써 일·가정의 양립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표방된다(고용노동부, 2021: 182).

〈표 Ⅲ-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내용(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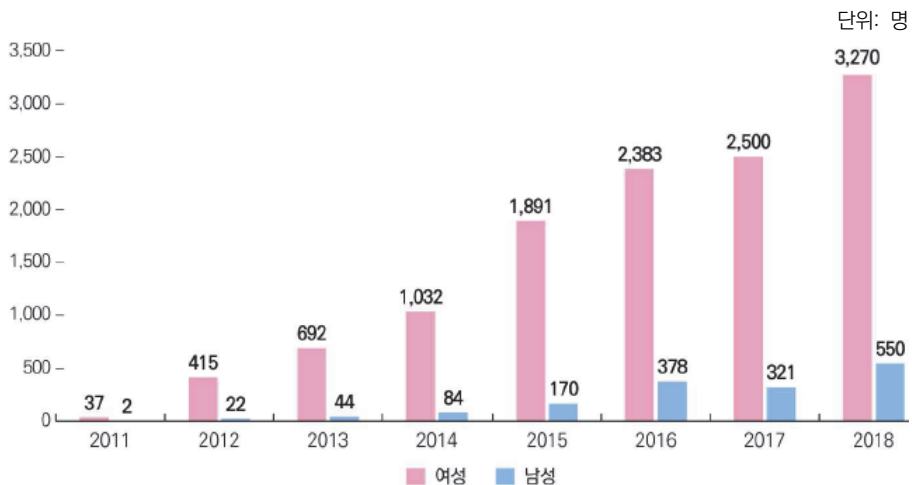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남·녀 불문)	
기간	1년 이내.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분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의 복귀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안됨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장근로	사업주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음	「고용보험법」에 의한 수급자격·절차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p. 18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근로자이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185). 사업주는 남녀구분 없이 지원대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18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간은 주당 15~35시간 이며, 단축기간 이전의 주당 근로시간이 반드시 40시간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용노동부, 2021: 186). 즉,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단축 후의 주당 근로시간이 15~35시간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정되며(고용노동부, 2021: 186), 3일 동안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을 일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그림 III-3-3] 성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 추이(2011~2018)



자료: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통계. p. 51.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동안 보장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2021: 186). 단,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1년)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부여해야 하며(고용노동부, 2021: 186),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에는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자 수는 육아휴직자 수와 마찬가지로 매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의 [그림 III-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위주로 활용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51)

라.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무급)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2021: 214).

가족돌봄휴가 대상은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이다(고용노동부, 2021: 216).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허용된다(고용노동부, 2021: 216).

〈표 III-3-7〉 가족돌봄휴가제도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고
대상	•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간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1일 단위로 사용 사용) • 법 제22조의2 제4항 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사용 가능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 가능
신분보장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원제도	• 없음	• 한시 사업으로 '20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시행

자료: 고용노동부(2021). 2021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p. 214.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대 10일이다(고용노동부, 2021: 216).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대 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 근로자는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 2021: 216). 가족돌봄휴가 사용은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고용노동부, 2021: 216).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한 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가 합의하면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고용노동부, 2021: 217).

단, 가족돌봄휴가는 자녀의 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병원진료 동행 등은 자녀 양육의 사유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자녀의 개별적인 봉사, 체험, 탐방 등 학교 밖의 활동이나 여행, 시험동행 등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용노동부, 2021: 217).

IV

외국사례 및 시사점

- 01 독일
- 02 프랑스
- 03 스웨덴
- 04 핀란드
- 05 종합 비교 및 시사점

IV. 외국사례 및 시사점

제4장에서는 영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수당제도를 운영하는 1) 독일, 2) 프랑스, 3) 스웨덴, 4) 핀란드의 제도별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 지원내용을 살펴해보았다. 또한 각 수당제도의 제도적 특성을 논하고 유관 제도와의 관계성을 고찰함으로써, 각국의 수당제도가 우리나라의 영아수당 도입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였다.

1. 독일

현대 독일의 가족지원 제도는 서독의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서독의 가족정책은 기독교민주당과 기독교사회연합의 가톨릭 가족 가치를 근간으로 형성되었다(박은정, 2019b: 95-96). 가톨릭 가치에 기반한 보충성의 원칙은 가족의 돌봄 역할과 책임성의 강조로 이어졌다(박은정, 2019b: 95-96). 젠더 계약과 가톨릭 전통에서 비롯된 보충성의 원칙은 가족 외부에서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으로 여겨져 온 돌봄을 수행하는 보육서비스의 발달을 저해하였고, 부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정 내에 머무르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직접적인 현금제도의 발달을 가져왔다(Bertram & Bujard, 2012). 즉, 독일의 가족정책은 주된 지원유형인 현금, 시간, 보육 인프라 중에서 현금급여가 강화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보육서비스를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탈가족화 경향은 약하고 현금급여를 통한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화 경향은 강한 보수주의 모델의 전형으로 구분되어 왔다(Esping-Andersen, 1999; Gauthier, 1996; Leitner, 2003; 박은정, 2019b).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가족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보육 인프라의 확충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현금지원 제도는 여전히 독일 가족정책의 주된 지원방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 현금지원 수당제도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수당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제도가 이외 유관 제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가. 아동수당(Kindergeld)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¹²⁾

독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아동수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직접적인 현금이전 정책을 실시한 데서 비롯되었다(Rainer et. al., 2012). 아동수당(Kindergeld) 제도는 독일 기본법(Grundgesetz) 중 ‘부부와 가족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Artikel 6 Absatz 1)’는 규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Rainer et. al., 2012). 통일된 이후 현재까지 아동수당은 서독의 법적 기초를 토대로 발전하였으며, 독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아동수당제도는 1954년 구서독(Bundesrepublik Deutschland)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지급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Böhmer, Matuschke, & Zweers, 2008). 최초 아동수당의 급여액은 25마르크(약 13유로)로,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에 상응하는 현재의 아동수당 급여액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당초 아동수당의 재정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에 의해서 각출되는 사회보험급여에 속했으나, 1964년부터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통해 재정이 마련되었다(Rainer et. al., 2012).

독일 아동수당의 전개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54년부터 1974년까지이며, 이 시기는 이른바 “듀얼 체계(Duales System)”의 시기이다(Rainer et. al., 2012: 13). 듀얼 체계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말한다. 자녀세액공제(Kinderfreibeträge)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적인 지원 정책으로 아동수당과 함께 발전해왔다(Rainer et. al., 2012). 아동수당 도입 초기에는 셋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였으나, 1961년 이후로 구서독에서는 지급대상을 둘째 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을 실시하였다(Rainer et. al., 2012: 14). 일정소득 이상일 경우는 감액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상한선을 초과한 가구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Rainer et. al., 2012: 14)

두 번째 단계는 1975년부터 1982년까지로 자녀세액공제가 일시 중단되면서 듀얼 체계가 중단된 시기이다(Böhmer et. al., 2008; Rainer et. al., 2012). 정부가 교체된 1974년에 아동수당 개혁이 실행되면서, 1975년에 사회민주당(SPD)과

12) 이하는 Böhmer, Matuschke, & Zweers(2008), Rainer et al.(2012)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자유민주당(FDP)의 대연정 정부인 사회자유(sozial-liberale) 연합정부에 의해 자녀세액공제가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Rainer et. al., 2012: 15). 당시 폐지의 이유로 독일 정부가 내세운 바는 자녀세액공제가 고소득층 가구에 이익이 되는 역진적인 제도라는 점이었다(Rainer et. al., 2012: 15). 즉, 자녀세액공제 제도에 내포된 불공평성이 제도 폐지의 주된 이유였다. 반면에 아동수당 제도는 확대되었다. 당시 아동수당 개혁을 통해 첫째 자녀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인 수당제도로써 자리잡았다.

세 번째 단계는 1983년부터 1995년까지로 듀얼 체제가 재도입되면서 안정화된 시기이다. 1982년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이듬해인 1983년에 자녀세액공제가 다시 도입되었다(Rainer et. al., 2012: 15). 자녀세액공제가 도입되면서 아동수당의 지급조건도 변경되었다. 즉, 자녀의 출생순위를 반영하여 첫째 자녀는 이전과 동일하게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나, 둘째 자녀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Rainer et. al., 2012: 15).

한편, 이 시기에는 아동수당 이외에 새로운 현금지원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먼저 저소득층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금지원 제도로 추가아동수당(Kindergeldzuschlag)이 도입되었다(Rainer et. al., 2012: 15). 또한 1986년에는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제도로 아동의 주양육자에게 지급되는 육아수당(Erziehungsgeld)이 도입되었으며(Rainer et. al., 2012: 15), 이는 현재 부모수당(Elterngeld)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시기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듀얼 체제가 선택 모델(Optionsmodell)로 전환된 1996년 이후이다(Rainer et. al., 2012: 16). 1996년 아동수당 개혁을 통해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모델의 틀이 자리 잡았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선택 모델은 「연방아동수당법(Bundeskindergeldgesetz, BKGG)」과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 EStG)」에 근거하여 실시된다(Rainer et. al., 2012).

아동수당 체계의 개혁을 촉발한 것은 1990년에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성인들의 최저생계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아동의 최저생계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었다(Rainer et. al., 2012: 15-16).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아동의 최저생계비 보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아동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수준의 아동수당 지급이라는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 이

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액이 아동의 최저생계비보장에 근접한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모든 아동의 최저생계를 동일하게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게 되었다(Böhmer et. al., 2008: 8; Rainer et. al., 2012: 15-16).

1996년 아동수당 개혁은 세제제도와 가족 현금지원 제도를 정비하여 아동수당 지급 수준을 아동의 최저생계비 보장 수준으로 끌어올렸다(Böhmer et. al., 2008: 8). 이를 통해 아동수당 급여액이 급격히 상승하였으며, 1996년 이후에도 아동의 최저생계비 증가에 따라 급여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 개혁을 통해 지급 대상자 범위도 확대되어 지급연령이 만 16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되었다(Böhmer et. al., 2008; Rainer et. al., 2012). 만 18세 이상 연령의 자녀라도 학업 및 직업 훈련을 받는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예외 조항에 해당될 경우 만 27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만 25세까지 유예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Rainer et. al., 2012).

아동수당 지급액의 상승과 동시에 자녀세액공제액도 상승하였다. 듀얼 체계가 아닌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는 자가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모델이 도입된 이후에도 자녀세액공제 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지속되었다(Rainer et. al., 2012). 아동수당 지급액의 증가와 함께 자녀세액공제액도 증가하면서, 일정소득 이상인 고소득층이 여전히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액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Rainer et. al., 2012).

2) 제도의 주요 내용¹³⁾

가) 지급대상 및 기준

독일에 거주 중이며 세금 납부자로서 납세 의무를 지닌 부모는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EStG)」 62조(§ 62 ff)에 근거하여 보장된다. 개별적으로 부여된 세금번호가 아동수당 수급 자격을 증명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소득이나 납부하는 소득세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자녀수에 따라서만 차등 지급된다.

13) 이하 내용은 Familienkasse(2020), Familienkasse(2021a)를 토대로 정리함.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에서 스위스 국적자와 이주의 자유가 있는 EU 국가 혹은 유럽경제공동체(Europäischen Wirtschaftsraum)¹⁴⁾ 국적의 독일 거주민은 아동수당 지급이 가능하다(Familienkasse, 2021a: 6). 알제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마로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튀니지, 터키 출신은 독일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자격을 가질 수 있다(Familienkasse, 2021a: 8). 난민이나 망명인의 경우에는 취업활동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아동수당 지급권을 갖는다(Familienkasse, 2021a: 8). 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독일에 거주하는 제3국 출신 외국인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체류 비자의 경우는 가족기금에 직접 문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한다(Familienkasse, 2021a: 8).

「소득세법」과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권 중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권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모 중 「소득세법」에 따른 지급권을 가진 부모의 자격을 우선하여 인정한다(Familienkasse, 2021a: 8). 또한 부모 중 아동수당 지급권 취득 결정은 자녀의 양육비를 주로 책임지는 쪽에게 우선하여 부여된다. 양육비 책임이 동등하게 부과될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부모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지방법원에서 아동수당 지급권 결정을 진행하게 된다(Familienkasse, 2021a: 22-23).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은 주로 부모가 지급권을 가지지만, 부모 양쪽이 모두 없거나, 부모의 거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이 직접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Familienkasse, 2021a: 38). 즉, 타인에 의해 자녀로서 양육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아동 자신이 직접 아동수당 지급하게 된다.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은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 이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만 25세까지 연장되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 상태인 경우에는 만 21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Familienkasse, 2021a: 15).

한편, 직업교육이나 대학교육 중 질병이나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교육이 중단될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Familienkasse, 2021a: 16).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업교육으로 이행하거나, 대학 졸업 이후 취업을 준비하는 등 이행

14)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체코 공화국, 헝가리, 키프로스

단계, 과도기 단계에서는 4개월까지 아동수당이 계속해서 지급된다(Familienkasse, 2021: 16).

나) 급여형태 및 지급액

아동수당은 현금급여 형태로 지원되며,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현금지원이 아닌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신청에 의해 지급되며, 신청서에 제출한 계좌로 현금이 매달 이체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Familienkasse, 2021a: 38).

〈표 IV-1-1〉 독일의 아동수당 지급액(2002/2010/2020/2021)

단위: 유로(€)				
	2002	2010	2020	2021
첫째, 둘째 자녀	154	184	204	219
셋째 자녀	154	190	210	225
넷째 자녀부터	179	215	235	250

주: 유로화 직후인 2002년 아동수당 지급액임.
자료: BMF(2017); Familienkasse(2020), p. 22; Familienkasse(2021a), p. 10을 토대로 재구성함.

2021년 기준 아동수당 지급액은 첫째, 둘째 자녀가 219유로, 셋째 자녀는 225유로, 넷째 자녀 이상은 250유로이다(Familienkasse, 2021a: 10). 이처럼 아동수당은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자녀 중 첫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기준으로 볼 때 두 번째 자녀가 첫 번째 자녀로 인정된다(Familienkasse, 2021a: 10). 예를 들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자녀가 4명일 경우 첫째 자녀가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초과하게 되면 둘째, 셋째 자녀가 219유로, 넷째 자녀가 225유로를 지급 받게 된다(Familienkasse, 2021a: 10).

3) 아동수당보조금(Kinderzuschlag)¹⁵⁾

아동수당보조금은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추

15) 이하 내용은 Familienkasse(2021b)를 중심으로 정리함.

가적인 아동수당을 의미한다(Familienkasse, 2021b: 3). 아동수당보조금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부모가 자신의 최저생계비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이 자녀를 포함한 전체 가족의 생계비는 충족하지 못할 때 지급된다(Familienkasse, 2021b: 5). 주거비용이 너무 높거나 다자녀 가구일 경우에는 중간 소득계층도 감액 아동수당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Familienkasse, 2021b: 3). 소득하한선은 한부모인 경우 600유로, 부부는 900유로이다. 이 소득에는 아동수당, 아동수당보조금, 주거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Familienkasse, 2021b: 6).

아동수당보조금은 기본적으로 매달 아동 당 205 유로이나, 부모와 자녀의 소득 및 자산에 따라 감액되기도 한다(Familienkasse, 2021b: 11). 소득산정에 따라 6개월 간 아동수당보조금이 지속되며, 6개월 이내에는 소득이나 주거비용이 변경되더라도 아동수당보조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6개월 이후에 반영될 수 있다(Familienkasse, 2021b: 19-20).

나. 부모수당(Elterngeld)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¹⁶⁾

현재 독일의 육아휴직제도에 속하는 부모수당 제도의 전신은 1986년 도입된 육아휴직(Erziehungsurlaub) 제도이다. 육아휴직은 모성휴가(Muttersurlaub)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부모의 역할과 경제활동의 양립을 지원하고, 인적자본을 생산하는 부모의 돌봄 역할을 사회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되었다(Bertram & Deuflhard, 2013; 박은정, 2019a: 212에서 재인용).

독일의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으며, 최대 월 600마르크(DM)¹⁷⁾가 지급되었다. 지급액이 적고 소득 상한선이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 이용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고 고소득층의 사용 비율이 매우 낮았다. 게다가 부모가 세 번까지 휴직교대가 가능했으나 육아휴직 이용의 여성 편중 현상도 지속되었다(Gerlach, 2010; Bertram & Deuflhard, 2013; 박은정, 2019a: 212에서 재인용). 한편 육

16) 이하는 Bertram & Deuflhard(2013), Gerlach(2009), Samtleben, Schaeper & Wrohlich(2019)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17) 약 306유로

아휴직 기간은 총 3년으로 유급 2년과 1년의 무급 휴가가 보장되었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들이 이전의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했다(Gerlach, 2010; 박은정, 2019a: 212에서 재인용).

이처럼 육아휴직제도의 낮은 소득대체율과 지급방식의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사회복지급여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중산층 이상 및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의 출산율 감소에 육아휴직제도가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Gerlach, 2010; 박은정, 2019a: 212에서 재인용). 이러한 비판 속에서 2000년 「육아휴직법」 개혁이 추진되었고 육아휴직이 부모시간(Elternzeit)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2001년 부모시간제도가 실시되었다. 부모시간제도는 총 3년 동안 이용 가능하고, 자녀가 만 8세까지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부모시간을 사용하면서 주 30시간까지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다(Bertram & Deuflhard, 2013).

2002년 출범한 사민당과 녹색당 연합 정부는 지속가능한 가족정책(nachhaltige Familienpolitik)으로의 전환을 표명하였다.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 연방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 제정으로 이어졌고, 2007년 1월부터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가 실시되었다(Huebener, Müller, Spieß & Wrohlich, 2016; 박은정, 2019a: 212에서 재인용). 부모수당제도는 기존의 육아휴직제도의 낮은 급여 수준을 개선하여 자녀출산 이후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완하고 집중적인 자녀양육 시기에 맞춘 소득지원 개념으로 도입되었다(Bertram & Deuflhard, 2013; Huebener et al., 2016; 박은정, 2019a: 213에서 재인용). 생애주기에 따른 기본적인 소득지원이라는 개념이지만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감소를 대체하는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부모수당액이 차등 지급되었다(Bertram & Deuflhard, 2013; Huebener et al., 2016; 박은정, 2019a: 213에서 재인용).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제도가 이전의 육아휴직제도에 비해 진일보하였으나,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지점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다. 2015년 7월에는 부모시간 및 부모수당의 제도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다(박은정, 2019a: 213). 제도 개선안에 따라 도입된 부모수당 플러스(Elterngeld Plus)와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bonus) 제도는 부모의 일과 자녀돌봄 방식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혔다(박은정, 2019a: 213). 기본 부모수당 대신에 부모수당 플러스를 이용하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최대 28개월까지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BMFSFJ, 2020: 22). 부모수당 플러스의 월 지급액은 소득과 합쳐서 기본부모수당 월급여액과 동일하도록 지급된다(BMFSFJ, 2020: 22). 파트너십 보너스는 부모양쪽이 주당 25~30시간을 근무하면서 함께 자녀를 돌볼 경우 부모수당 플러스를 4개월 추가해주는 제도이다(BMFSFJ, 2020: 24).

2) 제도의 주요 내용¹⁸⁾

가) 지급대상 및 기준

부모수당 지급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BMFSFJ, 2020: 11).

- 직접 자녀 돌봄 및 양육
- 자녀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
-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대 주당 30시간 근무
- 독일에 거주

상기의 수급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실업자, 전업주부도 부모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BMFSFJ, 2020: 12). 또한 친자의 부모뿐만 아니라, 법적 혼인 아내/남편의 친자, 사실혼에 준하는 동거인의 친자, 입양 자녀인 경우에도 부모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BMFSFJ, 2020: 12). 한편, 부모가 질병, 장애, 사망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손자 또는 증손자, 조카, 형제자매를 돌볼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BMFSFJ, 2020: 12).

한부모 부모수당은 다른 부나 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세법상 한부모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된다(BMFSFJ, 2020: 13). 또한 청소년청(Jugendamt)이 다른 부나 모가 자녀를 돌볼 경우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안녕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한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다(BMFSFJ, 2020: 13).

독일의 부모수당은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외국 국적의 부모에게도 지급된다. 부모가 EU 소속 국가,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출신일 경우 부모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BMFSFJ, 2020: 16).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부모가 지

18) 이하는 BMFSFJ(2020)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속적으로 독일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일하고 있을 경우 부모수당을 수급할 수 있다. 즉,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았거나 독일에서 근로를 위한 거주 허가를 받았다면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다(BMFSFJ, 2020: 15-16).

나) 지급 기간 및 지급액

독일의 부모수당은 기본부모수당(Basiselterngeld), 부모수당플러스(Elterngeld Plus), 파트너십 보너스(Partnerschaftsbonus)로 구분할 수 있다(BMFSFJ, 2020: 11). 3가지 유형의 부모수당은 다른 유형과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부모는 원하는 부모수당의 형태와 기간을 월별로 선택할 수 있다(BMFSFJ, 2020).

기본부모수당은 부모 중 한쪽만 이용할 경우는 12개월, 양쪽 부모가 모두 이용할 경우는 14개월을 이용할 수 있다(BMFSFJ, 2020: 19). 양쪽 부모가 이용할 때는 한 부모가 최소한 2개월 이상 이용해야 한다(BMFSFJ, 2020: 19). 추가로 주어지는 2개월은 일명 파트너달(Partnermonate)로 불리며, 한부모는 혼자서 총 14개월을 이용할 수 있다(BMFSFJ, 2020: 19). 부모수당은 부모가 동시에도 지급받을 수 있다. 파트너달은 자녀 출산 후 2개월 내에 출산 전보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BMFSFJ, 2020: 20).

기본부모수당은 자녀 생후 14개월 내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생후 14개월 이후에는 부모수당 플러스나 파트너십 보너스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BMFSFJ, 2020: 20). 한편, 자녀가 생후 1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부모수당 수급을 중간에 중단하고 추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어머니가 모성급여(출산후 급여)를 받은 달도 기본 부모수당 수급 기간에 포함되며, 부모수당 플러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 즉, 생후 15개월부터는 부모수당이 중단될 수 없다(BMFSFJ, 2020: 22).

자녀가 생후 15개월 이후인 경우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중단하면 부모수당 지급 기간이 남아도 수급할 수 없으며, 최소한 한쪽 부모가 부모수당 플러스나 파트너십 보너스를 이용하여야 한다(BMFSFJ, 2020: 22). 기본부모수당 1개월이 부모수당 플러스 2개월이다. 즉, 부모수당 플러스로만 부모수당을 받을 경우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28개월을 수급 받을 수 있다(BMFSFJ, 2020: 22). 생후 14개월 이후 부모수당플러스를 이용할 경우 중단할 수 없으나, 부모가 교대하여 사용할 수는 있다(BMFSFJ, 2020: 22).

일반적인 기본부모수당의 소득대체율은 65%이다(BMFSFJ, 2020: 30). 즉, 출산 전에 받았던 세후 소득의 65%가 기본부모수당 지급액으로 산정된다. 이는 소득이 없는 달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달은 출산 전 세후 소득과 발생한 세후 소득 간에 차이를 기준으로 65%를 지급한다(BMFSFJ, 2020: 31).

기본부모수당의 상한액은 1,800 유로이다. 그리고 출산 전 소득이 없었거나 월 300유로보다 적을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출산 후 소득 감소가 없을 경우에는 하한액인 300유로를 지급받는다(BMFSFJ, 2020: 36). 부모수당 플러스와 파트너십 보너스 이용 시에는 기본부모수당액의 절반인 최소 150유로, 최대 900유로를 지급한다(BMFSFJ, 2020: 36).

저소득층을 위한 부모수당의 소득대체율은 별도로 산정된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월 세후 소득 1,240유로이다(BMFSFJ, 2020: 36). 출산 전 세후 소득이 1,200유로 이상 1,240유로 미만일 경우 소득대체율은 65~67%이다. 소득이 2유로 감소할 때마다 소득대체율은 0.1%씩 증가한다. 출산 전 세후 소득이 1,000유로 이상 1,200유로 미만일 경우 소득대체율은 67%이다. 월 세후 소득이 1,000유로 미만이면, 단계적으로 100%까지 소득대체율이 증가한다(BMFSFJ, 2020: 36).

쌍둥이의 경우는 두 자녀에 대한 부모수당을 한 번에 받아야 한다(BMFSFJ, 2020: 37). 대신에 부모수당 추가금이 지급된다. 기본부모수당을 월 300 유로, 부모수당 플러스는 월 150 유로이다(BMFSFJ, 2020: 37). 추가금은 하한액과 상한액에도 반영되어 쌍둥이 부모는 최소 월 600유로, 최대 월 2,100유로를 받을 수 있다(BMFSFJ, 2020: 38). 또한 쌍둥이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추가금이 한 배씩 상승한다. 즉, 세쌍둥이는 두 배의 추가금인 기본부모수당 600유로, 부모수당 플러스 300유로가 지급되며, 네 쌍둥이는 세 배의 추가금이 지급된다. 이러한 쌍둥이 추가금은 일명, 다둥이 추가금(Mehrlings-Zuschlag)으로 불린다(BMFSFJ, 2020: 38).

부모수당에 해당하는 자녀 외에 함께 거주하는 다른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부모수당 추가금을 지급한다. 이는 일명 “형제 보너스(Geschwisterbonus)”이다. 형제 보너스는 기본부모수당일 경우 월 최소 75유로, 최대 기본부모수당의 10%까지 지급된다(BMFSFJ, 2020: 38). 형제 보너스도 다둥이 추가금과 마찬가지로 부모수당 지급액의 하한액과 상한액에 반영된다(BMFSFJ, 2020: 39).

형제 보너스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다른 자녀와 거주해야 한다(BMFSFJ, 2020: 38).

- 최소 1명의 만 3세 미만 자녀
- 최소 2명의 만 6세 미만 자녀
- 최소 1명의 만 14세 미만 장애를 가진 자녀

입양자녀의 경우는 입양과정이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입양자녀가 집에 온 날부터 적용된다. 입양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을 경우에는 형제 보너스가 적용되지 않는다(BMFSFJ, 2020: 39).

다. 양육수당(Betreuungsgeld)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¹⁹⁾

가) 양육수당 도입과정

독일 연방정부 차원의 양육수당은 도입 2년 만에 폐지될 정도로 가장 격렬한 논쟁 속에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현재는 일부 주정부 차원의 가정양육수당만이 남아 있다. 양육수당은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이기 때문에 도입 당시부터 시대에 역행하는 가족상을 바탕으로 설계된 제도라는 비판을 받았다(송다영·박은정, 2019: 114). 기관에 보내지 않을 경우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여성을 가정 내에 머물게 만드는 유인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명 “아궁이 수당(Herdprämie)”이라고 비난받았다(송다영·박은정, 2019: 114).

여러 정당과 학계의 반대 속에서 2012년 양육수당 도입 의결 당시에 제도 도입을 주도한 당은 보수당에 해당하는 기독교사회연합당(CSU, 이하 기사련)이었다(송다영·박은정, 2019: 114-115). 주정부 차원에서 양육수당을 가장 먼저 도입한 주는 기독교민주연합당(CDU, 이하 기민련)이 집권한 튀링엔(Thüringen)이었다. 주정부 차원의 양육수당이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된 것은 기사련(CSU)이 집권한 바이에른주가 전국적인 양육수당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데에서 시작되었다(송다영·박은

19) 이하는 송다영·박은정(2019)과 박은정(2019)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정, 2019: 114-115).

기사련의 양육수당 도입은 기민·기사련 연합당의 부모의 선택 자유 논리에 기반한다. 하지만 정책적 결정의 이면에는 만 1세 이상의 아동에게 보육시설 이용청구권을 부여하는 데에 대한 기민·기사련 연합당의 반대급부 요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송다영·박은정, 2019: 115). 2013년 8월부터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기 원하는 부모에게 보육시설 이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대체 보육서비스를 요구할 법률상 청구권이 부여되므로, 이와 동시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 기독 연합당의 주장이었다(송다영·박은정, 2019: 115). 또한 기독 연합당은 만 3세 미만 보육시설 인프라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보육시설 확충에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요구되므로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청구권 발효에 따른 국가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양육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5).

하지만 다른 진영의 당들뿐만 아니라 기민련과 자민당(FDP)의 일부도 양육수당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5). 독일 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등은 보다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양육수당 도입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5-116).

사민당은 양육수당이 일·가정양립을 위해 기관보육을 확장하는 독일 가족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강제할 법적 권한 소지 여부에도 문제를 제기하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5). 한편, 양육수당 도입 결과 아동의 조기 교육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 특히 어머니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5-116). 녹색당도 양육수당이 연방정부의 가족정책 방향성에 반하는 제도이고, 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일·가정 양립이 아니라 현금지원을 이용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비판하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6).

한편, 좌파당은 양육수당 이용자 및 이용 계층이 나뉘게 되면서 발생하는 성별화와 계층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6). 즉, 좌파당은 양육수당이 주로 여성이 가정내에서 자녀를 돌보며 급여를 수급하게 되어 성

역할이 고착화되는 성별화 성격을 지니며, 저소득층 및 이민자들이 양육수당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어 계층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6). 또한 좌파당은 양육수당 제도가 빈곤층 가족에게 오히려 불리한 제도로 작용할 수 있음을 비판하다. 즉, 장기 실업자나 일정소득 이하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II인 하르츠 IV(Hartz-IV) 수급자의 소득에 양육수당이 산입되므로 오히려 비수급자 가족보다 하르츠 IV 가족이 양육수당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송다영·박은정, 2019: 116).

정당들의 반대와 가족정책 전문가들의 대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보육시설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약속 하에 기민·기사련의 주도로 2012년 양육수당 입법안이 통과되었다(송다영·박은정, 2019: 116). 당시 연방 대통령도 위헌 소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승인함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연방 양육수당제도가 시행되었다(송다영·박은정, 2019: 116).

나) 양육수당 폐지과정

양육수당 폐지를 위한 위헌재판은 이미 양육수당 도입 이전에 예견된 것이었다. 「양육수당법」이 도입되고 제도가 실시되기도 전인 2013년 2월에 사민당 정부가 집권한 함부르크(Hamburg) 상원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양육수당 위헌소송이 제기되었다(박은정, 2019b: 112). 양육수당 위헌소송을 제기한 주된 이유는 연방정부가 양육수당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독일 가족정책의 목적 자체에 반하는 제도로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송다영·박은정, 2019: 118).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양육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법(Bundeselterngeld-und Elternzeitgesetz)」의 §4a에서 §4d 조항에 대해 2015년 7월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이 폐기되어 연방 차원의 양육수당이 폐지되었다(송다영·박은정, 2019: 118).

양육수당에 대한 위헌은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72조와 74조에 의거하여 판결되었다. 독일의 「기본법」 74조 1항(GG, Art. 74 Abs. 1)에 따르면 공공복지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경쟁적인 입법 영역이며, 기본법

72조에 2항(GG, Art. 72, Abs. 2)에서는 연방정부의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데, 공공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입법 권한은 특정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하다(송다영·박은정, 2019: 118). 즉, 국가 전체의 이익 차원에서 평등한 생활조건을 형성하거나 법적 또는 경제적 합일에 대한 보장이 연방차원의 법 규정을 요구할 때만 연방정부가 공공복지에 대한 입법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이 외에는 주정부에게 입법 권한이 부여된다(송다영·박은정, 2019: 118-119). 이러한 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의 입법 권한의 불충분성에 따라 「양육수당법」을 위헌으로 판결하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9).

2) 제도의 주요 내용²⁰⁾

가) 지급대상 및 기준

양육수당의 수급자격, 양육수당 지급액, 타급에 산입, 지급기간은 「부모수당 및 부모시간법(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 BEEG)」 §4 조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해당 조항은 위헌판결에 따라 현재 삭제되었다(송다영·박은정, 2019).

양육수당은 2012년 8월 1일 이후 출생인 생후 15개월에서 36개월 자녀를 보육시설 및 데이케어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직접 돌보거나 민간 돌봄을 이용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부모가 신청할 경우 지급되었다. 양육수당 지급은 부모의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적용되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공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녀마다 양육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송다영·박은정, 2019: 117). 단, 자녀 출생 이전 과세소득이 연 50만 유로 이상인 부부 또는 25만 유로 이상인 한부모의 경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송다영·박은정, 2019: 117).

나) 급여형태 및 지급액

양육수당은 현금급여로 2013년 8월 1일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월 100유로가 지급되었고, 2014년 8월 1일 이후부터 폐지 전까지 월 150유로가 지급되었다. 양육수당은 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양육수당이 급여 지급을 위한 소득 산정에 산입된

20) 이하는 송다영·박은정(2019)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제도는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 사회부조(Sozialhilfe), 아동보조금(Kinderzuschlag)이었다(BMFSFJ, 2013).

라. 제도적 특징 및 쟁점

1) 아동수당

독일의 아동수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아동빈곤 해결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시작되었으나, 제도의 확장에 따라 아동권에 기반한 아동의 최저생계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현금급여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독일의 아동수당은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개념에 기반한 적극적인 소득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다(박은정, 2019a).

독일의 아동수당은 부모수당이나 다른 사회급여의 수급과 무관하게 아동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적용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와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가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 제도의 선택모델을 유지하면서 조세제도와와의 결합을 통해 고소득계층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하르츠 IV 개혁 이후에 실업수당 II(Arbeitslosengeld II)에 아동수당이 소득으로 산입되면서 하르츠 개혁이 저소득 가구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송다영·박은정, 2019:116). 하지만 아동수당보조금을 통해 저소득 계층 지원을 통한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독일의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수당제도이지만 자녀수의 증가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까지 고려하고 있다.

독일의 아동수당이 영아 중심의 제도라고 볼 수는 없으나, 모든 연령 아동의 생계비 보장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시사점이 있다. 현재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현금급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아동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전체 지급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독일의 아동수당은 아동권의 관점에서 생계비 보장이라는 지급수준의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이므로 현 시점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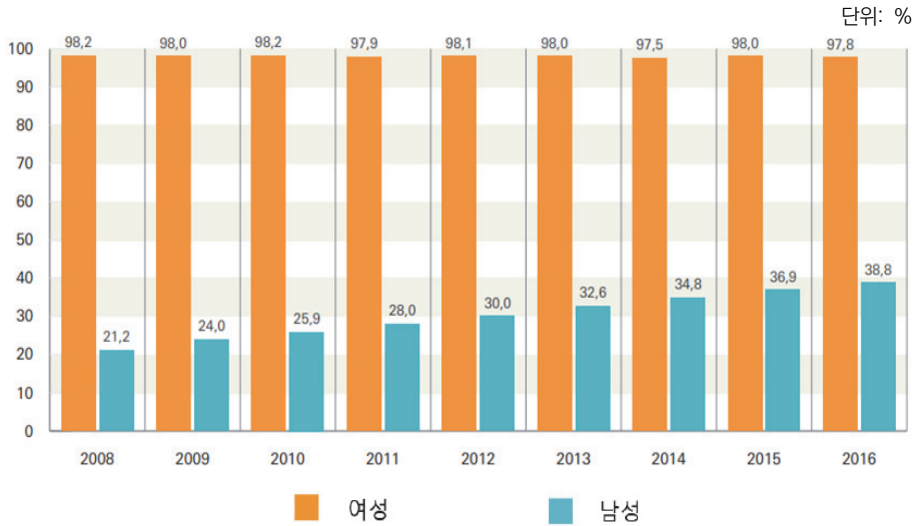
2) 부모수당

우리나라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방식이지만, 독일은 부모시간 제도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고 부모수당은 집중적인 육아기에 대한 소득 보전의 기능을 한다. 부모수당은 부모수당 플러스 및 파트너십 보너스를 도입하여 부모가 자녀돌봄과 근로시간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였으며, 다둥이와 저소득층 지원까지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부모수당은 육아휴직 급여 및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영아수당의 성격도 지닌 복합적인 제도이다. 다시 말해 독일의 부모수당은 육아휴직제도의 성격과 수당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대체 급여로 출산 전 소득에 상응하여 급여액이 증가하지만, 출산 전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300유로가 기본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수당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박은정, 2019a).

부모수당은 근로시간의 제약은 있으나 무조건 휴직을 해야만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일정 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부모가 주로 돌보고 있음을 증명하면 수급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시간은 자녀가 만 8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부모수당은 부모수당 플러스와 파트너십 보너스를 함께 이용하더라도 대부분 자녀가 만 3세 이전까지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수당은 특히 영아기 시기에 지급되는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부모수당은 남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추가적으로 파트너달, 일명 “아버지의 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실제로 부모수당을 이용한 아버지의 비율을 크게 상승시켰다. 부모수당 이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아버지 비율은 2006년 당시 3%에 불과했으나, 2008년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경우는 21.2%로 크게 증가하였고, 2016년생 자녀를 둔 아버지의 부모수당 이용률은 38.8%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IV-1-1 참조). 부모수당 제도는 부모가 함께 자녀 돌봄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효과성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IV-1-1] 독일의 부모수당 지급률(2008~2016)



자료: 독일 경제·사회학 연구소 WSI GenderDatenPortal (https://www.wsi.de/data/wsi_gdp_SO-Elterngeld-01.pdf, 2021. 4. 3. 인출)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의 도입과 폐지과정은 독일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은 성별화된 돌봄 역할 및 가족화에 기여하는 현금급여 중심 정책 기조가 아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송다영·박은정, 2019).

그러나 양육수당의 폐지가 독일의 현금급여 제도의 약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수당 및 부모수당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서 본질적인 현금급여의 소득 보장 성격은 유지하면서 탈성별화와 일·가정 양립 기조를 강화했다고 볼 수 있다. 양육수당의 폐지는 보육시설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과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으로의 기조 변화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독일 양육수당의 도입과 폐지과정은 현금급여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사례는 현재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를 확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확대의 방향성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 방향성과 부합하는지, 기존의 정책들과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

을 보여준다. 새로운 영아수당이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과 어떠한 관계로 설정되어야 할지, 영아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 및 부모의 돌봄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영아수당이 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2. 프랑스

OECD Family database (2021)에 따르면 프랑스는 합계출산율 1.84명 (2018년), 모성 고용률 73.0% (2019년)로 모두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족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성공은 프랑스 정부가 가족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Toulemon, Pailhé, Rossier, 2008: 538). 실제로 2017년 현재 프랑스의 가족에 대한 공적 지출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OECD Family database, 2021).

이 절에서는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프랑스의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제도를 살펴본다. 프랑스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은 유치원 입학 기준 0~2세 영아 그리고 3~6세 유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프랑스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매우 다양하다(신윤정, 2008: 36). 프랑스에서 가족에게 지급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당은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AF)이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2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만 지급되며, 영아 한 명만 양육하는 가정은 지급받지 못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6). 프랑스 가족수당 체계에는 0~2세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 패키지가 있는데, 이는 영아보육수당(La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7). 영아보육수당에는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La prestation partagée d'éducation de l'enfant: PreParE)과 아이돌보미 지원에 해당하는 자녀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Le 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 Cmg)이 포함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8~11). 이 두 수당은 부모의 근로상태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영아보육수당에는 출산·입양장려금(La 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과 기초수당(L'allocation de base)을 들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6-7). 출산·입양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고, 기초수당은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6-7).

본 고에서는 가족수당과 영아보육수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프랑스에서 가족수당은 보육시설과 연계되어 제공되지 않고 있고, 다만 종일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종일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시간제 보육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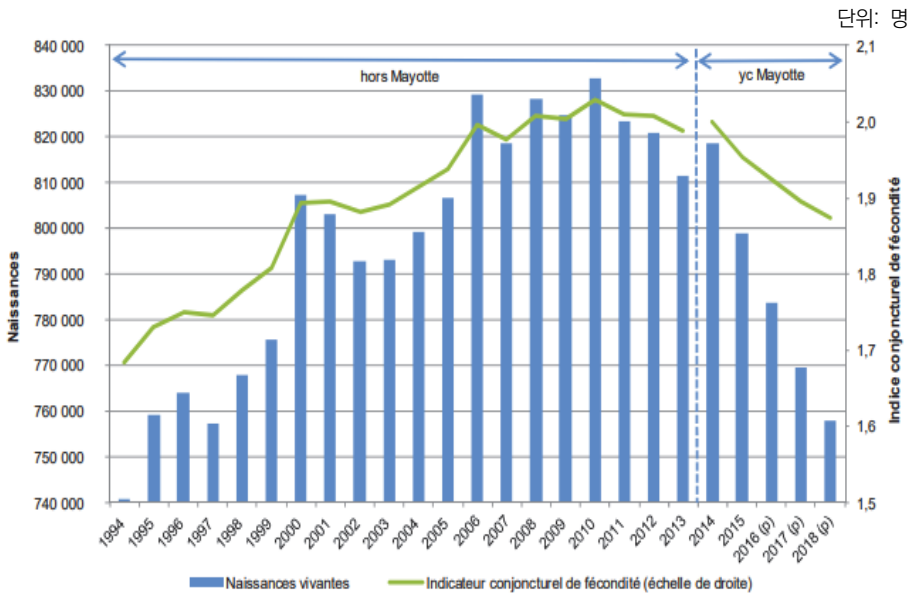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영아수당은 시설 이용과 부모 직접양육 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실로 프랑스가 다양한 형태로 영아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도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선택의 자유(Libre choix)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의도 제기된다.

여기서는 프랑스의 출생아 수와 출산율, 모성 고용률, 전체 GDP에서 가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고 0~2세아의 주된 양육방식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후에 가족수당, 취약한 가정의 영아를 위한 수당, 영아보육수당, 보육시설의 체계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프랑스의 영아 양육지원체계가 한국의 영아수당 도입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가. 현황

2018년 프랑스의 출생아수는 75만 8천명으로 나타난다. 프랑스의 연간 출산아수는 2010년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17년 연간 출산아수는 1998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PLFSS), 2020: 14).

[그림 IV-2-1] 프랑스의 연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9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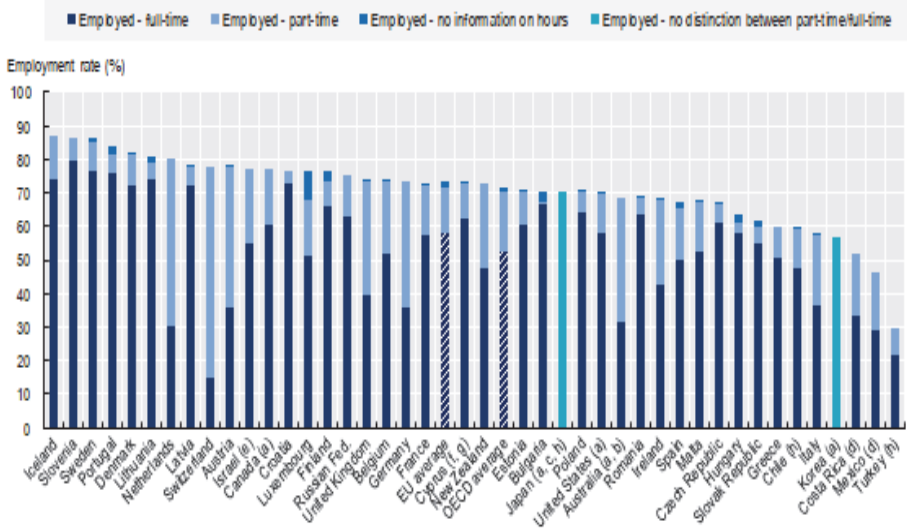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는 총출생아 수, 실선 그래프는 합계 출산율

자료: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PLFSS)(2020). Programme de Qualite et d'Efficiency < Famille >, p. 14.

프랑스의 연간 출산아 수 증가 및 감소는 출산율의 변동과 관련이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던 1994년 1.66명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6년에 약 2명의 수준에 이르게 된다(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PLFSS), 2020: 14).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약 20년간 이어진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프랑스 가족정책이 거둔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약 10년 동안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약 2명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하락하여 2019년 현재 1.84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21). 최근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하락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전 유럽국가에 걸쳐 출산율이 하락한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전체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21).

[그림 IV-2-2] OECC 국가의 모성 고용률(2019)

단위: %



주: 모성 고용률은 0~14세 자녀를 가진 15~64세 여성의 고용률을 말함.

자료: OECD Family database (2021). Chart LMF1.2A Maternal employment rates, 2019 or latest available year (https://www.oecd.org/els/family/LMF1_2_Maternal_Employment.pdf, 2021. 4. 1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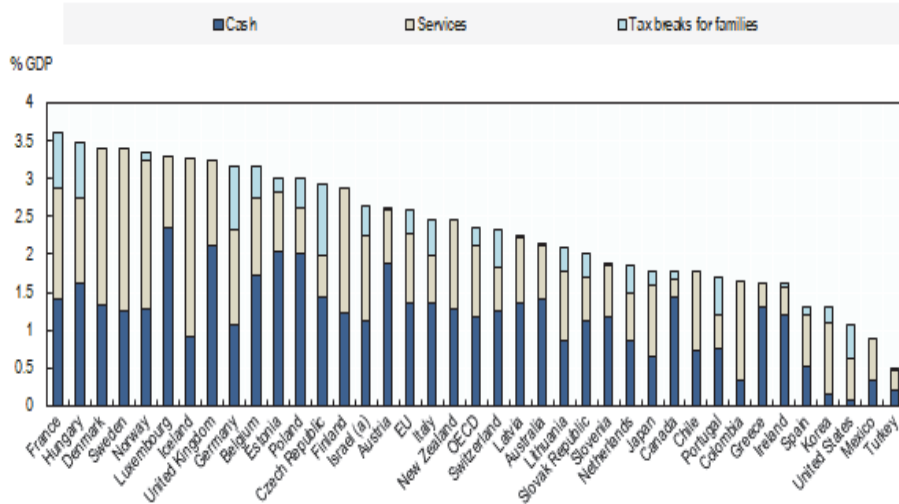
2019년 프랑스의 모(母)의 고용률은 73.0%로 북유럽국가 보다 낮은 수준이나 EU 국가의 평균인 73%에 가깝다(OECD Family database, 2021). 전체 모(母)의 고용률 중 57.2%가 종일제 고용이며 14.7%가 시간제 고용이다(OECD Family database, 2021).

프랑스의 모성 종일제 고용률은 EU 국가 평균 58.3% 수준보다 약간 낮으며 모성 시간제 고용률은 EU 국가 평균 13.6%보다 약간 더 높다(OECD Family database, 2021). 종합적으로 볼 때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유럽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나 모(母)의 고용률은 유럽국가의 평균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21)(그림 IV-2-2 참조).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도에 프랑스가 3.6%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고, 가족 부문의 지출 중에서 현금급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2%, 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6%로, 전체 가족 부문의 지출에서 현금급여와 서비스 지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21)(그림 IV-2-3 참조).

[그림 IV-2-3] OECD 국가의 가족에 대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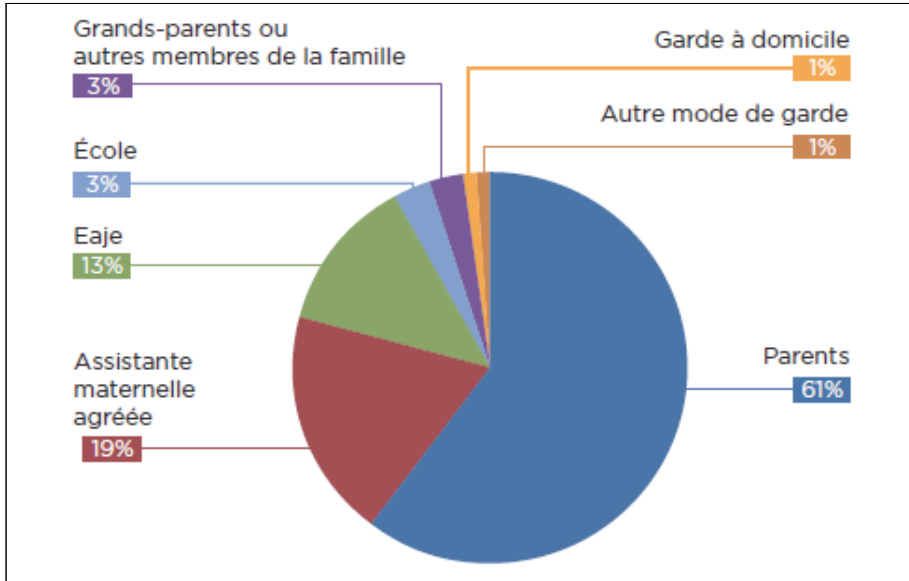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21) Chart PF1.1A. 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 (https://www.oecd.org/els/soc/PF1_1_Public_spending_on_family_benefits.pdf, 2021. 4. 15. 인출)

프랑스 0~2세아의 주중 낮 시간 동안 주된 양육자는 부모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0~2세아의 약 61%를 부모가 직접 돌보고 있다(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0: 47).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인가된 보육사(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이다. 전체 0~2세아의 19%를 인가된 보육사가 돌보고 있다(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0: 47). 그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것이 보육 시설(Eaje)로서 0~2세 아동 중 약 13%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0: 47). 학교(École)에서 영아를 돌보는 비중은 약 3%를 차지하며,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보는 비중은 약 3%로 매우 낮다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0: 47). 집에서 고용하는 보육사(Garde à domicile)가 돌보는 비중은 약 1%이며, 이외 방식으로 양육하는 경우는 약 1%를 차지한다(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0: 47)(그림 IV-2-4 참조).

[그림 IV-2-4] 프랑스 0~2세아의 주중 낮 시간 주양육자 비율(2013)

단위: %



주: 1) 주된 양육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돌보는 사람임.

2) 부모(parents), 인가된 보육사(Assistant maternelle agréée), 보육시설(Eaje), 학교(École), 조부모 등 친인척(Grands-parents ou autres membres de la famille), 집에서 고용하는 보육사(Garde à domicile), 기타 다른 방식(Autre mode de garde).

자료: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0). L'accueil de jeune enfant en 2019., p. 47.

종합컨대, 프랑스 0~2세 영아는 부모가 직접양육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인가된 보육사에 의한 보육이 그 다음으로 높으며, 시설보육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보는 비중도 매우 낮다. 이는 가족주의가 발달한 프랑스에서 영아는 부모가 직접양육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며 개인주의가 발달한 이유로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자녀 양육을 의존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부모 다음으로 영아의 주된 양육자는 인가된 보육사이며 시설양육보다 이용률이 높다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 2020: 47). 프랑스에서 인가된 보육사의 이용률이 높은 이유는 보육시설의 확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이민자를 포함한 저소득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사를 확대한 영향도 있다고 본다.

“자녀보육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은 프랑스가 자녀양육 지원 정책에서

“Libre Choix(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볼 때 (Allocations Familiales, 2020: 8) 프랑스의 정책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육아휴직제도를 통한 부모의 직접양육, 보육사를 이용한 개인양육, 시설양육이라는 선택지를 열어 놓고 부모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로운 선택”에 대해 부모들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양육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Morgan 2002: 160).

나.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 AF)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²¹⁾

프랑스 가족수당은 가톨릭교회가 중심이 되어 가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노대명 외, 2018: 319). 현대적인 모습의 가족수당은 20세기 이후 고용주가 가족을 가진 생계 부양자 남성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에서 시작되었다(노대명 외, 2018: 319).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소수의 고용주들은 가족의 생계 부양을 책임지는 남성 근로자가 가족 부양에 대한 의무가 없는 독신자와 동등한 수준의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노대명 외, 2018: 319). 이러한 목적으로 고용주는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는 남성 근로자에게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하였다(노대명 외, 2018: 319). 특별수당은 가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임금이 상승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였다. 이후 몇 개의 기업으로 구성된 보상 공단이 단계적으로 창립되어 고용주가 부담하는 특별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위험에 상호 대처하기 시작하였다(노대명 외, 2018: 319-320). 1932년부터 고용주가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고용주가 지불하던 특별수당은 1930년에 「가족법」이 창설되고 1945년에 「사회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철폐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이와 함께 자녀수에 따라 산정되고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개념이 도입되어 고용주가 지급하던 특별수당

21) 이하는 노대명 외(2018)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함.

이 가족 보조금으로 대체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이때 가족수당은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직업 활동을 하는 가장에게 가족 부양비의 일부를 보상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가족수당이 도입된 초기에 가족수당은 최소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만 지급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가족수당의 재원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던 고용주 부담의 사회보험료에 기초하였다. 가족수당 급여는 자녀수와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1967년 ‘홀별이 수당(Allocation de Salaire Unique)’을 개혁하면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족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이 도입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0). 이후 여섯 차례의 계획 작업을 거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개념을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72년 1월 3일에 자녀양육수당(Allocation de Frais de Garde)을 마련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0). 1977년 7월 12일에 당시까지 마련된 수당을 정리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노대명 외, 2018: 321). 이러한 일환으로 홀별이 수당, 가정주부수당, 자녀양육수당 등을 포함한 5가지 수당을 대체하는 수당으로서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이 창설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1).

그때까지 보편적으로 지원되던 가족수당을 1997년 죠스팽 정권은 소득 조건 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1). 소득 상한선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사람들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1). 이러한 결정은 가족수당을 자녀를 가진 모든 가족에게 지급한다는 수평적인 재분배의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결정은 1998년에 철폐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1). 실로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두 자녀 이상을 둔 모든 가구는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를 지닌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6). 이러한 수평적 재분배의 논리는 수직적 형평성의 논리와 지속적으로 대립해 왔다. 소득이 높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이후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어 왔다(노대명 외, 2018: 323). 특히 최근 유럽경제의 불황이 심각해지고 가족수당 공단의 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는 더욱 큰

이슈로 제기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3).

프랑스 가족수당의 보편적인 특성은 2015년 「사회보장재정법」 개정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3). 여기서 가족수당의 개혁은 모든 가족이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은 있지만 그 급여액은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3). 가족수당의 개혁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가족수당액은 월 순소득이 6천 유로가 넘는 가족에 대해서 절반 가량 감소하였으며, 월 순소득이 8천 유로가 넘는 가족에 대해서 4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3). 가족수당 개혁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적은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천명하였다(노대명 외, 2018: 323). 하지만 이때 이루어진 가족수당 개혁의 실질적인 목적은 재정적자에 직면하여 공공지출을 감축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노대명 외, 2018: 323).

2) 제도의 주요 내용²²⁾

가족수당은 20세 이하의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모든 가족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나, 급여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6) 가족수당은 둘째 자녀가 태어난 날 다음부터 혹은 둘째 자녀를 입양하여 양육하기 시작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6). 자녀가 14세 이상으로 성장한 후에 급여액은 증가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6). 가족수당 월급여액은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데, 예를 들어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월 32.99유로, 65.97유로, 131.95유로가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6).

가족수당은 가족에 대해 지급하는 모든 수당과 함께 중복적으로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6). 별거 혹은 이혼한 부부가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가족수당은 부부 모두에게 분할되어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6).

22) 이하 내용은 Allocation Familiales(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다. 취약가정의 영아를 위한 수당²³⁾

프랑스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매우 다양하며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가장 대표적인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6). 가족수당 이외 지급하는 수당에는 저소득, 한부모, 장애아라는 특별하게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이 있으며, 이러한 수당들은 가족수당과 중복적으로 지원된다. 즉, 가족수당이 자녀양육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정책이라면 취약계층에 한해서 그들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보조금은 3세아 부터 지급되고 개학수당은 6세아 부터 지급된다.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가족지원 수당, 아픈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녀간호수당, 장애아에게 지원되는 장애아동수당은 0세부터 지원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7). 이하에서 0~2세아를 양육하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수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가) 가족지원수당

가족지원수당은 한부모 혹은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적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3).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부부가 이혼하고 배우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3). 이혼한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최소 한달 이상 지속 되면 법원의 허락 없이도 가족 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3). 이혼한 부부가 재혼하거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되면 가족지원수당 지급은 중지된다. 이혼한 배우자가 지불하는 양육비가 가족지원수당 액수보다 적으면 그 차액 만큼의 가족지원수당이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가족지원수당의 급여액은 한부모의

23) 이하 내용은 Allocation Familiales(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경우 월 115.99유로, 부모가 없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월 154.63유로이다 (Allocations Familiales, 2020: 13).

나) 자녀간호수당

20세 미만의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가 있어 부모가 자녀를 직접 돌봐야 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자녀간호휴가를 신청하고 자녀간호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4). 자녀간호수당은 실업 상태에서도 받을 수 있으나 자녀간호수당과 실업수당은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자녀간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상당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부모가 직접 돌봐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건강보험 의료관리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4).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자녀간호수당 월 급여액은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43.83유로, 한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52.08유로 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4). 아동의 건강상태 나쁜 경우 월 112.12유로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자녀간호수당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3년이며, 6개월 혹은 1년 주기로 갱신된다 (Allocations Familiales, 2020: 14).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간호휴가는 월 최대 22일이며, 3년 동안 최대 310일의 자녀간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간호수당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근로하지 못하고 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라고 볼 수 있다 (Allocations Familiales, 2020: 14).

다) 장애아동수당

20세 이하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5). 최소 80% 이상의 장애율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은 지급되며, 장애율이 50~79%인 경우 재가서비스 혹은 특수교육을 받거나 특수교육기관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Allocations Familiales, 2020: 15).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 동안 장애아동수당은 월 132.61유로가 지급된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멈추거나 줄여서 일할 때, 자녀를 돌보는 사람을 고용할 때, 장애아동수당을 자녀

의 장애와 관련되어 지출할 때 매월 99.46~1,125.29유로를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5). 한부모가 장애아를 양육하거나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장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상향된 급여가 제공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5).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요청서와 증명서를 장애인 부서에 제출하고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부모는 자녀간호수당을 받을 수 없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5).

라. 영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²⁴⁾

1984년 12월에 기존에 지급하던 가족수당을 단순화하는 개혁이 이루어져 임신수당, 출산수당, 가족보조금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으로 대체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1). 또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부모교육수당(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과 보육사 집에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에 대한 수당(Allocation de Garde d'Enfant à Domicile)이 마련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1).

2004년 1월 1일에 영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수당들은 취업 여성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아보육수당(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체계로 재편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2). 영아보육수당은 기존의 영아수당(Allocation pour Jeune Enfant), 입양수당(Allocation d'Adoption), 부모교육수당(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가정에 있는 자녀양육을 위한 수당(Allocation de Garde d'un Enfant à Domicile), 인증받은 보육사를 고용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Agréée)의 다섯 가지 수당을 합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0~2세 영아를 위한 대표적인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노대명 외, 2018: 322).

영아보육수당은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과 영아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하는 수당은 출산·입양장려금(Prime à la Naissance ou à l'Adoption)과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이

24) 이하는 노대명 외(2018)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다. 영아자녀의 보육을 위한 수당은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과 자녀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을 들 수 있다.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부부 간에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을 나누어서 사용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Prestation Partagée d'Education de l'Enfant)으로 변경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2-323).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직업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어머니 혹은 아버지 휴가가 끝난 직후 6개월간이었으나,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에서는 자녀가 1세가 될 때까지 부부 각각 6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부 간에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확대되었다(노대명 외, 2018: 323). 영아보육 수당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도의 주요 내용²⁵⁾

가) 출산·입양장려금

출산·입양장려금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만 지급된다.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한 사실을 가족수당 금고와 기본 건강보험 기금(caisse primaire d'Assurance maladie: Cnam)에 신고해야 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6). 주치의가 직접 보고하는 경우 가족수당 금고에 임신 사실이 자동적으로 알려지므로 본인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6).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입양하고자 하는 아동이 20세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6).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는 출산·입양장려금 액수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 947.32 유로, 자녀를 입양한 경우 1,894.65유로이다. 자녀를 출산한 후 2개월 후에 급여가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6).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혹은 여러 명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자녀수에 비례하여 상향조정된 급여를 지급받는다.

25) 이하 내용은 Allocation Familiales(2020)을 참고하여 작성함.

나) 기초수당

기초수당은 3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일정 소득수준 이하 가정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7). 일정한 소득 수준 이하의 가정이 20세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도 지급된다. 다태아를 출산하거나 다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초수당은 가족 당 한 명의 자녀에게만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7). 즉, 3세 미만의 자녀를 두 명 양육하는 경우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기초수당은 자녀가 3세 생일 전까지 지급되며 입양 자녀는 입양된 날부터 3년 동안 지급된다.

기초수당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 소득수준 및 자녀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7). 자녀가 2018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났거나 입양한 경우 소득이 낮은 가정은 월 184.62유로, 소득이 높은 가정은 92.31유로가 지급된다. 자녀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태어났거나 입양한 경우 소득이 낮은 가정은 월 171.74유로, 소득이 높은 가정은 85.87유로가 지급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7).

다) 자녀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자녀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자녀를 인가받은 보육사 혹은 양육사에게 맡겨 키울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8-9). 보조금은 자녀가 6세 될 때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6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 학생, 연대활동수당 혹은 활동장려금 수급자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8-9). 즉, 자녀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근로 활동(혹은 학업) 중인 부모에게 지원된다. 인가받은 보육사는 보육사 개인 자택에서 혹은 “보육사의 집”이라는 시설에서 자녀를 돌본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8-9). 양육사는 아동의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 이때 다른 가정의 아동들과 함께 돌볼 수 있다. 보육사 서비스 제공 기관, 소규모 어린이집(microcrèche),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보육사가 자녀를 돌볼 때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8-9).

보조금은 부모가 인가받은 보육사 혹은 양육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준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8-9). 인가받은 보육사에 대해서

는 전체 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육사에 대해서는 자녀가 3세 미만인 경우 월 459유로, 3~6세인 경우 월 230유로 한도 내에서 총 비용의 50%까지 지원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8-9). 전체 비용의 최소 15%는 본인 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보조금 액수는 소득수준, 자녀수 및 자녀연령,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시간당 금액에 따라 다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8-9). 자녀는 매 월 최소한의 시간을 이용해야 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사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이용 금액은 10유로 이하이어야 한다. 한 명 혹은 여러 명의 보육사를 이용하거나, 소규모 어린이집의 보육사를 고용할 심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8-9). 한 명의 보육사가 여러 명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지원금은 아동의 부모 각각에게 모두 지원된다. 한 가족이 여러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특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라) 자녀교육분담 수당

3세 미만 자녀의 부모 혹은 20세 이하 아동을 입양한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0-11). 동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를 출산하기 전에 근로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첫째 자녀의 경우 지난 2년 이내, 둘째 자녀의 경우 지난 4년 이내, 셋째 자녀 이상의 경우 지난 5년 이내 적어도 8회의 분기별 고령 연금을 납부한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0-11). 아파서 일을 멈춘 경우, 출산휴가, 직업훈련 기간은 근로 기간으로 인정된다. 둘째 자녀부터 실업 기간도 근로 기간으로 인정된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0-11).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실업수당과 중복되어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면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실업수당을 임시적으로 받지 말아야 한다.

급여 액수는 감소된 근로활동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완전히 근로활동을 멈춘 경우 월 398.39유로, 반 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월 257.54유로, 50~80% 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148.57유로를 지급 받는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0-11). 부부 모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가족 당 최대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액수는 월

398.39유로이다. 세 자녀 이상의 가족은 보다 높은 수당을 더 짧은 기간에 지급받을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0-11). 자녀가 3세가 되었으나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거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조건 하에 유치원에 가기 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출생 혹은 입양, 자녀 수 그리고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다르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0-11). 첫째 아를 출산하였을 때 부부는 자녀의 첫 번째 생일 전 까지 각 부부 당 6개월씩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의 경우 자녀의 첫 번째 생일 전까지 12개월 사용할 수 있다. 둘째아 이상부터 부부는 자녀가 3세 될 때 까지 각 부부 당 24개월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는 자녀가 3세가 될 때 까지 전(全) 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0-11). 자녀를 1명 입양한 경우 입양 후 혹은 입양수당 지급이 끝나고 나서 최대 12개월 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를 2명 입양한 경우는 입양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12개월 후에도 자녀연령이 3세 이하라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은 근로활동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다면 자녀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과 함께 지급될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0-11). 즉,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경우 보육사 이용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근로활동을 완전히 중단한 둔 경우에는 보육사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또한 가족보조금, 자녀간호수당, 상병 혹은 모성수당, 장애 연금 혹은 은퇴 연금과 함께 지급될 수 없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한 명의 자녀에 대해 18개월에서 29개월 동안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으며,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으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 2개월 동안 자녀보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함께 지급될 수 있다(Allocations Familiales, 2020: 10-11).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한 수당을 짧은 기간 동안 높은 금액으로 받거나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자녀양육 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함께 지급될 수 없다.

마. 제도적 특징 및 쟁점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하여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아동수당, 자녀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보조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자녀교육을 분담하는 것에 대

한 수당은 육아휴직 급여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는 세 가지 유형의 수당을 가족수당 금고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급하여 이들 제도가 조화롭게 추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 아이돌보미 지원은 여성가족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여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이들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정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영아자녀에 대한 지원은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프랑스 가족수당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수당과 같이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급여액은 자녀수, 자녀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이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지원하면서 수평적인 형평성을 지향하는 동시에,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화하여 수직적인 형평성도 구현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수와 자녀연령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급여를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특성으로 인한 양육비 부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수당이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것은 프랑스 가족정책이 다자녀 가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자녀 양육방식에 대해 부모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부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영아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는 보육료로 지출하고, 부모의 직접양육을 원하는 부모는 현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선택권의 문제는 프랑스의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유로운 선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신이 직면한 제약된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선택이 반드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이나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음에 유의하여 유관 제도와의 관계를 포괄한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

3. 스웨덴

스웨덴의 가족정책은 1930년 인구 위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민당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틀이 다져지던 1970년대에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특히 스

웨덴의 가족정책은 아동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관점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는 인근의 북유럽국가보다 일찍 도입된 경향이 있다(김수정, 2006: 3).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필요한 부모보험 등은 스웨덴이 최초로 실시한 국가이기도 하다(김수정, 2006: 14). 스웨덴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우선적으로 사회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부모보험을 통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가정의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아동수당과 자녀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다가족보조금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3. 30. 인출). 또한 그 외에도 가정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한부모양육수당, 아동보호수당, 아동연금, 주거수당, 입양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서비스와 현금급여 제도가 잘 어우러져 스웨덴은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따라서 영아수당 도입에 앞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아동수당(Barnbidrag)²⁶⁾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²⁷⁾

스웨덴의 아동수당은 1934년 알바 뮈르달과 군나르 뮈르달 부부가 ‘인구 문제의 위기’라는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방안 중 하나로 아동수당을 처음 언급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특히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할지, 선택적으로 제공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격렬히 있었고, 결국 1937년 부모의 소득에 따라 제공하는 것으로 처음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었다(이용복, 2004: 105).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스웨덴 사회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26) 이하 내용은 이현주 외(2018)와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3. 30. 인출)를 참고하여 정리함.

27) 이하 내용은 Barnbidrag.info 홈페이지(<https://barnbidrag.info/barnbidragets-historia>, 2021. 4. 2. 인출)를 참고하여 정리함.

논의되고 있었고,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 문제 해결이 사회의 중요한 이슈였다(이용복, 2004: 99). 따라서 아동수당의 지원은 출산장려와 더불어 복지적 관점에서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도 실제 도움이 되었다(김수정, 2006: 12). 당시 아동수당은 아이의 어머니에게만 지급되었는데, 이는 자녀양육의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모 중 여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현주 외, 2018: 245). 아동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었으며 자녀 1명 당 65크로나²⁸⁾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당시 자녀가 있는 일반 가정 소득의 평균 6%를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다(SCB, 2008). 그리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는 지원되지 않았으나, 이들 가구는 가족 공제 제도를 통해 세금감면을 적용받고 있었다. 해당 공제 제도²⁹⁾는 1948년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아동수당은 1948년부터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Lag (1947:529) om allmänna barnbidrag)」이 제정되면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법은 새로운 법률인 「사회보험법(socialförsäkringsbalken)」으로 대체되기 전인 2011년 이전까지 적용되었다. 아동수당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 아동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민당 내부에서도 노동 연관성이 낮은 현금지급 방식보다 공보육서비스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측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금지원이 더 낫다는 측의 논쟁이 있었다(이현주 외, 2018: 243). 사민당 외에 중앙당이나 보수당 내에서도 관련 논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동수당은 애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에 더 강점을 두어 현금지급 방식으로 결정되었다(이현주 외, 2018: 243). 당시 이러한 논쟁은 아동수당의 확대 뿐만 아니라 공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논쟁으로 평가되고 있다(이현주 외, 2018: 243). 아동수당은 이후 모든 스웨덴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

28) 1년 260 크로나

29) 1917년에 도입된 가족부양제도를 통해 일부 계층은 이미 아동 공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고, 이는 당시 과세 수준이 낮은 계층에게는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었다(김수정, 2006).

한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제도로 발전하였다.

1982년에는 다자녀가족보조금이 도입되면서 자녀가 한 명 이상 있는 가정에 추가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 보수정권이 들어서면서 스웨덴 사회 내 전체 사회복지 비용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때 아동수당도 감소하였는데, 1996년 당시 월 750크로나에서 640크로나로 감소하였으며, 1982년에 도입된 다자녀가족보조금은 폐지되었다(SCB, 2008). 1998년 정권이 바뀌면서 아동수당의 인상과 함께 다자녀가족보조금은 다시 부활했다. 이후 2008년 중앙당 지도부가 기존의 아동수당은 이미 소득이 높은 고소득층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별적 복지의 차원에서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슈가 되었다(이현주 외, 2018: 253). 하지만 중앙당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중도좌파인 사민당과 중도우파인 온건당은 전격 반박했고, 전국민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The Local, 2008). 이렇듯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1948년부터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변함 없이 지급되고 있다(이현주 외, 2018: 258).

2) 제도의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 및 기준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의 하나로 16세 이하 자녀 보호자이며,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모두에게 지급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3. 30. 인출). 단, 부모가 EU/EEA 국가 또는 스위스 출신이거나 해당 국가에서 거주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범위는 달라질 수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보험청에 문의하여 개별면담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약에 의한 중복 수혜가 아니라면 스웨덴 내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3. 30 인출). 또한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에도 자녀가 16세 미만이고, 사회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동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 가령 불법체류자나 난민 인정 신청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은 기본아동수당(Child Allowance), 연장아동수당(Extended Child Allowance), 다자녀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급대상과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기본아동수당은 16세 이하의 자녀 보호자이며, 그 자녀가 스웨덴에 거주할 경우 지급대상³⁰⁾이 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3. 30. 인출). 연장아동수당은 16세가 지났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경우 수당을 연장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대 20세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연장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사회보험청에 별도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녀가족보조금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에 따라 누진되어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 아동이 16세가 지났음에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³¹⁾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해 6월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자동으로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부모가 직접 사회보험청(Forsakringskassan)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가족보조금만 예외적으로 자동 신청이 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3. 30. 인출). 하지만 재혼가정이나 스웨덴 국세청에 이주신청을 늦게 했거나 이주신청 승인이 늦어지는 외국인 가정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혼가정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자녀가 2014년 3월 1일 이전 출생 여부에 따라 지급대상이 달라진다. 만약 2014년 3월 1일 이전에 출생했다면, 단독 양육권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전체를 지급 받지만,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은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지급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3. 30. 인출). 그리고 만약 아동수당을 공유하기 원한다면 사회보험청에 별도 신고를 해야 했으나, 2014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부모는 단독 양육권이 있는 경우 아동수당 전체를 지급받는 대상으로

30) 이혼한 한쪽 부모를 따라 해외체류, 해외유학 등으로 스웨덴에 체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31) 결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만약 해당 자녀가 결혼을 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선정되지만, 부모가 공동 양육권을 가진 경우 아동수당은 두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나) 급여형태 및 지급액

아동수당은 현금급여 방식으로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은 신청서에 제출한 계좌로 매달 이체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3. 30. 인출). 아동수당은 일반적으로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이혼가정이나 입양가정의 경우 지원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우선 일반적인 아동수당의 경우는 첫째, 1,250크로나, 둘째, 2,500크로나, 셋째, 3,750크로나, 넷째, 5,000크로나, 다섯째, 6,250크로나, 여섯째 7,500크로나가 지급된다. 다자녀가족보조금은 둘째 부터 150크로나, 셋째, 730크로나, 넷째, 1,740크로나, 다섯째, 2,990크로나, 여섯째, 4,240크로나를 더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표 IV-3-1〉 스웨덴의 아동수당 지급액(2021)

단위: 크로나(SEK)

자녀의 수	아동수당	다자녀가족보조금	전체
1	1,250	-	1,250
2	2,500	150	2,650
3	3,750	730	4,480
4	5,000	1,740	6,740
5	6,250	2,990	9,240
6	7,500	4,240	11,740

자료: 스웨덴 Social Insurance Agency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4. 20. 인출)

이혼가정의 경우 단독 양육권을 가진 경우 기존 아동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되지만, 공동 양육권을 가진 경우 자녀가 2014년 3월 1일 이전에 출생했느냐, 이후에 출생했느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3. 30. 인출).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에게 아동수당이 절반씩 제공된다. 해당 내용은 〈표 IV-3-2〉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표 IV-3-2〉 스웨덴의 이혼가정 대상 아동수당 지급액(2021)

단위: 크로나(SEK)

자녀의 수	아동수당	다자녀가족보조금	전체
1	625	-	625
2	1,250	75	1,325
3	1,875	365	2,240
4	2,500	870	3,370
5	3,125	1,495	4,620
6	3,750	2,120	5,870

자료: 스웨덴 Social Insurance Agency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arnbidrag>, 2021. 4. 20. 인출)

나. 부모보험(부모수당)³²⁾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

스웨덴은 1900년 초반부터 임신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안되어 출산후 여성이 약 2주간의 휴식을 공식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였다(이현주 외, 2018: 338). 하지만 당시 법은 출산휴가는 보장하고 있었지만, 직장 내 고용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함에 있어 무용지물인 제도였다(이현주 외, 2018: 338). 이후 1937년 출산에 관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서 출산 전·후 6주간 임신부의 무급휴가가 가능해졌고, 1939년에는 무급휴가가 4개월 2주까지 늘어났으며, 이중 12주는 출산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규정되었다(이현주 외, 2018: 339). 또한 1939년 혼인으로 인한 여성 해고를 금지하는 법(SFS, 1939:171)이 통과됨에 따라 이때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 보장이 고려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5년 「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출산휴가 동안 여성의 소득 손실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지원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임산부 보험 SFS, 1954: 266). 그리고 1963년 마침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유급휴가가 생겨났고(6개월), 출산 및 임신 기간 중 급여와 연계한 재정지원 방식이 도입되었다(SFS, 1963: 381).

이후 1974년 스웨덴 정부는 부모보험을 도입함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

32) 이하 내용은 이현주 외(2018)와 스웨덴 사회보험청 홈페이지(<https://www.forsakringskassan.se>, 2021. 3. 30. 인출)를 참고하여 정리함.

머니를 위한 권리를 아버지까지 확장하였다(SFS, 1974: 473). 부모보험은 출산 전 최소 180일 동안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병가로 인한 보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존 급여의 80%까지 소득을 보전해 주었다(이현주 외, 2018: 339). 부모휴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증적으로 확대되어, 1977년에는 부모가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8세 자녀 까지 제한), 1995년에는 주로 부모휴가가 여성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 쿼터제를 도입함에 따라 부모휴가 총 450일 가운데 30일은 무조건 양쪽 부모가 소진하도록 했다(이현주 외, 2018: 339). 그리고 2008년에는 성평등한 부모휴가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 보너스(jämställdhetsbonus)³³⁾를 지급(SFS, 2008: 313)하였다. 2012년 자녀가 1세가 되는 해 생일까지 최대 30일 동안 부모가 동시 부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동시휴가제도(Dubbeldagar)도 도입 되었는데, 이는 부모휴가 기간에 포함되지만 부모가 동일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현주 외, 2018: 340).

2) 제도의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 및 기준

부모보험에는 임신유급휴가(graviditetspenning), 부모유급휴가(föräldrapenning), 일시적 부모유급휴가(tillfällig föräldrapenning) 등 세 가지가 포함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부모보험에는 질병수당자격소득(sjukpenninggrundande inkomst, SGI)에 따라 개인의 소득이나 자녀수에 따라 소득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임신유급휴가에서는 임신수당을, 부모유급휴가에서는 부모수당을, 일시적 부모유급휴가에서는 임시부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이현주 외, 2018: 340).

이들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임신유급휴가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임신 중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사용할

33) 총 부모휴가 기간인 480일 중 아버지와 어머니가 240일씩 동일하게 나누어 사용할 경우 최대 270일간 1일 50 크로나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제도의 효과성이 미비하여 지난 2011년 폐지되었다(홍희정·홍성현, 2019: 12).

수 있는 휴가이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스웨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의 승인이 필요하며, 고용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유급휴가는 자녀 출산이나 입양한 자녀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부모수당은 자녀의 부모이거나 양육권이 있는 사람, 자녀가 있는 사람과 결혼을 했거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 학생 또는 구직 대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고, 스웨덴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임시부모수당은 부모가 일을 하거나 구직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부모가 직업이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을 위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며, 부모가 직업이 없는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구직 관련 상담 및 교육을 받고 있다는 증명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나) 급여형태 및 지급액

임신유급휴가는 임신한 여성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나 작업으로부터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시간선택제(25%, 50%, 75%, 100%)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출산 60일 전부터 최대 50일간 임신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고용주의 승인이 나면 바로 임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수당은 기존 월 평균 급여의 8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신유급휴가 중 급여는 1일 최대 759크로나로 제한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부모유급휴가는 자녀 출산 또는 입양한 부모에 대해 자녀 1명 당 최대 48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출산 6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부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 고용주에게 휴가 계획을 알려야 한다. 부모휴가는 총 480일(쌍둥이 660일, 세쌍둥이 840일)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중 300일은 파트너와 상의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90일은 부부가 각각 반드시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자녀의 나이가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 세 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

부모수당 신청자가 출산하기 전 소득이 있는 경우 연속적으로 240일 이상 근무하고, 연간 82,300크로나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기존 월평균 급여의 77.6%까지 보전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45일에 대해서는 1일 180크로나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스웨덴 부모휴가의 양도 기간에 대해 살펴보면, 양도할 수 없는 90일을 제외한 기간, 즉 휴직 전 급여의 77.6%가 지급되는 105일과 정책 180크로나가 지급되는 45일, 총 150일을 모두 배우자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본인의 부모휴가 기간 240일에 150일을 더해 총 39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양도 받은 105일에 대한 부모수당은 배우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한편, 240일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 출산 후 180일 동안 1일 250크로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최대 월 7,500 크로나), 1년 동안 소득이 아예 없었거나, 117,590크로나 미만 소득자라면 1일 250크로나를 지원 받을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 2021. 4. 2. 인출). 또한 구직자라면 실직하기 전 6개월 이상 일을 했거나, 실직한 후 3개월 이내라면 고용서비스청에 등록되어 있다면 1일 250크로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부모수당은 통합사회보험 기금에 가입된 사람에 한해 소득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 자영업자라면 1일 최대 1,012크로나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신부모수당은 자녀 출생 또는 입양 후 일시적으로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경우 10일(쌍둥이 20일, 세쌍둥이 30일) 동안 일시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일반적으로 급여의 80%까지 지급된다.

다. 기타 지원

1) 한부모 양육지원

한부모 양육지원은 부모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자녀양육비는 합의에 의해 결정되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경우(월 1573크로나)는 사회보험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for_foraldrar_som_inte_lever_ihop, 2021. 4. 2. 인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며, 18세 이후에도 고등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에는 20세까지 지원된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가 한부모 양육지원비를 수령하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시점부터 사회보험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받게 될 경우 사회보험청에 반납해야 한다.

2) 아동보호수당

아동보호수당은 자녀에게 장애가 있거나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6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수당이며, 장애 발생 시점부터 19세가 되는 6월까지 지급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vard_av_barn_vab, 2021. 4. 2. 인출). 이와 유사한 수당으로 병간호수당과 기타 부대비용수당이 있다. 병간호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루 근무시간 중 25%에 해당하는 7시간 이상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모의 병간호는 아픈 자녀를 특별히 돌보는 노동에 대한 댓가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타 부대비용 수당은 자녀의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약품, 시설 이용, 주택환경 개선, 세탁 등 부대비용을 지출할 경우에 대해 지원해주는 비용이다. 병간호수당과 부대비용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세금 면제가 가능하다.

3)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에는 간호수당(돌봄수당 포함), 어린이를 위한 추가비용수당, 아동부조, 아동을 위한 자동차 지원수당이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

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om_ditt_barn_har_en_funktionsnedsattning, 2021. 4. 2. 인출).

우선 간호수당(ändring för dig med vårdbidrag)은 2019년 간호수당 규정이 변경되면서 돌봄수당(Vårdbidrag)과 통합되었다. 장애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자녀를 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다 이들 보호수당 이외에 간병수당과 자동차수당을 들 수 있다.

간병수당은 장애아의 돌봄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지원해주는 비용으로 이는 「사회서비스법(LSS)」에 의해 정신병, 자폐증,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실제 보조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om_ditt_barn_har_en_funktionsnedsattning/vardbidrag, 2021. 4. 2. 인출).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이 장애로 인해 세수, 옷 입기, 식사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 지원된다. 수당은 시간당 280 크로나이다.

자동차 지원 수당은 자녀가 장애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자녀의 이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차량을 구입하거나 개조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이동의 불편이 있고, 이러한 불편한 사항이 장기간(9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판단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지원 수당은 기본수당으로 최대 60,000크로나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소득이 160,000크로나 미만일 경우 기본수당에 더하여 추가 수당을 최대 40,000크로나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 최대 12,000크로나 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모터가 달린 자전거를 구입할 때는 최대 3,000크로나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 개조가 필요한 경우 장애자녀의 필요에 의해 차량 탑승용 경사로 설치, 의자 철거,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싣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구조 변경 등을 지원하며 지원액의 제한은 없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om_ditt_barn_har_en_funktionssnedsattning/bilstod, 2021. 4. 2. 인출). 다만 차량 개조의 경우 교통안전국과 협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협의를 거친 후 차량을 개조한 후 다시 교통안전국의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지원 수당을 지원받

아 구입 또는 개조한 차량을 매각할 경우에는 전체 또는 일부 비용을 사회보험청에 반납해야 한다.

4) 아동연금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18세 미만 해당 자녀에게 아동연금을 제공한다(주스웨덴 대사관, 2016: 17).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20세가 되는 해의 6월까지 지급하며, 사망자의 연금자산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산정되고, 형제가 있는 경우 형제에게 균등하게 배분된다(주스웨덴 대사관, 2016: 17).

5) 주거수당 (Bostadsbidrag)

주거수당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월평균 가구소득 42,500 크로나 이하)에게 주택임대료 또는 모기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의 안전과 안락한 생활을 위해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것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ostadsbidrag_barnfamiljer. 2021. 4. 2. 인출). 주거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보조금을 신청하는 거주지에 반드시 거주해야 하며, 월 1,400크로나 이상 주택임대료 또는 모기지 대출금을 지불하고 있어야 한다. 주거수당은 신청자의 수입, 자녀수, 임대료 및 대출금 규모, 집의 규모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 최근 주거수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제기되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 시적으로 주거보충수당(Tillfälligt tilläggsbidrag)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수당은 자동으로 신청되며, 추가 수당액은 매달 주택수당으로 지원받는 금액의 약 25% 정도 이다. 따라서 매달 추가 보조금으로 최대 1,325크로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주거수당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해당 여부가 결정되며, 매달 30일 지급된다(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bostadsbidrag_barnfamiljer. 2021. 4. 2. 인출).

6) 입양수당

외국으로부터 10세 이하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스웨덴 사회보험청(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adoptera_barn, 2021. 4. 2 인출). 입양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스웨덴 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헤이그 협약 해당국의 아동만 입양할 수 있다. 이때 입양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17년 1월 1일 이전 입양한 경우 자녀 한 명당 40,000 크로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경우 자녀 한 명당 75,000크로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수당은 입양이 발생한 시점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스웨덴 사회보험청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adoptera_barn, 2021. 4. 2 인출).

라. 제도적 특징 및 쟁점

스웨덴 아동수당 제도는 1948년 이후부터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까지도 아동수당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기조는 변함없이 견지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지원방식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이후 2008년에는 중앙당 지도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며 사회적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인 2020년에는 다자녀 가족보조금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어 향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Regeringens skrivelse, 2020/21: 10).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제도 도입 초기 아동수당의 지원방식에 대해 현금 지급방식과 공보육서비스 지원방식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1917년에 도입되었던 가족부양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 방식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으며, 과세 대상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족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이현주 외, 2018: 243).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당과 농민당은 세금공제를 보다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유해미, 2009: 320). 반면, 사민당은 자녀가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의 소득 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유해미, 2009: 320). 이러한 대립 속에서 최종적으로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지만, 사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다(이현주 외, 2018: 243). 일부는 노동 연관성이 낮은 현금지원보다 공보육서비스 지원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것이다(이현주 외, 2018: 245). 하지만 당시 사민당은 단기적으로 경제

적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향후 경제적 지원과 공보육서비스 지원을 병행하는 데 합의하였다(이현주 외, 2018: 243).

다음으로 아동수당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자는 중앙당 지도부의 제안으로 인해 발생한 논쟁에 대해 살펴보겠다(스웨덴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80328/10764>, 2021. 4. 13. 인출). 이는 지난 2008년 중앙당 의원인 모우드 올라프손(Maud Olofsson)이 연간 소득 240,000크로나 미만의 가정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촉발되었다(스웨덴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80328/10764>, 2021. 4. 13. 인출). 올라프손(Olofsson)은 스웨덴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게는 큰 액수가 아니며, 때로는 일부 사람들의 근로 수단으로 도용되어 근로의욕을 저하 시킬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스웨덴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80328/10764>, 2021. 4. 13. 인출).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아동수당은 꼭 필요한 저소득층³⁴⁾에게 좀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중도 우파인 온건당과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은 즉각 반박하였다. 그들은 중앙당 지도부의 의견에 대해 아동수당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것은 이에 대한 제도적 정당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고소득층과 중산층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세금 의지를 강화하는 목적이 강하다고 했다(스웨덴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80328/10764>, 2021. 4. 13. 인출). 또한 중앙당의 주장과 같이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조금 더 많은 수당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학교에서는 고소득층 자녀와 저소득층 자녀 간 계층 분리를 심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중앙당의 의견은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스웨덴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80328/10764>, 2021. 4. 13. 인출).

마지막으로 최근에 있었던 쟁점은 다자녀가족보조금에 관한 것이다. 스웨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아동수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감사원장은 아동수당의 다자녀가족보조금이 현재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스웨덴 rikskrevisionen <https://www.rikskrevisionen.se/om-rikskrevisionen/2020-09-01-nytt-utskott-om-barnbidraget>).

34) 연간소득 240,000 크로나 미만 소득의 가정에 지원하자고 주장하였다.

w.riksrevisionen.se, 2021. 3. 31. 인출). 감사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다자녀 가족에게 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다(스웨덴 riksrrevisionen <https://www.riksrevisionen.se>, 2021. 3. 31. 인출).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자녀가족 보조금을 수령하는 가정 중 2자녀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실제 두 자녀일 경우 지급되는 추가되는 150크로나는 자녀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다(스웨덴 riksrrevisionen <https://www.riksrevisionen.se>, 2021. 3. 31. 인출). 둘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양육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강도가 자녀수에 비례하는데, 자녀가 1~2명일 경우 그 차이가 미비하지만, 자녀가 3명인 경우 그 어려움이 훨씬 커진다는 것이다(스웨덴 riksrrevisionen <https://www.riksrevisionen.se>, 2021. 3. 31. 인출). 이는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녀가 3명인 경우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이 사실상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은 다자녀가족보조금이 현행대로 유지되기 보다는 전면 재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웨덴 정부는 현행 다자녀가족보조금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였다(Regeringensskrivelse 2020/21: 10).

스웨덴 부모보험은 아동수당이 아동을 가진 모든 가정에게 지급되는 것과 달리 통합사회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유급 부모수당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된다. 여기서 부모수당 조건은 단체협약에 가입된 자에 한해 소득보전이 이루어지며, 단체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저소득층과 비슷한 수준을 적용하여 1일 최대 250크로나를 지원한다(이현주 외, 2018: 338).

4. 핀란드

핀란드 가족정책은 1897년 한부모 가족과 고아를 위한 보험이 도입되면서 아동과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시작되었다(도미향, 2013: 94). 1948년에는 아동이 있는 가정과 없는 가정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녀양육을 위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윤승희, 2015: 11). 이에 핀

란드 정부는 부족한 공보육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육수당 지급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에 1985년 전격 도입되었다(도미향, 2013: 94).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아동수당과 달리 양육수당은 가구소득이 적용된다(도미향, 2013: 97). 따라서 영아수당 도입 관련하여 핀란드 사례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가. 아동수당(Child Benefit)³⁵⁾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

핀란드에서 아동수당은 1897년 한부모 가족과 고아를 위한 보험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1930년대 아동수당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1948년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아동수당 제도가 전격 도입되었다(도미향, 2013: 94). 당시 아동수당 도입 목적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녀가 있는 가족과 자녀가 없는 가족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이유가 컸다(Lindgren, 1978). 핀란드는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되기 전에는 소득에 따라 대가족을 위한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도미향, 2013: 94). 하지만 보편적 아동수당이 도입된 이후 1974년 대가족을 위한 아동수당은 폐지되었고, 대신 1976년 세제 개혁을 통해 아동수당의 세금을 면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아동수당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제도의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 및 기준

핀란드 아동수당은 17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아동 자신(15세 이상)에게도 지급된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lapsilisa>. 2021. 4. 14. 인출).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을 시설보호소에 배치한 경우 아동수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보호소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5) 이하 내용은 도미향(2013), 윤승희(2015),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https://www.kela.fi/web/sv/arnbidrag-i-korthet>) (2021. 4. 14. 인출) 참고하여 정리함.

나) 급여형태 및 지급액

아동수당은 아동의 나이가 17세 미만인 경우 지급되며,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barnbidrag-belopp>, 2021. 4. 14. 인출).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아동수당은 매달 총 333.51유로(94.88 € + 104.84 € + 133.79 €)를 수령할 수 있는데, 이중 첫째아가 17세가 되면 2명의 자녀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며 총 199.7유로(94.88€ + 104.84 €)를 수령할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barnbidrag-belopp>, 2021. 4. 14. 인출).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 자녀 당 추가로 63.3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혼한 가정으로 자녀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barnbidrag-belopp>, 2021. 4. 14. 인출).

〈표 IV-4-1〉 핀란드의 아동수당 지급액(2021)

단위: 유로(€)

자녀의 수	아동수당
1	94.88
2	104.84
3	133.79
4	163.24
5	182.69

자료: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http://www.kela.fi/web/en/child-benefit-amount-and-payment>, 2021. 4. 20. 인출)

〈표 IV-4-2〉 올란드의 아동수당 지급액(2021)

단위: 유로(€)

자녀의 수	아동수당
1	110
2	143
3	185
4	214
5	259

자료: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web/en/child-benefit-amount-and-payment>, 2021. 4. 20. 인출)

한편, 올란드 제도는 아동수당을 올란드 지자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표 IV-4-2>와 같이 아동수당 지원금이 핀란드 본토보다 조금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en/child-benefit-amount-and-payment>, 2021. 4. 20. 인출).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 자녀 당 추가로 50유로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이혼한 가정으로 자녀 공동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 청구가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인구등록센서스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등록되어 수령할 수 있지만, 한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추가 보조금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en/child-benefit-amount-and-payment>, 2021. 4. 20. 인출).

나. 양육수당(Child Care Allowance)³⁶⁾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

핀란드의 양육수당은 1970년대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일하는 여성들이 7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취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녀를 포기하는 경향이 높아지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윤승희, 2015: 2). 당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현금 지급 형태의 양육수당과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1973년 「보육법(Act on Child day Care)」을 제정함으로써 의무교육이 시작되는 7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시설 제공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강제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 속도에 비해 공적 보육시설은 미비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였다(Katja Repo, 2010).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현금지급 방식의 양육수당 도입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1985년 중도 우파 정권 때 가정아동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 제도로 전격 도입되었다(도미향, 2013: 96). 당시 양육수당은 아이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특히 ‘자유선택’에 따라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수혜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36) 이하 내용은 도미향(2013), 윤승희(2015), 핀란드 사회보험청 홈페이지 <https://www.kela.fi/web/sv/stod-for-hemvard>(2021. 4. 20. 인출)를 참고하여 정리함.

있게 하였다(윤승희, 2015: 6). 이를 통해 실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적 보육시설의 이용은 여전히 낮게 나타났으나, 양육수당 비율이 해마다 크게 증가했고, 아이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의 불만도 줄어들었다(윤승희, 2015: 7). 이렇듯 핀란드의 양육수당 지원은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는 한편, 부족한 보육시설의 대안으로 활용되며 국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발전하였다.

이후 양육수당 도입을 주도했던 중앙당(the Centre Party)과 국민연합당(the National Coalition Party)은 1996년 민간 부문의 보육서비스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윤승희, 2015: 6). 부족한 공적 보육서비스에 의해 핀란드의 양육수당이 보다 확대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8월 이후부터는 가정양육수당과 별도로 민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민간보육수당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도미향, 2013: 97). 또한 핀란드의 양육수당은 각 가정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리고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정양육수당(Child home care allowance), 민간양육수당(Private day care allowance), 유연한 양육수당(Flexible care allowance), 부분양육수당(Partial care allowance) 등으로 구분되며, 양육수당 간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vanhempainpaivarahat>, 2021. 4. 14. 인출).

2) 제도의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 및 기준

핀란드 가정양육수당은 생후 1개월 이상 3세 미만의 아이를 둔 보호자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지 않고 직접 돌볼 때 지급 받을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vanhempainpaivarahat>, 2021. 4. 14. 인출). 그리고 아이를 보육 기간에 위탁하거나 보육시설로 보낼 경우, 가족이 해외로 영구 이주할 경우 더 이상 가정양육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다. 입양 가정의 경우 아동의 나이가 3세 이상이라도 취학 전 2년까지 가정양육수당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vanhempainpaivarahat>, 2021. 4. 14. 인출).

민간양육수당은 생후 1개월 이상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자가 아이 양육을 담당할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거나 민간 보육시설에 위탁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는

수당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없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vanhempainpaivarahat>, 2021. 4. 14. 인출).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고용한 베이비시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된 전문인이거나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람이어야 하며 친인척이어도 상관없다. 민간양육수당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고용된 베이비시터나 민간 보육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그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기관을 변경하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민간양육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유연양육수당은 주당 30시간 이하로 일하며 나머지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볼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구체적으로 주당 30시간 이하 또는 일반 정규 근로의 80%만 일하는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지급 받을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joustava-hoitoraha>, 2021. 4. 14. 인출). 그리고 자영업자 연금법과 농민 연금법에 따라 유효한 연금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유연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joustava-hoitoraha>, 2021. 4. 14. 인출). 하지만 부모 또는 보호자의 고용형태가 임시직이거나 병가로 인해 4주 이상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자녀가 이미 가정양육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부모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분양육수당은 초등학교 1학년 또는 2학년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면서 일주일에 3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예를 들어 주당 4일 근무 또는 하루 6시간 근무) 지급하는 수당이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osittainen-hoitoraha>, 2021. 4. 14. 인출). 개인양육수당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육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일을 하면서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지원되기 때문에 풀타임 학생이거나 실업한 경우, 병가를 4주 이상 사용한 경우, 이미 다른 자녀의 개인양육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자격이 제한된다.

나) 급여형태 및 지급액

먼저 가정양육수당은 3세 미만의 자녀 1명 당 월 342.95유로가 지급되며, 3세

미만 자녀가 추가적으로 있을 경우 월 102.67유로를 추가적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고, 3세 이상 미취학 자녀일 경우 65.97유로를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가족의 소득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추가적인 보조금은 가족의 수와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한 달에 183.53유로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vanhempainpaivarahat>, 2021. 2021. 4. 14. 인출).

민간양육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 또는 자녀 1인당 매월 174.59유로가 지급되며,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는 자녀 1명당 최대 146.82유로가 추가로 지원된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vanhempainpaivarahat>, 2021. 2021. 4. 14. 인출).

유연양육수당은 부모 또는 보호자의 근무 시간과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형태로 지급되며, 이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급액에 영향을 미친다(<https://www.kela.fi/joustava-hoitoraha>, 2021. 4. 14. 인출). 일반적인 두 가지 형태는 첫째, 수혜자가 주당 22.5 시간 이하 또는 정규 근로의 60% 이하로 일하는 경우(예를 들어 주당 약 3일 또는 하루 4.5시간 근로) 매월 244.47 유로를 지급받을 수 있다. 둘째, 수혜자가 주당 22.5시간 이상 일하지만 30시간 이하 또는 정규 근로의 60% 이상 80% 미만 일하는 경우(예를 들어, 주당 약 4일 또는 하루 약 6시간 근로) 매월 162.98유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부분양육수당은 여러 자녀가 있더라도 한 자녀에게만 지급되며, 매월 98.21유로를 지급 받을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osittainen-hoitoraha>, 2021. 4. 14. 인출). 부분양육수당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 8월 1일부터 지급되며, 아이가 2학년(7월 31일)이 끝날 때까지 지급되고, 만약 연장 의무교육에 등록된 경우 초등학교 3학년이 끝날 때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 출산보조금 (Child Care Grant)

1) 도입 배경 및 전개과정

1930년대 핀란드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와 높은 영아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었는데,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우 제대로 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자녀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37년 「모성보조금법 (Maternity Grants Act)」을 도입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moderskapsunderstod>, 2021. 4. 20. 인출). 이 법을 통해 1938년에는 산모의 약 2/3가 출산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여성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영아 사망률도 줄어들게 되었다. 출산보조금은 초기 시복지위원회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당시 자녀 한 명당 450 마르카를 지급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moderskapsunderstod>, 2021. 4. 20. 인출). 당시 출산보조금은 일반 노동자 임금의 약 1/3 정도 수준으로 지급되었다. 모성보조금은 현금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었으며, 1949년까지는 자녀의 어머니에게만 지급되었다. 1994년부터 핀란드 사회보험청에서 관리하게 되었고, 지방 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들에게 출산패키지(출산에 필요한 기본 도구들) 또는 보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moderskapsunderstod>, 2021. 4. 20. 인출).

2) 제도의 주요 내용

가) 지급대상 및 기준

출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 4개월 이전에 건강 검진을 위해 의사 또는 산부인과 건강 클리닉을 방문해야 한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moderskapsunderstod>, 2021. 4. 20. 인출). 또한 임신 154일(약 5개월)후에 출산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의사나 건강 클리닉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나) 급여형태 및 지급액

출산보조금은 현금과 출산패키지 중에서 산모가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을 선택하면 170 유로를 수령할 수 있는데, 쌍둥이의 경우 해당 급여액의 2배, 세 쌍둥이의 경우 3배를 지급받을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moderskapsunderstod>, 2021. 4. 20. 인출). 만약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현금과 패키지를 결합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출산패키지 2, 현금 1의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입양자녀의 경우 출산 기한과 상관없이 18세 미만

이면 부모 및 보호자는 출산패키지를 수령할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moderskapsunderstod>, 2021. 4. 20. 인출). 출산패키지를 선택하면 출산 6개월 전에 등록된 주소지로 배달이 되는데, 구성은 아기 옷, 아기 케어 제품이 포함되며, 설문조사를 통해 산모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새로운 물품으로 구성한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moderskapsunderstod>, 2021. 4. 20. 인출). 약 50여 가지의 물건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을 선택하는 사람은 1/3 정도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은 출산패키지를 선택한다.

라. 기타 지원

1) 아동유지수당(Child maintenance allowance)

아동수당과 별개로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수령하는 아동수당이 적을 경우 아동유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ero-perheessa>, 2021. 5. 24. 인출). 또한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입양했거나 자녀가 혼외자로 태어났거나 친자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아동유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ero-perheessa>, 2021. 5. 24. 인출). 아동유지수당은 양육수당이 6개월 동안 최소 매월 790유로 이상 수령하는 사람이거나, 신청자가 매월 적어도 1,128.57유로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양육 책임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아동유지수당은 부모의 양육상황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5~67.35 유로 범위에서 지급된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ero-perheessa>, 2021. 5. 24. 인출).

2) 군인자녀 아동수당(Child support for conscripts' children)

부모가 병역을 수행하는 동안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 핀란드 사회보험청의 승인의 받은 사람에 한해 군인수당 형태로 자녀양육 중인 부모에게 자녀양육비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elatustuki>, 2021. 5. 24. 인출). 군인자녀 아동수당은 아동의 법적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소득(군인 급여)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 특별돌봄수당(Special care allowance)

16세 미만의 자녀가 입원치료 등으로 특별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의료진 술서와 자신이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확인서를 사회보험청에 제시하면 심사를 통해 특별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jos-lapsi-sairastuu>, 2021. 5. 24. 인출). 구체적으로 병원 또는 외래진료가 필요한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자, 0~15세 사이의 중증 질병을 지닌 자녀를 둔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중증 질병의 기준은 백혈병, 심각한 심장질환, 당뇨병, 심각한 정신장애, 심각한 발달장애, 약물중독, 심한 기관지 천식,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또는 위와 유사한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특별돌봄수당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데 있어 소득손실에 대한 보충적 성격을 지니며, 지급액은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4) (16세 미만)장애아동수당(Disability allowance for persons under 16 years)

16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부모의 보살핌이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장애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vammaistuki-lapselle>, 2021. 5. 24. 인출). 이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질병이나 장애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에 한하며, 장애아동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약물, 재활을 위한 이동, 학습 지원, 심리 상담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장애수당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vammaistuki-lapselle>, 2021. 5. 24. 인출). 지급액은 장애아동의 상태와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일반적인 장애수당은 매월 93.39 유로를 지급되며, 중증장애에 대해서는 매월 217.93유로, 고도장애에 대해서는 422.58 유로를 지급된다. 또한 경증장애 아동의 경우 치료로 인한 비용 초과 시 중증 장애에 해당하는 수당을 특별하게 지급 받을 수도 있다.

5) 입양수당

외국으로부터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adoptio>, 2021. 5. 24. 인출). 입양수당은 핀란드 사회복지국을 통해서 정식 입양이 된 경우만 지급받을 수 있다. 입양수당은 자녀의 출신 국가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데, 2019년 1월 1일 기준 출신지역이 대만인 경우 9,000유로, 태국인 경우 5,000유로, 기타 국가인 경우 7,000 유로를 자녀 한명 당 지원받을 수 있다(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adoptio>, 2021. 5. 24. 인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동시에 입양하거나, 기존 자녀 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다산가족보조금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마. 제도적 특징 및 쟁점

핀란드 아동수당은 다른 북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가진 부모나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이 중요하지 않고,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양육수당과 달리 아동수당은 15세가 되면 본인이 수령할 수 있다.

핀란드에서 양육수당은 부분양육수당을 제외하고 생후 1개월 이상 3세 미만까지 아동을 둔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족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며, 모든 양육수당은 수혜자의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고 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양육수당은 소득보충적인 경향이 강해 양육수당에 대한 의존이 높은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양육수당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하되고, 자녀돌봄의 의무가 여성에게 더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Haataja, 2013).

핀란드 양육수당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양육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공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 북유럽국가인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와 비교했을 때 양육수당이라는 외형 자체는 비슷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시간제보육 등을 통해 양육수당이 보육서비스 보완재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핀란드에서는 자녀를 직접 돌보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에 보내거나 양자 택일을 하도록 하여 양육수당이 부족한 공적 보육시설의 대체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출산보조금 지급은 인근 북유럽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출산패키지 지원은 핀란드가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출산보조금은 출산 시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되었다.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은 실제 출산 시 사용하게 되는 육아용품이 비싸서 보조금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선택적으로 육아용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패키지가 제안되었으며, 이는 핀란드 출산보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출산패키지 물품은 아이의 성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실제 구입하기 어려운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산모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5. 종합 비교 및 시사점

수당제도는 흔히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주의 제도로 인식되지만 동일하게 명명되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가족정책과의 제도적 맥락에서 다양한 양상을 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수당제도는 도입 목적과 더불어 급여대상과 지급방식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다른 제도와의 관계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의 핵심 현금급여 제도를 지급목적, 급여 대상, 지급방식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IV-5-1>과 같다. 수당의 도입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 급여인 제도를 제외하고 정리하였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에는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 수당제도인 아동수당이 있으나 모든 대상에게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3개 국가에서 모두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아동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한다. 독일과 핀란드는 아동수당 지급액 자체에 출생순위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스웨덴은 아동수당에 다자녀가족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반면, 프랑스는 아동수당 대신 가족수당이 있으나 다자녀 가구 지원 성격에 가까운 2자녀 이상 가구에 지원하는 수당제도이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자녀수 뿐만 아니라 소득을 3구간으로 구분하고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4개국 중에서 영아 대상 수당제도가 가장 발달한 국가는 프랑스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04년 체계 개편을 통해 영아보육수당 체계를 구축하였다. 영아보육수

당 제도 안에는 출산·입양장려금 및 기초수당이 있으며, 보육료 지원에 해당하는 자녀보육 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육아휴직 급여와 유사한 자녀교육 분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재원도 가족수당 금고를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제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아보육수당에서 출산·입양장려금, 기초수당,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은 소득수준별 선별 지급되는 수당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엄밀하게 현금급여 제도와는 구분되나, 독일, 스웨덴의 부모수당 제도는 기본적인 소득보장의 성격을 지니며, 프랑스의 경우 영아보육수당 제도 안에 자녀교육분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독일의 부모수당과 프랑스의 자녀교육분담수당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독일의 부모수당은 300유로를 부모의 출산 이전 경제활동 유무 및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초수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다둥이 및 형제 보너스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65%~100% 까지 소득 대체율이 상향 적용된다. 프랑스는 출산 전에 근로하면서 일정 기간 사회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독일과 차이가 있으나, 자녀수, 한부모 여부, 입양 등에 따라 지급 기간을 늘려준다는 점에서 차등지원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는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제도에 근로시간 변수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독일 부모수당보다는 프랑스의 자녀교육분담수당과 유사하다. 스웨덴의 부모보험(부모수당)도 출산 전 일정 기간 근로하면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이 가능하며, 쌍생아 수에 따라 지급기간을 연장해준다. 하지만 스웨덴의 부모수당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출산 전 소득이 없는 경우 하한액을 지급해주고 있어서 독일 제도와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표 IV-5-1〉 4개국 현금급여 제도 비교

국가명	현금급여명	주요 목적	급여 대상	지급 방식
독일	아동수당	- 아동의 생계비 보장	- 보편 - 만 18세(만 25세까지 연장 가능)	- 정액 지급 - 자녀수 증가에 따른 차등(셋째아부터 증액)
	아동수당 보조금	-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저소득가구의 가족 생계비 충족	-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 - 자녀수를 고려하여 부모의 소득 산정	- 소득 및 자산에 따라 금액 지급

국가명	현금급여명		주요 목적	급여 대상	지급 방식
	부모수당		- 자녀 출산 이후 발생하는 소득 손실 보완 및 소득 대체 - 생애주기(집중적인 자녀양육 시기)에 따른 기본적인 소득 지원	- 보편 - 출산 전 소득활동 여부와 무관	- 소득활동 무관하게 기본 300유로 지급 - 초과 시 소득비례 지급 - 300유로 초과 시 상한액까지 소득비례 지급 -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대체율 차등 적용 - 쌍둥이 및 다자녀추가지원금 지급
프랑스	가족수당		- 가족의 생계부양비 보조를 통한 부담 완화	- 조건부 보편 -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 - 자녀수에 따라 소득구간 차등 적용 - 자녀수에 따른 지급액 차등 - 만 14세 이상일 경우 추가급여액 지급
	영아보육수당	출산·입양장려금	- 임신 및 출산 지원 - 영아자녀보육 지원을 통한 일·가정 생활 양립 지원	-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 - 자녀수를 고려하여 부모의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액 지급
		기초수당		-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 - 만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일정 소득 이하 가족 - 만 20세 미만 자녀 입양 시에도 적용(3년 지급)	- 정액 지급 - 2018년 4월 1일 출생을 기준으로 지급액 변동
		자녀보육 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 - 소득활동 및 학업 중인 부모 지원	- 보육방식에 따른 차등 지급 - 소득수준 및 자녀수, 한부모 여부에 따른 연소득 기준 차등 적용 및 지급
		자녀교육분담수당		- 조건부 보편 - 육아휴직 또는 단축 근로하는 경우 지급 - 출산 이전 근로 시 일정기간 사회보장 분담금 납부한 경우 지급	- 근로시간에 따른 정액 지급 - 자녀수, 한부모 유무, 출생/입양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적용
스웨덴	아동수당	아동수당	- 부모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 보편 - 만 16세 이하 자녀 -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경우 만 20세 당해 6월 까지 연장 지급	- 정액 지급
		다자녀가족보조금		- 조건부 보편 - 2자녀 이상일 경우	- 정액 지급 - 자녀수 증가에 따라 급여액 증가폭 상승

국가명	현금급여명	주요 목적	급여 대상	지급 방식
	부모수당 (부모보험)	- 부모권 보장 및 소득손실에 대한 보전	- 조건부 보편 - 스웨덴 거주 보험 가입자	- 출산 전 근무 기간 및 연 소득에 따른 차등 기준 적용 - 240일 미만 근로 및 무소득자는 하한액(1일 250크로나) 지급 - 쌍둥이 지급기간 연장
	아동수당	- 부모의 자녀 양육 비용 부담 완화	- 보편 - 만 17세 미만 자녀	- 정액 지급 - 자녀수에 따라 차등지급, 한부모 가구에 추가 수당 지급
핀란드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 조건부 보편 - 생후 1개월 이상~만 3세 미만 공공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보호자 - 조건: 보육시설 미이용 & 직접돌봄 - 입양가정은 취학 2년 전까지	- 가정양육수당 정책+추가 자녀지원금 - 추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추가자녀지원금 차등 지급
			- 조건부 보편 - 생후 1개월 이상~만 3세 미만 민간 베이비시터 고용 또는 민간 보육시설 이용 아동 보호자	- 지자체 운영 보육시설과 동일 비용 지원 또는 자녀 1인당 월정액 지급 - 추가 자녀에 대한 보조금 정액 지급
			- 조건부 보편 - 주당 30시간 이하 또는 정규 근로 80% 미만 근로시간 이외자녀 돌봄 시 지급	- 근무시간에 따라 정액 지급
			- 주당 30시간 이하로 근로와 초 1, 2학년 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보호자 - 한 자녀만 지급	- 정액 지급 - 연장의무교육 등록 시 초 3학년까지 연장 지급
			- 조건부 보편 - 지자체 사회보장 번호 소지자로 임신 4개월 이전에 산모 건강검진 이행	- 출산패키지(현물)와 보조금(현금) 중 택일
	출산보조금	- 모성보호 및 영아 사망률 경감		

자료: 본 보고서의 IV장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함.

한편 현금제도가 확대된 국가들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성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독일과 스웨덴은 가정양육수당을 도입했다가 폐

지하였으며, 핀란드만이 양육수당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양육수당은 부모의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정양육수당뿐만 아니라 민간양육수당, 유연양육수당, 부분양육수당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핀란드의 양육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의 가정양육수당과는 달리 프랑스의 ‘자녀보육 방식 자유선택 보조금’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분화된 양육수당 제도라 할 수 있다.

상기에서 살펴본 4개국 수당제도 분석내용을 바탕으로 영아수당 도입 시 숙고해야 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 설계에 있어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지급되는 수당제도 중에 모든 대상에게 일률적인 단일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절대적 보편주의 형태의 수당제도는 없다. 자녀수, 자녀연령, 한부모 가구여부, 소득수준, 근로시간 등에 따라 지원 필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영아수당을 도입하는 시점에서는 모든 영아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으로 설계되었으나, 추후로는 효과성 제고의 측면에서 가정양육수당 등 유관 제도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대상 및 지원내용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영아수당 도입에 있어서 다른 제도와의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 전체적인 현금급여 제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일·가족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체계 개편의 결과로 기존의 5개 수당제도를 영아보육수당 체계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영아보육수당 체계 안에 만 3세 미만 영아를 지원하는 수당 및 보조금 제도를 두었다. 이는 영아가구에 지급되는 다양한 급여가 상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단일한 체계 내에서 여러 수당제도를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독일은 2015년, 스웨덴은 2016년에 가정양육수당을 폐지하였는데, 이는 가정양육수당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에 반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즉, 전체적인 가족정책 방향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정양육수당이 가지는 제도적 부정합성에 의해 폐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비록 핀란드가 양육수당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정양육수당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부모의 선택권을 확장하기 위해 분화된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수당제도의 설계에서 더 나아가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 및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측면에서 영아수당 도입이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간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과 돌봄의 성별화 현상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모가 자녀 돌봄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인프라가 충분히 제공되는 상태에서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현금지원제도가 발달한 국가인 동시에 성별화된 돌봄을 하는 대표적인 보수주의적 국가로 평가되어 왔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현금지원의 성별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만 3세 미만 보육 인프라와 남성의 돌봄 참여를 강조하는 개혁을 시도하여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영아수당 실시 과정에서 부모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육 인프라의 접근성 보장은 물론, 돌봄의 성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점검도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영아수당의 기대 인식과 요구

- 01 0~1세아 양육 실태와 어려움
- 02 0~1세아 양육방식의 선호도와 육아지원 욕구
- 03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과 지원방식에 관한 요구
- 04 소결

V. 영아수당의 기대 인식과 요구

제5장에서는 영아자녀의 도움 정도와 기대효과 등 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우선 영아자녀(24개월 미만)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호도와 육아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도움 정도 인식과 그 지원방식에 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1. 0~1세아 양육 실태와 어려움

0~1세아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녀의 양육 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양육자, 희망하는 양육방식 여부,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와 병행이용 서비스 및 해당 비용, 양육 시 애로사항, 경력단절 경험과 그 사유 등을 주요 변인별로 분석하였다.

가. 0~1세아의 양육 실태와 희망하는 양육방식 여부

1) 주양육자

0~1세아를 현재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앞서 0~1세아를 평일 낮 시간 동안에 주로 양육하는 자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모(육아휴직 포함)가 59.1%로 과반을 넘고,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24.7%, 조부모 10.7%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주양육자는 자녀의 연령과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연령별로는 0~11개월 자녀의 경우는 부모가 직접양육하는 비율이 63.0%로 평균보다 더 높은 반면에 12~23개월 자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28.9%로 0~11개월 자녀 18.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제3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2019년 어린이집 이용률이 보육연령 기준으로 0세아는 20.2%에 그치나, 1세아는 81.1%로 급증하는 것을 확인시켜준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27).

특히 어린이집 이용률은 월평균 가구소득이나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0~1세아에 대해서는 가정내양육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 다음으로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양육서비스 즉, 조부모,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15.8%로 나타나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맞벌이 가구는 일하는 동안 자녀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 즉, 어린이집과 개인양육서비스 이용 비율이 각각 29.9%와 26.1%로 홀벌이 가구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들 가구에서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이 보장되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V-1-1〉 24개월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평일 기준)

단위: %(명)

구분	부모 (육아휴직 포함)	어린이집	아이 돌보미	조부모 (또는 친인척)	민간 육아도우미	계(수)
전체	59.1	24.7	5.1	10.7	0.4	100.0 (506)
자녀연령						
0~11개월	63.0	18.8	7.7	9.6	1.0	100.0 (208)
12~23개월	56.4	28.9	3.4	11.4	0.0	100.0 (298)
$\chi^2(df)$		13.69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4.1	29.9	8.8	16.5	0.8	100.0 (261)
홀벌이 가구	75.1	19.8	0.8	4.2	0.0	100.0 (237)
모두 근로 안함	75.0	0.0	12.5	12.5	0.0	100.0 (8)
$\chi^2(df)$		63.288(8)***				
출생순위						
첫째	61.6	21.1	4.7	12.2	0.4	100.0 (279)
둘째	56.9	29.7	4.6	8.2	0.5	100.0 (195)
셋째 이상	50.0	25.0	12.5	12.5	0.0	100.0 (32)
$\chi^2(df)$		9.966(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3.3	20.0	0.0	6.7	0.0	100.0 (15)
200~299만원	55.9	29.4	7.4	7.4	0.0	100.0 (68)
300~399만원	66.7	20.9	3.9	8.5	0.0	100.0 (129)
400~499만원	62.4	24.7	5.9	7.1	0.0	100.0 (85)
500~599만원	55.3	26.3	3.9	14.5	0.0	100.0 (76)
600~699만원	48.1	34.6	5.8	7.7	3.8	100.0 (52)
700~799만원	62.1	13.8	6.9	17.2	0.0	100.0 (29)
800만원 이상	50.0	23.1	5.8	21.2	0.0	100.0 (52)
$\chi^2(df)$		39.504(28)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1$, *** $p < .001$

2) 희망하는 양육방식 여부

현재 0~1세아의 주된 양육방식이 희망하는 양육방식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8.9%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앞서 우려한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율은 홀벌이 가구에 비해 낮아 74.7%에 그쳤다. 이는 앞서 맞벌이 가구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평균에 비해 낮은 44.1%에 그치는 반면 어린이집 이용률과 개인양육서비스 이용률은 각각 29.9%와 26.1%로 높게 나타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자녀연령, 출생순위, 월평균 가구소득 등 이외 변인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V-1-2〉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주양육자의 희망 양육방식 여부: 1) 전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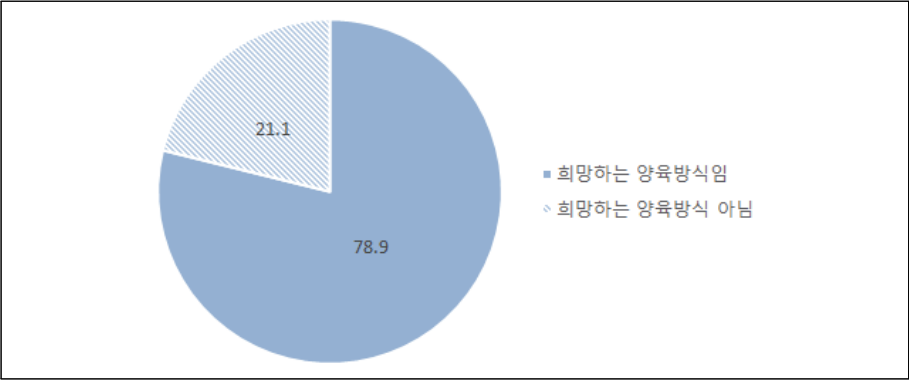
구분	주양육자의 희망 양육방식 여부		계(수)
	희망 양육방식임	희망 양육방식 아님	
전체	78.9	21.1	100.0 (506)
자녀연령			
0~11개월	78.4	21.6	100.0 (208)
12~23개월	79.2	20.8	100.0 (298)
$\chi^2(df)$	0.05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4.7	25.3	100.0 (261)
홀벌이 가구	84.4	15.6	100.0 (237)
모두 근로안함	50.0	50.0	100.0 (8)
$\chi^2(df)$	11.032(2)**		
출생순위			
첫째	78.9	21.1	100.0 (279)
둘째	79.0	21.0	100.0 (195)
셋째 이상	78.1	21.9	100.0 (32)
$\chi^2(df)$	0.012(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80.0	20.0	100.0 (15)
200~299만원	75.0	25.0	100.0 (68)
300~399만원	86.8	13.2	100.0 (129)
400~499만원	77.6	22.4	100.0 (85)
500~599만원	76.3	23.7	100.0 (76)
600~699만원	67.3	32.7	100.0 (52)
700~799만원	75.9	24.1	100.0 (29)
800만원 이상	82.7	17.3	100.0 (52)
$\chi^2(df)$	10.669(7)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1$

[그림 V-1-1]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주양육자의 희망 양육방식 여부: 전체

단위 : %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주양육자별로 희망하는 양육방식 여부를 확인한 바로는 부모가 직접양육하는 경우에서 희망하는 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7.6%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대리 양육 즉, 아이돌보미, 조부모,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도 희망하는 양육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0~1세아 특히, 0세아를 둔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에 주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표 V-1-3>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가구의 희망 양육방식 여부: 2) 주양육자별

단위: %(명)

구분	희망하는 양육방식 여부		계(수)
	희망 양육방식임	희망 양육방식 아님	
전체	78.9	21.1	100.0 (506)
부모(육아휴직 포함)	87.6	12.4	100.0 (299)
어린이집	68.0	32.0	100.0 (125)
아이돌보미	76.9	23.1	100.0 (26)
조부모(또는 친인척)	57.4	42.6	100.0 (54)
민간 육아도우미	50.0	50.0	100.0 (2)
기타	0.0	0.0	0.0 (0)
$\chi^2(df)$	38.58(4)***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01$

다음으로 앞서 다룬 변인 이외에 가족형태, 직종, 맞벌이 가구의 근로형태에 따라서는 부모의 선택권 보장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맞벌이 가구 중 부부 모두 전일제근로자인 가구에 비해 전일제근로+시간제근로 가구에서 희망하

는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2%로 높게 나타나므로 그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을 종합하면 특히 0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일차적으로 주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V-1-4〉 24개월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별 희망 양육방식 여부: 3) 가족형태별

단위: %(명)

구분	희망하는 양육방식 여부		계(수)
	희망 양육방식임	희망 양육방식 아님	
전체	78.9	21.1	100.0 (506)
부부+자녀	78.9	21.1	100.0 (475)
한부모+자녀	58.3	41.7	100.0 (12)
3세대 이상 가족	89.5	10.5	100.0 (19)
기타	0.0	0.0	0.0 (0)
$\chi^2(df)$	4.318(2)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1-5〉 24개월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별 희망 양육방식 여부: 4) 직종별

단위: %(명)

구분	희망하는 양육방식		계(수)
	희망 양육방식임	희망 양육방식 아님	
전체	78.9	21.1	100.0 (506)
사무직	78.2	21.8	100.0 (316)
생산직	75.0	25.0	100.0 (28)
전문직	80.3	19.7	100.0 (61)
서비스 및 판매직	77.3	22.7	100.0 (22)
전업주부	85.1	14.9	100.0 (67)
기타	66.7	33.3	100.0 (12)
$\chi^2(df)$	3.076(5)		

주: 기타에는 학생 포함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1-6〉 24개월 미만 자녀의 주양육자별 희망 양육방식 여부: 5)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명)

구분	희망하는 양육방식 여부		계(수)
	희망 양육방식임	희망 양육방식 아님	
전체	74.7	25.3	100.0 (261)
전일제근로+전일제근로	75.8	24.2	100.0 (219)
전일제근로+시간제근로	65.8	34.2	100.0 (38)
시간제근로+시간제근로	100.0	0.0	100.0 (4)
$\chi^2(df)$	3.092(2)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한편 현재 0~1세아의 주양육자가 희망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응답한 가구가 희망하는 양육방식으로는 부모가 42.1%, 아이돌보미 29.0%, 어린이집 15.0%로 조사되어 가정 내에서 개인양육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변인별로는 자녀연령을 제외하고, 맞벌이 여부, 응답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가구에서는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53.0%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은 9.1%로 낮은 선호를 보인다. 반면에 홀벌이 가구에서는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비율이 32.4%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의 고립된 육아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부모 직접양육에 대한 선호는 낮아지고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는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적 부문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 제고가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1-7〉 (현재 주양육자가 희망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 24개월 미만 자녀의 희망 양육방식

단위: %(명)

구분	부모 (육아휴직 포함)	어린이집	아이 돌보미	조부모 (또는 친인척)	민간 육아 도우미	기타	계(수)
전체	42.1	15.0	29.0	7.5	5.6	0.9	100.0 (107)
자녀연령							
0~11개월	46.7	8.9	31.1	4.4	6.7	2.2	100.0 (45)
12~23개월	38.7	19.4	27.4	9.7	4.8	0.0	100.0 (62)
$\chi^2(df)$	4.913(5)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3.0	9.1	27.3	7.6	3.0	0.0	100.0 (66)
홀벌이 가구	24.3	27.0	32.4	8.1	5.4	2.7	100.0 (37)
모두 근로안함	25.0	0.0	25.0	0.0	50.0	0.0	100.0 (4)
$\chi^2(df)$	27.949(10)**						
출생순위							
첫째	49.2	15.3	22.0	6.8	6.8	0.0	100.0 (59)
둘째	36.6	17.1	34.1	9.8	2.4	0.0	100.0 (41)
셋째 이상	14.3	0.0	57.1	0.0	14.3	14.3	100.0 (7)
$\chi^2(df)$	23.683(10)**						

구분	부모 (육아휴직 포함)	어린이집	아이 돌보미	조부모 (또는 친인척)	민간 육아 도우미	기타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3.3	0.0	33.3	0.0	33.3	0.0	100.0 (3)
200~299만원	58.8	5.9	17.6	5.9	11.8	0.0	100.0 (17)
300~399만원	23.5	29.4	23.5	17.6	5.9	0.0	100.0 (17)
400~499만원	31.6	21.1	31.6	5.3	10.5	0.0	100.0 (19)
500~599만원	61.1	22.2	16.7	0.0	0.0	0.0	100.0 (18)
600~699만원	35.3	0.0	52.9	11.8	0.0	0.0	100.0 (17)
700~799만원	28.6	28.6	28.6	0.0	0.0	14.3	100.0 (7)
800만원 이상	55.6	0.0	33.3	11.1	0.0	0.0	100.0 (9)
$\chi^2(df)$	na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의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1$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돌봄의 공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의 선호도가 높지 않은 이유는 심층면담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부모 16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고자 하며,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 만 1세는 가정내 양육이 보다 적합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저희는 친정과 시댁이 서울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걸지도 못할 때 보내서 너무 빨리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어린이집에 가는 시기가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표현을 할 수 있을 때 가면 좋았을 텐데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여건만 가능하다면 엄마가 보는 게 가장 좋지만 맞벌이 (가구)니까 조부모가 봐주시는 게 아이 애착 관련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전일제 시터를 알아봤는데 금액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등하원 도우미를 써볼까 알아봤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양육자가 너무 많이 바뀌면 아이한테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 풀로 보내게 되었고요 (부모 16)

나. 0~1세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서비스 병행이용 실태

1)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 및 적절한 시기에 대한 인식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비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0세아는 18.8%, 1세아는 28.9%이고, 이들 가구에서 희망하는 양육방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8.0%

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최초이용 시기와 해당 시기가 적합하다고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먼저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의 자녀연령은 평균 11개월로 조사되었으며, 12~18개월이 4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6~11개월이 26.4%, 3~5개월 19.2% 순이었다. 자녀연령별 최초 어린이집 이용 시기는 0~11개월아는 평균 5개월, 12~23개월아는 13.7개월로 나타난다.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초 기관 이용시기는 2009년에는 30개월이었으나, 2012년 26.8개월, 2015년 24.1개월, 2018년에는 22.7개월로 점차 당겨지는 것으로 확인된다(이정원·이정림·도남희 외, 2018: 187).

주요 변인별로 맞벌이 가구는 평균 10.1개월로 홀벌이 가구(12.4개월)에 비해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그 차이는 소폭에 그쳤다. 이외에도 사례수가 적어 일반화는 어려우나, 셋째 이상 자녀의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는 3~5개월이 50.0%이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와 200~299만원 이하 가구에서 해당 비율은 각각 66.7%와 35.0%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어린이집 입소 시기는 자녀수가 많고, 저소득층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이른 경향을 보인다고 짐작된다.

〈표 V-1-8〉 24개월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

단위: %(명), 개월

구분	3~5 개월	6~11 개월	12~18 개월	19~23 개월	계(수)	평균 (개월)
전체	19.2	26.4	44.0	10.4	100.0 (125)	11.0
자녀연령						
0~11개월	53.8	46.2	0.0	0.0	100.0 (39)	5.0
12~23개월	3.5	17.4	64.0	15.1	100.0 (86)	13.7
t/ χ^2 (df)		74.655(3)***				-10.77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9.2	34.6	42.3	3.8	100.0 (78)	10.1
홀벌이 가구	19.1	12.8	46.8	21.3	100.0 (47)	12.4
모두 근로안함	0.0	0.0	0.0	0.0	0.0 (0)	0.0
F/ χ^2 (df)		14.006(3)**				3.965*
출생순위						
첫째	10.2	30.5	49.2	10.2	100.0 (59)	11.6
둘째	24.1	24.1	41.4	10.3	100.0 (58)	10.6
셋째 이상	50.0	12.5	25.0	12.5	100.0 (8)	8.8
F/ χ^2 (df)		9.410(6)				1.127

구분	3~5 개월	6~11 개월	12~18 개월	19~23 개월	계(수)	평균 (개월)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6.7	0.0	33.3	0.0	100.0 (3)	5.3
200~299만원	35.0	30.0	25.0	10.0	100.0 (20)	8.7
300~399만원	11.1	25.9	44.4	18.5	100.0 (27)	12.6
400~499만원	19.0	14.3	52.4	14.3	100.0 (21)	12.0
500~599만원	15.0	30.0	50.0	5.0	100.0 (20)	10.6
600~699만원	11.1	33.3	44.4	11.1	100.0 (18)	12.6
700~799만원	25.0	25.0	50.0	0.0	100.0 (4)	9.8
800만원 이상	16.7	33.3	50.0	0.0	100.0 (12)	9.3
F/ χ^2 (df)	na					1.700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p < .05$, ** $p < .01$, *** $p < .001$

〈표 V-1-9〉 24개월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의 적합성 인식 여부

단위: %(명)

구분	적합함 비율	부적합함 비율		계(수)
		빠름	늦음	
전체	36.8	60.8	2.4	100.0 (125)
자녀연령				
0~11개월	23.1	76.9	0.0	100.0 (39)
12~23개월	43.0	53.5	3.5	100.0 (86)
χ^2 (df)	6.68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2.1	66.7	1.3	100.0 (78)
홀벌이 가구	44.7	51.1	4.3	100.0 (47)
모두 근로안함	0.0	0.0	0.0	0.0 (0)
χ^2 (df)	3.526(2)			
출생순위				
첫째	45.8	52.5	1.7	100.0 (59)
둘째	27.6	69.0	3.4	100.0 (58)
셋째 이상	37.5	62.5	0.0	100.0 (8)
χ^2 (df)	4.508(4)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6.7	33.3	0.0	100.0 (3)
200~299만원	30.0	70.0	0.0	100.0 (20)
300~399만원	51.9	40.7	7.4	100.0 (27)

구분	적합함 비율	부적합함 비율		계(수)
		빠름	늦음	
400~499만원	38.1	61.9	0.0	100.0 (21)
500~599만원	35.0	65.0	0.0	100.0 (20)
600~699만원	27.8	66.7	5.6	100.0 (18)
700~799만원	25.0	75.0	0.0	100.0 (4)
800만원 이상	25.0	75.0	0.0	100.0 (12)
$\chi^2(df)$		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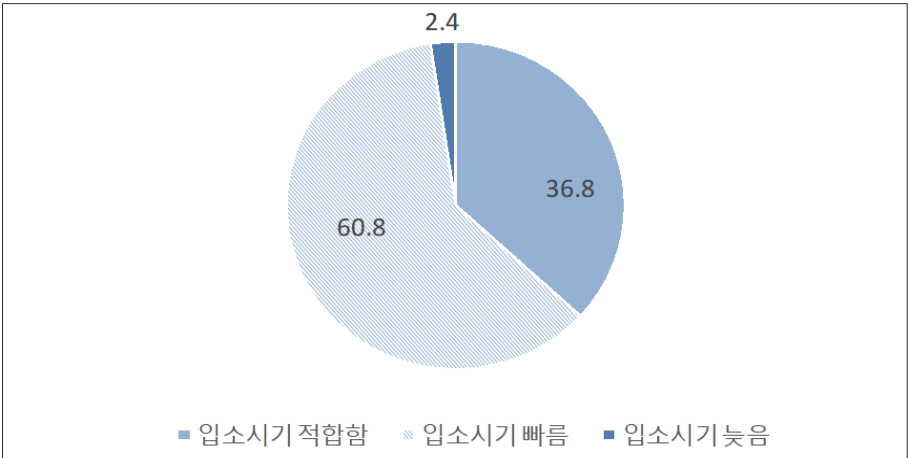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그림 V-1-2] 24개월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의 적합성 인식 여부: 전체

단위 : %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한편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가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가구의 비율은 36.8%에 그쳤다. 해당 시기가 이르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적합한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 경우는 예상되는 바와 같이 0~11개월 자녀에서 76.9%로 높고, 맞벌이 가구에서 6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0세아의 경우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호가 맞벌이 가구 여부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가운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보다 이른 시점에 어린이집을 불가피하게 이용하는 가구가 있으므로 이들 가구의 선택권 보장이 주요한 과제임을 알수 있다.

2) 적합한 시기보다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가 빠른 이유

어린이집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이용하게 된 주된 사유로는 ‘직장에 복귀해야 하거나 학업을 계속해야 해서’가 71.1%로 압도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원하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적합한 시기보다 미리 입소함’ 21.1%, ‘다른 자녀(동생 등)를 함께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 10.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0~1세아의 어린이집 이용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맞벌이 가구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에서의 복귀 이외에도 다 자녀 또는 추가출산이나 고립된 가정내 육아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이유가 자리잡고 있으므로 육아지원의 방향성 측면에서 해당 수요의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표 V-1-10〉 24개월 미만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시기가 빠른 이유(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수)
전체	21.1	71.1	10.5	5.3	0.0 (76)
자녀연령					
0~11개월	26.7	73.3	6.7	6.7	0.0 (30)
12~23개월	17.4	69.6	13.0	4.3	0.0 (46)
$\chi^2(df)$	2.04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3.5	84.6	5.8	3.8	0.0 (52)
홀벌이 가구	37.5	41.7	20.8	8.3	0.0 (24)
모두 근로안함	0.0	0.0	0.0	0.0	0.0 (0)
$\chi^2(df)$	25.056(4)***				
출생순위					
첫째	22.6	74.2	0.0	12.9	0.0 (31)
둘째	22.5	70.0	15.0	0.0	0.0 (40)
셋째 이상	0.0	60.0	40.0	0.0	0.0 (5)
$\chi^2(df)$	17.132(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00.0	0.0	0.0	0.0	0.0 (1)
200~299만원	14.3	85.7	0.0	7.1	0.0 (14)
300~399만원	27.3	63.6	9.1	9.1	0.0 (11)
400~499만원	30.8	53.8	23.1	0.0	0.0 (13)
500~599만원	30.8	61.5	7.7	15.4	0.0 (13)
600~699만원	8.3	83.3	8.3	0.0	0.0 (12)

구분	①	②	③	④	⑤	(수)
700~799만원	0.0	100.0	0.0	0.0	0.0	(3)
800만원 이상	11.1	77.8	22.2	0.0	0.0	(9)
$\chi^2(df)$	na					

주: 1) ① 원하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미리 입소함 ② 직장에 복귀해야 해서(또는 학업을 계속해야 해서) ③ 다른 자녀(동생 등) 함께 양육하는 것이 힘들어서 ④ 혼자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자녀가 1명인 경우)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2)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3)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p < .05$, *** $p < .001$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기보다 어린이집을 이른 시기에 이용하게 된 이유로서 육아휴직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직장 여건이 지적되었다. 부모 12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업무여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시기만큼 활용하기 어려워 24개월까지 자녀를 직접양육하기를 희망하나 어린이집 이용이 불가피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육아휴직 사용을 희망하는 시기만큼 활용하지 못하고, 보다 일찍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된 경우에는 장시간보육을 기피하므로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저도 주양육자가 두돌 전까지는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기업에 있었는데 기존 사기업은 대기업이라서 더 타이트하게 6개월 이내 복직을 바라는 상황이었고 돌아온다고 해도 그 자리가 있을지 불투명했고 그래서 중소기업으로 이직했는데 중소기업은 한 명의 자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대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압박을 주지는 않는데 제 자신이 압박을 느끼더라고요. 결국 둘째는 1년을 쉬려고 했는데 6개월만 휴직을 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2개월 정도 연장을 했어요. 그 8개월도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저 말고도 주변에 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최대가 1년이고 그 안쪽으로 복직을 하고 있어서 맞벌이가 주양육자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4시 전까지 끝나는 사기업이면 조금 더 주양육자가 아이를 케어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연장보육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남은 아이들이 1~2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아이가 마지막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초조한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고 싶지는 않아요 (부모 12)

대체인력이 사실 불가하거든요. 저는 기획 업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특성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투입이 가능한데 회사에서도 사실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남은 인력으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저도 심적인 부담이 심하고, 사기업에서는 젊은 여자들을 많이 꺼리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부모 12)

3) 어린이집 이용가구의 서비스 병행이용과 이용비용

가) 어린이집과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 유형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에게 부모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5%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율은 맞벌이 가구에서 59.4%로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63.5%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0세아와 1세아는 어린이집과 병행 이용 중인 서비스의 비율이 유사한 수준이어서 장시간보육에의 기피는 1세아에서 어린이집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점과 무관함을 짐작하게 한다.

〈표 V-1-11〉 어린이집 이용 중인 24개월 미만 자녀의 서비스 병행이용(정기적) 여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과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 유무		계(수)
	병행이용 서비스 있음	병행이용 서비스 없음	
전체	44.5	55.5	100.0 (506)
자녀연령			
0~11개월	48.1	51.9	100.0 (208)
12~23개월	41.9	58.1	100.0 (298)
$\chi^2(df)$	1.86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9.4	40.6	100.0 (261)
홀벌이 가구	29.5	70.5	100.0 (237)
모두 근로안함	0.0	100.0	100.0 (8)
$\chi^2(df)$	51.331(2)***		
출생순위			
첫째	44.4	55.6	100.0 (279)
둘째	44.1	55.9	100.0 (195)
셋째 이상	46.9	53.1	100.0 (32)
$\chi^2(df)$	0.086(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0.0	40.0	100.0 (15)
200~299만원	33.8	66.2	100.0 (68)
300~399만원	41.1	58.9	100.0 (129)
400~499만원	38.8	61.2	100.0 (85)
500~599만원	42.1	57.9	100.0 (76)
600~699만원	48.1	51.9	100.0 (52)
700~799만원	58.6	41.4	100.0 (29)
800만원 이상	63.5	36.5	100.0 (52)
$\chi^2(df)$	16.675(7)*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01$

어린이집과 병행하여 이용 중인 서비스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부모 72.9%로 주를 이루며,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가 각각 23.1%와 21.8%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에서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74.8%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은 물론, 가정내보육서비스 즉, 아이돌보미와 민간 육아도우미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을 합하여 4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V-1-12〉 어린이집 이용 중인 24개월 미만 자녀의 병행이용 서비스 내용(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조부모 (또는 친인척)	민간 육아 도우미	아이 돌보미	이웃	방문 서비스	기타	(수)
전체	72.9	21.8	23.1	3.1	0.4	0.4	(225)
자녀연령							
0~11개월	71.0	23.0	25.0	3.0	0.0	0.0	(100)
12~23개월	74.4	20.8	21.6	3.2	0.8	0.8	(125)
$\chi^2(df)$			2.459(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74.8	21.3	25.2	3.9	0.6	0.6	(155)
홀벌이 가구	68.6	22.9	18.6	1.4	0.0	0.0	(70)
모두 근로 안함	0.0	0.0	0.0	0.0	0.0	0.0	(0)
$\chi^2(df)$			4.068(6)				
출생순위							
첫째	75.0	21.0	23.4	3.2	0.0	0.0	(124)
둘째	70.9	20.9	22.1	2.3	1.2	1.2	(86)
셋째 이상	66.7	33.3	26.7	6.7	0.0	0.0	(15)
$\chi^2(df)$			6.220(1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4.4	22.2	22.2	11.1	0.0	0.0	(9)
200~299만원	65.2	26.1	21.7	0.0	0.0	0.0	(23)
300~399만원	71.7	18.9	22.6	0.0	1.9	0.0	(53)
400~499만원	69.7	21.2	24.2	0.0	0.0	3.0	(33)
500~599만원	78.1	25.0	21.9	3.1	0.0	0.0	(32)
600~699만원	80.0	28.0	20.0	12.0	0.0	0.0	(25)
700~799만원	82.4	17.6	29.4	0.0	0.0	0.0	(17)
800만원 이상	75.8	18.2	24.2	6.1	0.0	0.0	(33)
$\chi^2(df)$			31.467(42)				

주: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심층면담 결과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장시간보육의 기피로 인해 혈연에 의한 돌봄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모 7은 어린이집 기본보육과 단축근로를 통해, 그리고 부모 15는 친인척 돌봄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데, 두 사람 모두 발달 측면에서 장시간보육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모 15는 비혈연에 의한 개인양육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어서 혈연인력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이가 혼자 어린이집에 길게 있는 게 조금... 가족이 옆에서 보육을 해주는 건 좋은데 어린이집에 아침부터 밤 늦게 있는 거는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선호하진 않아요 (부모 7)

아무래도 조금은 언론에서도 학대적인 부분이 있고 걱정이 많이 돼서.. 그래도 혈연이 봐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외부 사람보다는 혈연 위주로 돌봄을 하고 있어요 (부모 15)

저도 지금 육아휴직 기간에도 그렇고 복직을 한 지금도 그렇고 10시에 등원해서 4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연장보육 신청 안 했어요. 일단 혈연 중에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아이가 어떤 기관에 너무 오랜 시간 있다 보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거고 너무 쉽게 가기 싫은 느낌도 들 것 같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서 한 6시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 아이들에게는 (부모 15)

이처럼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0~1세를 둔 가구에서 장시간보육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므로 장시간노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 등에서 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려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해당 서비스의 추가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도 떠안고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나) 어린이집과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의 이용비용

어린이집과 병행하여 이용 중인 서비스의 이용비용은 평균 724,400원으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민간 육아도우미가 평균 829,800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조부모 568,400원, 아이돌보미 484,200원 순으로 나타난다.

주요 변인별로 평균 서비스 이용비용은 맞벌이 가구에서 821,500원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가구에서 1,040,90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은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져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360,000원에 그치나, 700~799만원과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각각 1,233,300원과 1,333,3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부모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0~11개월 자녀에게 612,000원, 맞벌이 가구에서 654,300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도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총비용보다 약 10만원 이상 높았다.

〈표 V-1-13〉 어린이집 이용 중인 24개월 미만 자녀의 병행이용 서비스 월평균 지출비용

단위: 만원(명)

구분	조부모 (또는 친인척)	민간 육아 도우미	아이 돌보미	이웃	방문 서비스	기타	월평균 총비용	(수)
전체	56.84	82.98	48.42	50.86	32.00	5.00	72.44	(274)
자녀연령								
0~11개월	61.20	75.22	49.00	53.33	0.00	0.00	74.60	(122)
12~23개월	53.52	89.85	47.89	49.00	32.00	5.00	70.71	(152)
<i>t</i>							0.4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65.43	82.15	46.03	51.00	32.00	5.00	80.25	(196)
홀벌이 가구	36.08	84.69	55.62	50.00	0.00	0.00	55.14	(78)
모두 근로안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
<i>F</i>							6.522*	
출생순위								
첫째	54.63	80.50	55.86	47.50	0.00	0.00	72.45	(152)
둘째	60.85	101.39	41.05	80.50	32.00	5.00	75.76	(102)
셋째 이상	52.90	29.60	29.50	5.00	0.00	0.00	53.33	(20)
<i>F</i>							0.67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0.00	36.00	20.00	50.00	0.00	0.00	35.78	(9)
200~299만원	57.33	65.50	26.40	0.00	0.00	0.00	60.22	(26)
300~399만원	52.11	95.50	39.58	0.00	32.00	0.00	64.94	(61)
400~499만원	43.04	44.29	36.00	0.00	0.00	5.00	48.27	(39)
500~599만원	59.80	67.25	62.14	10.00	0.00	0.00	77.44	(41)
600~699만원	57.75	89.71	58.00	15.33	0.00	0.00	84.76	(35)
700~799만원	67.29	123.33	42.60	0.00	0.00	0.00	89.71	(22)
800만원 이상	69.60	133.33	80.63	125.00	0.00	0.00	104.09	(41)
<i>F</i>							2.522*	

주: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서비스 병행이용에 따른 이용비용이 평균 70만원선을 육박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희망하는 양육방식의 선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0~1세아의 양육비용과 부담 정도 인식

영아수당액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0~1세아의 양육비용과 해당 비용의 부담 정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은 평균 850,500원이고, 0~11개월 자녀와 맞벌이 가구에서 각각 993,200원과 1,034,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나타냈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799만원과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각각 1,436,800원과 1,497,900원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해당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약간 부담됨+매우 부담됨)은 79.6%(평균 3.02점, 4점 만점)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해당 비용의 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보인 맞벌이 가구에서 평균 3.1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14〉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비용/부담 정도: 1) 돌봄서비스 이용비용/부담 정도

단위: 만원(수), %(명), 점

구분	월평균 비용		비용부담 정도					4점 평균
	금액 (만원)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수)	
전체	85.05	(506)	8.5	11.9	48.4	31.2	100.0 (506)	3.02
자녀연령								
0~11개월	99.32	(208)	8.7	13.0	47.6	30.8	100.0 (208)	3.00
12~23개월	75.13	(298)	8.4	11.1	49.0	31.5	100.0 (298)	3.04
t/ χ^2 (df)	2.605**				24.339(21)			-0.4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03.40	(261)	5.7	10.3	51.0	33.0	100.0 (261)	3.11
홀벌이 가구	62.04	(237)	11.8	13.9	45.1	29.1	100.0 (237)	2.92
모두 근로안함	80.13	(8)	0.0	0.0	62.5	37.5	100.0 (8)	3.38
F/ χ^2 (df)	11.428**				10.264(6)			4.550*
출생순위								
첫째	76.57	(279)	9.0	12.9	46.2	31.9	100.0 (279)	3.01
둘째	94.74	(195)	8.2	11.3	49.2	31.3	100.0 (195)	3.04
셋째 이상	95.35	(32)	6.3	6.3	62.5	25.0	100.0 (32)	3.06
F/ χ^2 (df)	1.826				3.490(6)			0.080

구분	월평균 비용		비용부담 정도					4점 평균
	금액 (만원)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73.00	(15)	6.7	13.3	53.3	26.7	100.0 (15)	3.00
200~299만원	63.20	(68)	5.9	13.2	47.1	33.8	100.0 (68)	3.09
300~399만원	71.32	(129)	7.0	10.1	46.5	36.4	100.0 (129)	3.12
400~499만원	66.06	(85)	7.1	7.1	52.9	32.9	100.0 (85)	3.12
500~599만원	77.01	(76)	13.2	22.4	47.4	17.1	100.0 (76)	2.68
600~699만원	93.91	(52)	7.7	9.6	55.8	26.9	100.0 (52)	3.02
700~799만원	143.68	(29)	10.3	3.4	44.8	41.4	100.0 (29)	3.17
800만원 이상	149.79	(52)	11.5	13.5	42.3	32.7	100.0 (52)	2.96
F/ χ^2 (df)	2.594*				24.339(21)			2.249*

주: 4점 평균은 '전혀 부담 안됨' 1점 ~ '매우 부담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무상보육에 이어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구에서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은 자녀가 어려서 등으로 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육아용품 구입비용은 471,300원으로, 0~11개월과 맞벌이 가구에서 각각 557,100원과 538,200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700~799만원과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 각각 687,200원과 771,200원으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V-1-15 참조). 특히 0세아의 지출비용이 1세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둘째 자녀에 비해 첫째 자녀에서 그 부담 정도가 크다는 점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 지출 부담을 일차적으로 완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해당 비용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부담됨+매우 부담됨)은 81.4%(평균 3.03 점, 4점 만점)로 돌봄서비스에 비해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해당 비용에 대한 부담 정도 인식은 돌봄서비스와는 달리 39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현금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저소득층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지점이다.

〈표 V-1-15〉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비용/부담 정도: 2) 육아용품 구입비용/부담 정도

단위: 만원(명), %(명), 점

구분	월평균 비용		비용부담 정도					4점 평균
	평균	(수)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부담됨	매우 부담됨	계(수)	
전체	47.13	(506)	4.0	14.6	55.9	25.5	100.0 (506)	3.03
자녀연령								
0~11개월	55.71	(208)	4.8	17.3	54.8	23.1	100.0 (208)	2.96
12~23개월	41.15	(298)	3.4	12.8	56.7	27.2	100.0 (298)	3.08
t/ χ^2 (df)	2.792**				3.281(3)			-1.71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53.82	(261)	3.8	11.1	59.8	25.3	100.0 (261)	3.07
홀벌이 가구	39.37	(237)	4.2	18.6	52.7	24.5	100.0 (237)	2.97
모두 근로안함	56.75	(8)	0.0	12.5	25.0	62.5	100.0 (8)	3.50
F/ χ^2 (df)	5.138*				11.999(6)			2.530
출생순위								
첫째	45.45	(279)	3.6	15.8	52.7	28.0	100.0 (279)	3.05
둘째	49.24	(195)	4.6	12.8	61.0	21.5	100.0 (195)	2.99
셋째 이상	48.78	(32)	3.1	15.6	53.1	28.1	100.0 (32)	3.06
F/ χ^2 (df)	0.277				4.496(6)			0.34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8.40	(15)	6.7	13.3	40.0	40.0	100.0 (15)	3.13
200~299만원	39.13	(68)	1.5	11.8	60.3	26.5	100.0 (68)	3.12
300~399만원	36.43	(129)	2.3	16.3	48.1	33.3	100.0 (129)	3.12
400~499만원	42.48	(85)	3.5	8.2	64.7	23.5	100.0 (85)	3.08
500~599만원	48.46	(76)	7.9	18.4	57.9	15.8	100.0 (76)	2.82
600~699만원	46.98	(52)	1.9	19.2	57.7	21.2	100.0 (52)	2.98
700~799만원	68.72	(29)	3.4	6.9	65.5	24.1	100.0 (29)	3.10
800만원 이상	77.12	(52)	7.7	19.2	50.0	23.1	100.0 (52)	2.88
F/ χ^2 (df)	3.377**				26.313(21)			1.787

주: 4점 평균은 '전혀 부담 안됨' 1점 ~ '매우 부담됨' 4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라. 0~1세아 양육의 어려움

0~1세아를 양육하는 데 어려운 점으로는 자녀의 양육비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순위 기준으로 36.4%, 1순위와 2순위를 합하여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1-16〉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 1순위/1+2순위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자녀의 양육비용이 많이 듦	36.4	47.8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만한 기관이 없음	15.6	30.4
장시간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음	13.6	31.6
종일 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	12.3	34.0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직장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움	10.9	30.6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없음	7.1	13.0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잘 모름	3.4	9.3
기타	0.8	3.0
계(수)	100.0(506)	(506)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그 다음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집 근처에 믿을만한 보육시설이 없음 15.6%, 장시간노동 등으로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음 13.6%, 종일 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 12.3%, 육아휴직 등 직장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움 10.9%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1-17〉 주요 변인별 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시 어려움(1순위 기준)

구분	단위: %(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전체	36.4	7.1	15.6	13.6	10.9	12.3	3.4	0.8	100.0 (506)
자녀연령									
0~11개월	36.1	10.1	14.9	13.9	8.7	13.5	2.4	0.5	100.0 (208)
12~23개월	36.6	5.0	16.1	13.4	12.4	11.4	4.0	1.0	100.0 (298)
$\chi^2(df)$	7.965(7)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7.2	8.0	16.1	18.8	10.7	6.9	1.9	0.4	100.0 (261)
홀벌이 가구	35.9	6.3	15.2	8.4	11.4	17.7	3.8	1.3	100.0 (237)
모두 근로안함	25.0	0.0	12.5	0.0	0.0	25.0	37.5	0.0	100.0 (8)
$\chi^2(df)$	57.081(14)***								
출생순위									
첫째	38.0	6.1	16.1	14.7	8.6	11.5	3.6	1.4	100.0 (279)
둘째	33.8	9.2	13.8	12.3	14.4	13.8	2.6	0.0	100.0 (195)
셋째 이상	37.5	3.1	21.9	12.5	9.4	9.4	6.3	0.0	100.0 (32)
$\chi^2(df)$	13.450(14)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계(수)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3.3	0.0	20.0	13.3	13.3	6.7	13.3	0.0	100.0 (15)
200~299만원	39.7	5.9	17.6	14.7	10.3	11.8	0.0	0.0	100.0 (68)
300~399만원	40.3	7.0	16.3	7.8	10.1	10.9	7.0	0.8	100.0 (129)
400~499만원	43.5	8.2	12.9	12.9	8.2	12.9	0.0	1.2	100.0 (85)
500~599만원	30.3	9.2	14.5	19.7	10.5	14.5	1.3	0.0	100.0 (76)
600~699만원	21.2	7.7	19.2	13.5	13.5	19.2	5.8	0.0	100.0 (52)
700~799만원	37.9	10.3	13.8	17.2	6.9	10.3	3.4	0.0	100.0 (29)
800만원 이상	34.6	3.8	13.5	17.3	17.3	7.7	1.9	3.8	100.0 (52)
$\chi^2(df)$	49.348(49)								

주: ① 자녀의 양육비용이 많이 듦 ②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없음 ③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만한 기관이 없음 ④ 장시간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음 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직장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움 ⑥ 종일 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 ⑦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잘 모름 ⑧ 기타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01$

주요 변인별로는 양육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가운데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자녀돌봄 시간의 부족, 홀벌이 가구에서 종일 동안의 고립된 육아로 인한 고충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0~1세아 양육의 어려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해당 연령대에 보편적 육아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마. 0~1세아를 둔 부모의 경력단절 경험 및 사유

0~1세아의 출산 또는 양육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9%로 조사되었다. 해당 비율은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어 셋째 자녀 이상에서 34.4%로 높게 나타났다.

〈표 V-1-18〉 24개월 미만 자녀의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한 퇴직 경험 유무

단위: %(명), 명

구분	24개월 미만 자녀의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한 퇴직 경험 유무		계(수)
	퇴직 경험 있음	퇴직 경험 없음	
전체	23.9	76.1	100.0 (506)
자녀연령			
0~11개월	29.3	70.7	100.0 (208)

구분	24개월 미만 자녀의 출산 또는 양육을 위한 퇴직 경험 유무		계(수)
	퇴직 경험 있음	퇴직 경험 없음	
12~23개월	20.1	79.9	100.0 (298)
$\chi^2(df)$	5.689(1)*		
출생순위			
첫째	22.9	77.1	100.0 (279)
둘째	23.6	76.4	100.0 (195)
셋째 이상	34.4	65.6	100.0 (32)
$\chi^2(df)$	2.082(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0.0	80.0	100.0 (15)
200~299만원	36.8	63.2	100.0 (68)
300~399만원	23.3	76.7	100.0 (129)
400~499만원	21.2	78.8	100.0 (85)
500~599만원	21.1	78.9	100.0 (76)
600~699만원	19.2	80.8	100.0 (52)
700~799만원	27.6	72.4	100.0 (29)
800만원 이상	21.2	78.8	100.0 (52)
$\chi^2(df)$	8.080(7)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주된 퇴직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실제 이용하기 힘들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직장여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30.6%,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28.1% 순으로 나타난다. 자녀연령별로 0~11개월의 경우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이 가장 주된 이유로 지목되어 해당 응답률은 39.3%로 높게 나타난다. 자녀돌봄 시간지원 제도의 미비로 인한 퇴직은 12~23개월 자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해당 사례수가 매우 적어 일반화는 어려우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퇴직은 66.7%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가구의 경력단절 예방은 육아휴직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는 것 이외에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V-1-19〉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주된 퇴직 사유

단위: %(명), 명

구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주된 퇴직 사유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33.1	28.1	30.6	5.0	3.3	100.0 (121)
자녀연령						
0~11개월	29.5	39.3	23.0	3.3	4.9	100.0 (61)
12~23개월	36.7	16.7	38.3	6.7	1.7	100.0 (60)
$\chi^2(df)$	10.013(4)*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7.5	29.7	28.1	3.1	1.6	100.0 (64)
홀벌이 가구	28.6	25.0	33.9	7.1	5.4	100.0 (56)
모두 근로안함	0.0	100.0	0.0	0.0	0.0	100.0 (1)
$\chi^2(df)$	6.136(8)					
출생순위						
첫째	40.6	26.6	26.6	3.1	3.1	100.0 (64)
둘째	21.7	30.4	39.1	6.5	2.2	100.0 (46)
셋째 이상	36.4	27.3	18.2	9.1	9.1	100.0 (11)
$\chi^2(df)$	7.402(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3.3	66.7	0.0	0.0	0.0	100.0 (3)
200~299만원	24.0	40.0	24.0	8.0	4.0	100.0 (25)
300~399만원	36.7	20.0	33.3	10.0	0.0	100.0 (30)
400~499만원	38.9	16.7	33.3	5.6	5.6	100.0 (18)
500~599만원	43.8	25.0	31.3	0.0	0.0	100.0 (16)
600~699만원	30.0	20.0	50.0	0.0	0.0	100.0 (10)
700~799만원	25.0	25.0	37.5	0.0	12.5	100.0 (8)
800만원 이상	27.3	45.5	18.2	0.0	9.1	100.0 (11)
$\chi^2(df)$	na					

주: 1) ①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실제 이용하기 힘들어서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③ 직장 여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④ 애초에 자녀를 직접양육하기를 희망해서 ⑤ (부모가) 직접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서

2)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2. 0~1세아 양육방식의 선호도와 육아지원 욕구

0~1세아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호도와 육아지원 요구를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자녀연령, 어린이집 입소에 적합한 자녀연령, 0~1

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맞벌이 가구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등을 주요 변인별로 분석하였다.

가. 0~1세아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호도

1)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시기

0~1세아를 둔 부모들이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자녀의 연령은 평균 33.2개월로 조사되었으며, 36~48개월이 29.1%, 48개월 이상 24.9%, 24개월~36개월 미만 23.5% 순이었다. 주로 여성 단독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해도 최대 24개월까지 자녀를 직접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사용 이후 직장복귀에 따른 대리양육이 희망하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을 내포한다.

주요 변인별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시기가 31.3개월로 상대적으로 이르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시기가 늦추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199만원 가구에서는 평균 약 25개월이나,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 약 35개월로 약 10개월 정도 격차를 보였다.

〈표 V-2-1〉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자녀연령

단위: %(명), 개월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6개월 미만	6개월~12개월 미만	12개월~18개월 미만	18개월~24개월 미만	24개월~36개월 미만	36개월~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계(수)	평균(개월)
전체	0.6	1.8	3.4	9.5	7.3	23.5	29.1	24.9	100.0 (506)	33.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0.8	3.1	3.1	12.3	8.0	24.1	28.4	20.3	100.0 (261)	31.3
홀벌이 가구	0.4	0.4	3.0	6.3	6.3	23.2	30.0	30.4	100.0 (237)	35.6
모두 근로안함	0.0	0.0	25.0	12.5	12.5	12.5	25.0	12.5	100.0 (8)	26.4
F/ χ^2 (df)				28.324(14)*						5.480**
출생순위										
첫째	0.7	0.7	3.9	7.9	7.2	25.4	28.7	25.4	100.0 (279)	33.7
둘째	0.5	2.6	1.5	11.3	7.7	21.5	30.3	24.6	100.0 (195)	33.1
셋째 이상	0.0	6.3	9.4	12.5	6.3	18.8	25.0	21.9	100.0 (32)	29.5
F/ χ^2 (df)				15.323(14)						0.990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2개월 미만	12개월~ 18개월 미만	18개월~ 24개월 미만	24개월~ 36개월 미만	36개월~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계(수)	평균 (개월)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3.3	0.0	6.7	13.3	13.3	6.7	33.3	13.3	100.0 (15)	25.4
200~299만원	0.0	4.4	7.4	14.7	4.4	25.0	19.1	25.0	100.0 (68)	30.2
300~399만원	0.8	1.6	2.3	6.2	8.5	31.8	28.7	20.2	100.0 (129)	32.4
400~499만원	0.0	0.0	3.5	10.6	8.2	18.8	24.7	34.1	100.0 (85)	36.1
500~599만원	0.0	1.3	1.3	10.5	6.6	23.7	31.6	25.0	100.0 (76)	33.5
600~699만원	0.0	1.9	1.9	13.5	5.8	21.2	34.6	21.2	100.0 (52)	33.7
700~799만원	0.0	3.4	3.4	3.4	10.3	20.7	31.0	27.6	100.0 (29)	35.1
800만원 이상	0.0	1.9	3.8	5.8	5.8	17.3	38.5	26.9	100.0 (52)	34.8
$F/\chi^2(df)$				81.117(49)**						1.439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2) 어린이집 입소에 적합한 자녀연령

어린이집 입소에 적합한 자녀연령은 평균 31.9개월로, 앞서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시기와 대체로 부합하며, 24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주요 변인별로는 맞벌이 가구에서 약 30개월로 평균에 비해 빠르고, 출생순위가 높을수록 당겨지는 경향을 보이며, 3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평균 보다 이른 시기에 입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로써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에서는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과 무관하게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려는 의향이 보다 두드러지며, 자녀수가 적은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표 V-2-2〉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 적정 자녀연령

단위: %(명), 개월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2개월 미만	12개월~ 18개월 미만	18개월~ 24개월 미만	24개월~ 36개월 미만	36개월~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계(수)	평균 (개월)
전체	1.4	2.2	5.1	12.1	7.1	21.3	25.1	25.7	100.0 (506)	3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1	2.7	6.9	13.8	8.4	19.5	23.0	24.5	100.0 (261)	30.6
홀벌이 가구	1.3	1.7	3.0	10.5	5.9	23.6	27.0	27.0	100.0 (237)	33.2
모두 근로안함	12.5	0.0	12.5	0.0	0.0	12.5	37.5	25.0	100.0 (8)	34.1
$F/\chi^2(df)$				19.25(14)						1.618

구분	3개월 미만	3개월~ 6개월 미만	6개월~ 12개월 미만	12개월~ 18개월 미만	18개월~ 24개월 미만	24개월~ 36개월 미만	36개월~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계(수)	평균 (개월)
출생순위										
첫째	1.8	1.4	4.7	13.3	6.8	19.4	25.4	27.2	100.0 (279)	32.4
둘째	0.5	2.1	5.1	10.8	7.7	24.6	24.6	24.6	100.0 (195)	31.7
셋째 이상	3.1	9.4	9.4	9.4	6.3	18.8	25.0	18.8	100.0 (32)	28.3
F/ χ^2 (df)				15.232(14)						0.91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0.0	6.7	6.7	6.7	0.0	6.7	20.0	33.3	100.0 (15)	27.5
200~299만원	4.4	5.9	5.9	8.8	7.4	26.5	22.1	19.1	100.0 (68)	28.3
300~399만원	0.8	0.8	5.4	10.9	10.9	23.3	28.7	19.4	100.0 (129)	31.2
400~499만원	0.0	2.4	4.7	12.9	5.9	22.4	23.5	28.2	100.0 (85)	33.3
500~599만원	0.0	0.0	2.6	22.4	2.6	22.4	19.7	30.3	100.0 (76)	32.3
600~699만원	0.0	1.9	7.7	9.6	15.4	15.4	28.8	21.2	100.0 (52)	30.8
700~799만원	0.0	3.4	6.9	6.9	0.0	27.6	27.6	27.6	100.0 (29)	32.9
800만원 이상	0.0	1.9	3.8	9.6	3.8	13.5	26.9	40.4	100.0 (52)	36.8
F/ χ^2 (df)				97.343(49)***						1.463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 $p < .001$

이상에서 살펴본 부모의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시기와 어린이집 입소에 적절한 시기가 모두 약 31개월을 넘고 있으므로 0~1세아의 양육방식으로는 일차적으로 가정내 양육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보다 이른 나이에 선호하는 가구도 있으므로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호에 부응하고자 영아보육시설의 접근성 보장을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택권 보장의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유일한 선택지인 가구에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즉각적으로 경력단절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부모 3은 현재 경력단절 중으로 홀벌이 가구이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시간제보육시설 보다는 자녀가 12개월 이후 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인 부모 9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 중인데 12개월 이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만족도가 높다고 언급하였다.

시간제보육시설이 접근처에 있다고 해도 어린이집에 보내는 시기가 늦추어지지지는 않았을 거 같을 거예요. 저는 단발성보다는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고 아이가 적응을 빨리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어린이집을 더 선호했었는데 그동안 대기가 길어서 못 보내고 있던 상태였어요 (부모 3)

저는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선택해 놓은 어린이집이어서, 큰 애를 가졌을 때부터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범한 가정어린이집인데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서 보낼 수 있으면 빨리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육아를 하면서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어린이집 가서 배우는 게 더 많고 얻어오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저는 이 어린이집 보낸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도 가는 걸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오래 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더 늦게 보내려고 했는데 둘째가 갑자기 들어서면서 어쩔 수 없이 일찍 보냈거든요. 첫째를 보냈는데 괜찮아서 둘째는 돌이 되기 전에 보냈어요, 10개월에. 일찍 보낸 것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고요. 제가 엄마지만 엄마인 제가 해주는 것보다 어린이집에서 받는 보살핌이 더 많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어요 (부모 9)

한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우려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기에 적합한 연령으로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 10과 부모 14는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보내는 시기는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제 기준에서는 20개월부터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단어도 하고 어느 정도 단단해졌다, 의사소통이 괜찮아지는 게 20개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하니까 13개월부터 보내게 됐고요. 어린이집은 기관이잖아요. 기관으로 해서 안정된 체계에서 아이를 돌보고 또래 아이들도 형성되고, 근데 만약 집에 오시는 분들을 이용하는 것은 되려 불안한 것 같아요, 저는. 감시하는 체계도 없고 관리하는 것도 없다 보니까 (부모 10)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때 보내고 싶어요. 아동학대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아이를 보내도 되긴 하는데 낮가리는 편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엄마 제가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부모 14)

나. 0~1세아의 비용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도

1) 0세아의 비용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도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으로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이 1순위와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률이 각각 49.6%와 61.5%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가정에서 혈연(조

부모 등) 또는 비혈연(아이돌보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은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서 0세아의 육아지원은 그 방향성 측면에서 가정내 양육을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V-2-3〉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49.6	61.5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18.4	45.8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16.4	34.2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11.5	39.3
시간제보육(일시돌봄)시설 이용시 비용지원	4.0	19.0
기타	0.2	0.2
계(수)	100.0(506)	(506)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현금지원에 대한 요구는 예상되는 바와 같이 홀벌이 가구에서 56.1%로 높게 나타나며, 현금지원 외에 맞벌이 가구에서는 가정내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다자녀 가구에서도 현금지원에 비해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 요구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서 아이돌보미를 선호하는 비율은 21.9%로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가구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표 V-2-4 참조).

〈표 V-2-4〉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1) 전반

단위: %(명)

구분	0세아 대상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49.6	18.4	16.4	11.5	4.0	0.2	100.0 (5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4.1	21.8	18.8	11.1	3.8	0.4	100.0 (261)
홀벌이 가구	56.1	15.2	13.9	11.8	3.0	0.0	100.0 (237)
모두 근로안함	37.5	0.0	12.5	12.5	37.5	0.0	100.0 (8)
$\chi^2(df)$	34.605(10)***						

구분	0세아 대상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출생순위							
첫째	46.6	19.4	16.5	13.6	3.6	0.4	100.0 (279)
둘째	54.4	16.9	15.4	9.2	4.1	0.0	100.0 (195)
셋째 이상	46.9	18.8	21.9	6.3	6.3	0.0	100.0 (32)
$\chi^2(df)$	6.613(10)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3.3	13.3	33.3	6.7	13.3	0.0	100.0 (15)
200~299만원	51.5	10.3	20.6	10.3	7.4	0.0	100.0 (68)
300~399만원	53.5	15.5	14.0	14.7	2.3	0.0	100.0 (129)
400~499만원	55.3	17.6	16.5	9.4	1.2	0.0	100.0 (85)
500~599만원	46.1	28.9	9.2	11.8	2.6	1.3	100.0 (76)
600~699만원	44.2	23.1	11.5	15.4	5.8	0.0	100.0 (52)
700~799만원	41.4	31.0	17.2	6.9	3.4	0.0	100.0 (29)
800만원 이상	48.1	11.5	26.9	7.7	5.8	0.0	100.0 (52)
$\chi^2(df)$	44.028(35)						

주: 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⑤ 시간제보육(일시돌봄)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 ⑥ 기타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01$

주양육자별로 0세아의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그 수요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현재 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 지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8.5%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는 가정내 양육 시의 현금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가운데,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 지원보다도 가정내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다. 아이돌보미를 이용 중인 가구에서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보다는 가정내에서 양육할 시의 현금지원을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린이집을 이용가구에 가정내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동시에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적 부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표 V-2-5〉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2) 주양육자별

단위: %(명), 명

구분	0세아 대상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49.6	18.4	16.4	11.5	4.0	0.2	100.0 (506)
부모(육아휴직 포함)	58.5	14.7	13.7	9.4	3.7	0.0	100.0 (299)
어린이집	36.8	22.4	20.8	15.2	4.0	0.8	100.0 (125)
아이돌보미	15.4	19.2	46.2	19.2	0.0	0.0	100.0 (26)
조부모(또는 친인척)	46.3	27.8	7.4	11.1	7.4	0.0	100.0 (54)
민간 육아도우미	50.0	50.0	0.0	0.0	0.0	0.0	100.0 (2)
기타	0.0	0.0	0.0	0.0	0.0	0.0	100.0 (0)
$\chi^2(df)$	52.098(20)***						

주: 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⑤ 시간제보육(일시돌봄)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 ⑥ 기타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01$

맞벌이 가구의 근로형태에 따른 양육방식에 따른 선호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전일제근로 가구(전일제+시간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선호하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불규칙하고 비전형적인 근로시간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표 V-2-6〉 0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명), 명

구분	0세아 대상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44.1	21.8	18.8	11.1	3.8	0.4	100.0 (261)
전일제근로+전일제근로	42.9	25.1	17.4	10.5	3.7	0.5	100.0 (219)
전일제근로+시간제근로	52.6	5.3	21.1	15.8	5.3	0.0	100.0 (38)
시간제근로+시간제근로	25.0	0.0	75.0	0.0	0.0	0.0	100.0 (4)
$\chi^2(df)$	16.667(10)						

주: 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⑤ 시간제보육(일시돌봄)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 ⑥ 기타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2) 1세아의 비용지원 방식에 대한 선호도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으로는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이 1순위와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응답률이 각각 45.3%와 56.9%(0세아: 49.6%와 61.5%)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 가정에서 혈연(조부모 등) 또는 비혈연(아이돌보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0세아에 비해 가정에서 양육 시에 현금 지원의 응답률은 소폭 감소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선호는 소폭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세아의 현금지원 요구는 홀벌이 가구에서 51.9%(0세아: 56.1%)로 0세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맞벌이 가구에서 가정내보육서비스의 지원 요구는 0세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V-2-1 참조).

〈표 V-2-7〉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1+2순위

구분	단위: %(명)	
	1순위	1+2순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45.3	56.9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21.9	48.6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14.8	42.1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14.4	34.2
시간제보육(일시돌봄)시설 이용시 비용지원	3.6	18.2
기타	0.0	0.0
계(수)	100.0(506)	(506)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표 V-2-8〉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1) 전반

구분	1세아 대상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5.3	21.9	14.4	14.8	3.6	100.0 (506)
자녀연령						
0~11개월	42.8	23.1	18.3	11.1	4.8	100.0 (208)
12~23개월	47.0	21.1	11.7	17.4	2.7	100.0 (298)
$\chi^2(df)$	9.228(4)					

구분	1세아 대상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39.8	26.1	16.5	14.6	3.1	100.0 (261)
홀벌이 가구	51.9	18.1	11.0	15.6	3.4	100.0 (237)
모두 근로안함	25.0	0.0	50.0	0.0	25.0	100.0 (8)
χ^2 (df)	31.626(8)***					
출생순위						
첫째	43.0	24.0	12.5	16.1	4.3	100.0 (279)
둘째	48.2	19.5	15.4	14.9	2.1	100.0 (195)
셋째 이상	46.9	18.8	25.0	3.1	6.3	100.0 (32)
χ^2 (df)	10.828(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3.3	6.7	46.7	0.0	13.3	100.0 (15)
200~299만원	41.2	23.5	17.6	14.7	2.9	100.0 (68)
300~399만원	45.0	21.7	14.0	16.3	3.1	100.0 (129)
400~499만원	50.6	21.2	12.9	12.9	2.4	100.0 (85)
500~599만원	40.8	25.0	14.5	15.8	3.9	100.0 (76)
600~699만원	51.9	25.0	3.8	17.3	1.9	100.0 (52)
700~799만원	37.9	27.6	6.9	17.2	10.3	100.0 (29)
800만원 이상	50.0	15.4	19.2	13.5	1.9	100.0 (52)
χ^2 (df)	35.994(28)					

주: 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⑤ 시간제보육(일시돌봄)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01$

주양육자별로 0세아의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그 수요는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는 조부모 등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현재 가정내보육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요구는 높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내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모들의 자유로운 선택지로서 포괄되어야 함을 말해준다(표 V-2-9 참조).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로는 전일제근로 가구에서는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가 높은 반면, 시간제근로 가구에서는 가정에서 양육할 시에 현금지원을 보다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표 V-2-10 참조).

〈표 V-2-9〉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2) 주양육자별

단위: %(명), 명

구분	1세아 대상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5.3	21.9	14.4	14.8	3.6	100.0 (506)
부모(육아휴직 포함)	53.8	17.1	12.7	12.7	3.7	100.0 (299)
어린이집	32.0	27.2	15.2	22.4	3.2	100.0 (125)
아이돌보미	11.5	38.5	23.1	15.4	11.5	100.0 (26)
조부모(또는 친인척)	44.4	29.6	18.5	7.4	0.0	100.0 (54)
민간 육아도우미	50.0	0.0	0.0	50.0	0.0	100.0 (2)
기타	0.0	0.0	0.0	0.0	0.0	0.0 (0)
$\chi^2(df)$	45.288(16)***					

주: 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⑤ 시간제보육(일시돌봄)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01$

〈표 V-2-10〉 1세아에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명), 명

구분	1세아 대상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39.8	26.1	16.5	14.6	3.1	100.0 (261)
전일제근로+전일제근로	37.9	26.0	18.3	14.6	3.2	100.0 (219)
전일제근로+시간제근로	52.6	21.1	7.9	15.8	2.6	100.0 (38)
시간제근로+시간제근로	25.0	75.0	0.0	0.0	0.0	100.0 (4)
$\chi^2(df)$	9.595(8)					

주: 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⑤ 시간제보육(일시돌봄)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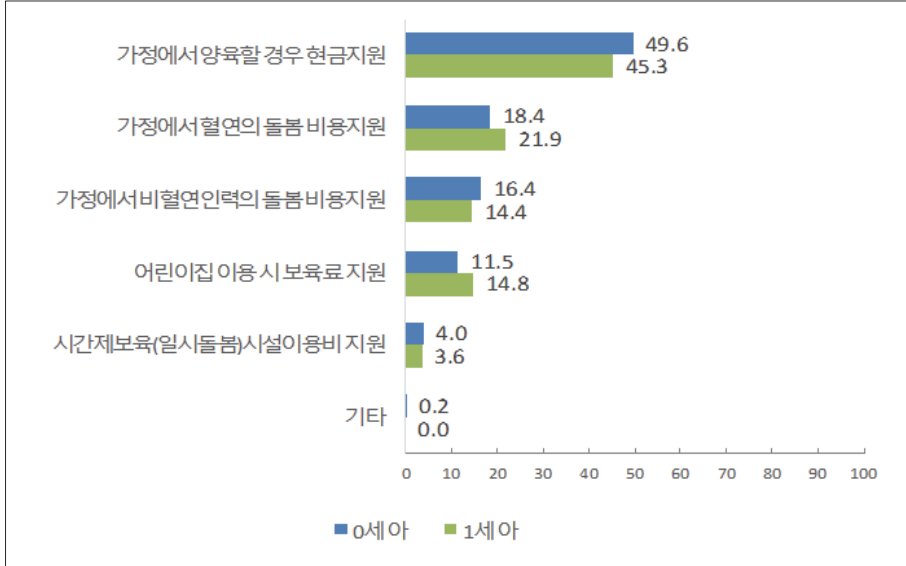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에 대한 요구는 0세아와 1세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시에 현금지원 수요가 가장 높은 가운데 0세아의 경우는 가정보육서비스, 1세아의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0~1세아 대한 육아지원은 현금지원을 위주로 하되, 0세아의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 보장과 1세아의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접근성 보장은 이들 가구의 선택권 강화의 핵심 전체조건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V-2-1]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1순위): 0세아/1세아 비교

단위 : %



주: 각 항목별 응답 비율은 1순위 응답 기준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다. 맞벌이 가구에 적합한 0~1세아의 양육방식

1) 맞벌이 가구 0세아의 양육방식 선호도

부모가 일할 경우 0세아를 누가 돌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1순위와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이 각각 46.0%와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가정에서 혈연이 돌봄’ 23.1%,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이 돌봄 15.0%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V-2-11 참조).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조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활용하는 것이 선호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16은 자녀가 의사소통 능력이 생긴 이후에 어린이집을 보낼 의향이며, 이전까지는 가정내 양육을 선호하므로 육아휴직을 2년까지 연장하여 활용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육아휴직의 연장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표명하고 있다.

〈표 V-2-11〉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 1순위/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46.0	54.3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23.1	66.2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15.0	27.7
어린이집 이용	11.3	32.2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4.5	19.6
기타	0.0	0.0
계(수)	100.0(506)	(506)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그런데 주변에 공기업에 다니거나 롯데는 육아휴직이 잘 되어 있어서 2년씩 쉬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 때쯤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 조부모 도움을 받지 못하는 맞벌이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남편도 육아휴직 1, 2년 사용하면 좋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 그런 건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부모 16)

〈표 V-2-12〉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1순위): 1) 전반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0	23.1	15.0	11.3	4.5	100.0 (5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2.9	23.8	14.9	13.8	4.6	100.0 (261)
홀벌이 가구	50.2	22.4	14.8	8.9	3.8	100.0 (237)
모두 근로안함	25.0	25.0	25.0	0.0	25.0	100.0 (8)
$\chi^2(df)$	14.132(8)					
출생순위						
첫째	45.5	24.4	15.8	9.0	5.4	100.0 (279)
둘째	47.2	22.6	13.8	13.8	2.6	100.0 (195)
셋째 이상	43.8	15.6	15.6	15.6	9.4	100.0 (32)
$\chi^2(df)$	8.151(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26.7	20.0	26.7	20.0	6.7	100.0 (15)
200~299만원	50.0	20.6	14.7	11.8	2.9	100.0 (68)
300~399만원	42.6	24.0	20.2	9.3	3.9	100.0 (129)
400~499만원	45.9	22.4	10.6	16.5	4.7	100.0 (85)
500~599만원	44.7	27.6	13.2	10.5	3.9	100.0 (76)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600~699만원	50.0	23.1	17.3	7.7	1.9	100.0 (52)
700~799만원	51.7	27.6	0.0	17.2	3.4	100.0 (29)
800만원 이상	50.0	17.3	15.4	5.8	11.5	100.0 (52)
$\chi^2(df)$	27.456(28)					

주: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2-13〉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1순위): 2) 주양육자별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0	23.1	15.0	11.3	4.5	100.0 (506)
부모(육아휴직 포함)	48.8	23.1	15.7	7.7	4.7	100.0 (299)
어린이집	40.0	22.4	13.6	21.6	2.4	100.0 (125)
아이돌보미	15.4	30.8	26.9	11.5	15.4	100.0 (26)
조부모(또는 친인척)	57.4	22.2	9.3	7.4	3.7	100.0 (54)
민간 육아도우미	100.0	0.0	0.0	0.0	0.0	100.0 (2)
$\chi^2(df)$	39.315(16)**					

주: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1$

주양육자별로는 단지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 부모의 직접양육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4%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부모의 자녀돌봄을 선택한 가구가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표 V-2-13 참조).

가족형태별로는 사례수가 적어서 일반화는 어려우나, 한부모가족에서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로특성 즉, 맞벌이 가구의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표 V-2-14, 표 V-2-15 참조).

〈표 V-2-14〉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1순위): 3) 가족형태별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0	23.1	15.0	11.3	4.5	100.0 (506)
부부+자녀	47.2	22.9	14.3	11.4	4.2	100.0 (475)
한부모+자녀	0.0	33.3	33.3	8.3	25.0	100.0 (12)
3세대 이상 가족	47.4	21.1	21.1	10.5	0.0	100.0 (19)
기타	0.0	0.0	0.0	0.0	0.0	0.0 (0)
$\chi^2(df)$	21.671(8)**					

주: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1$

〈표 V-2-15〉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1순위): 4)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0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2.9	23.8	14.9	13.8	4.6	100.0 (261)
전일제근로+전일제근로	42.5	24.7	14.6	13.7	4.6	100.0 (219)
전일제근로+시간제근로	50.0	13.2	18.4	13.2	5.3	100.0 (38)
시간제근로+시간제근로	0.0	75.0	0.0	25.0	0.0	100.0 (4)
$\chi^2(df)$	9.984(8)					

주: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2) 맞벌이 가구 1세아의 양육방식 선호도

부모가 일할 경우 1세아를 누가 돌보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부모가 직접 돌봄이 1순위와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이 각각 44.7%(0세아 응답률: 46.0%)와 52.6%(0세아 응답률: 5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순위 기준으로 '가정에서 혈연이 돌봄' 25.5%(0세아 응답률: 23.1%),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이 돌봄 13.2%(0세아 응답률: 15.0%) 순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1.3%로 0세아와 동일한 응답률을 보이며,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도 유사한 수준여서, 1세아에서 급증하는 어린이집 이용률이 곧 부모의 선호하는 양육방식에 따른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표 V-2-16〉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 1순위/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1+2순위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44.7	52.6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25.5	60.5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13.2	29.6
어린이집 이용	11.3	35.4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5.3	21.9
기타	0.0	0.0
계(수)	100.0(506)	(506)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2-17〉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1) 전반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4.7	25.5	13.2	11.3	5.3	100.0 (5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1.0	28.4	14.9	12.6	3.1	100.0 (261)
홀벌이 가구	48.1	22.8	11.8	9.7	7.6	100.0 (237)
모두 근로안함	62.5	12.5	0.0	12.5	12.5	100.0 (8)
$\chi^2(df)$	12.548(8)					
출생순위						
첫째	43.4	28.0	11.1	11.8	5.7	100.0 (279)
둘째	46.2	23.6	14.4	11.8	4.1	100.0 (195)
셋째 이상	46.9	15.6	25.0	3.1	9.4	100.0 (32)
$\chi^2(df)$	10.509(8)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0.0	20.0	20.0	20.0	0.0	100.0 (15)
200~299만원	52.9	25.0	10.3	8.8	2.9	100.0 (68)
300~399만원	42.6	22.5	14.0	13.2	7.8	100.0 (129)
400~499만원	40.0	30.6	11.8	14.1	3.5	100.0 (85)
500~599만원	46.1	19.7	14.5	13.2	6.6	100.0 (76)
600~699만원	50.0	26.9	11.5	9.6	1.9	100.0 (52)
700~799만원	37.9	34.5	13.8	6.9	6.9	100.0 (29)
800만원 이상	44.2	28.8	15.4	3.8	7.7	100.0 (52)
$\chi^2(df)$	18.837(28)					

주: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2-18〉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2) 주양육자별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0	23.1	15.0	11.3	4.5	100.0 (506)
부모(육아휴직 포함)	49.2	23.4	12.0	9.4	6.0	100.0 (299)
어린이집	36.0	26.4	15.2	18.4	4.0	100.0 (125)
아이돌보미	15.4	38.5	23.1	11.5	11.5	100.0 (26)
조부모(또는 친인척)	53.7	27.8	11.1	5.6	1.9	100.0 (54)
민간 육아도우미	50.0	50.0	0.0	0.0	0.0	100.0 (2)
기타	0.0	0.0	0.0	0.0	0.0	0.0 (0)
$\chi^2(df)$	27.618(16)*					

주: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사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주양육자별로는 조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부모의 직접양육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로 0세아(57.4%)와 마찬가지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 어린이집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4%에 그쳤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심층면담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동시에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5, 부모 9, 부모 16은 모두 맞벌이 가구로서 어린이집 이용으로 경력단절이 예방됨을 확인시켜준다.

20개월은 풀타임으로 제가 회사를 갔을 때 9시 이전부터 5-6시까지 있을 수 있는 시기가 그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어린이집 보내는 게 너무 좋거든요. 어린이집에 낮잠 자고 2시쯤 오는 데 짧게 보내는 시기는 지금도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 5)

저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질적으로 짧고 임팩트 있게 보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도 맞지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아까 생각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탄력근무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엄마, 아빠 교차로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 9)

어린이집 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어린이집도 영아를 보내기 좋은데 저희 아파트는 1층이 2층인 구조인데 이런 아파트에는 가정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수가 너무 적어서 늘어났으면 좋겠고 (부모 16)

〈표 V-2-19〉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3) 가족형태별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0	23.1	15.0	11.3	4.5	100.0 (506)
부부+자녀	45.3	24.6	13.5	11.2	5.5	100.0 (475)
한부모+자녀	25.0	41.7	8.3	16.7	8.3	100.0 (12)
3세대 이상 가족	42.1	36.8	10.5	10.5	0.0	100.0 (19)
기타	0.0	0.0	0.0	0.0	0.0	0.0 (0)
$\chi^2(df)$	5.335(8)					

주: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가족형태별로는 사례수가 적어서 일반화는 어려우나, 한부모가족은 혈연이 돌보고 어린이집 이용이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특성별로 전일제 근로가구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돌봄 공백에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표 V-2-20〉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4) 직업별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0	23.1	15.0	11.3	4.5	100.0 (506)
사무직	44.6	27.2	14.6	9.8	3.8	100.0 (316)
생산직	50.0	17.9	10.7	17.9	3.6	100.0 (28)
전문직	44.3	23.0	14.8	13.1	4.9	100.0 (61)
서비스 및 판매직	27.3	27.3	18.2	18.2	9.1	100.0 (22)
전업주부	50.7	19.4	7.5	10.4	11.9	100.0 (67)
기타	33.3	41.7	0.0	16.7	8.3	100.0 (12)
$\chi^2(df)$	21.293(20)					

주: 1)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2) 기타 직업에는 학생 포함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2-21〉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1순위): 5)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명)

구분	맞벌이 가정에 적합한 1세아 양육방식: 1순위					계(수)
	①	②	③	④	⑤	
전체	41.0	28.4	14.9	12.6	3.1	100.0 (261)
전일제근로+전일제근로	40.6	28.8	15.1	12.8	2.7	100.0 (219)
전일제근로+시간제근로	47.4	28.9	5.3	13.2	5.3	100.0 (38)
시간제근로+시간제근로	0.0	0.0	100.0	0.0	0.0	100.0 (4)
$\chi^2(df)$	26.2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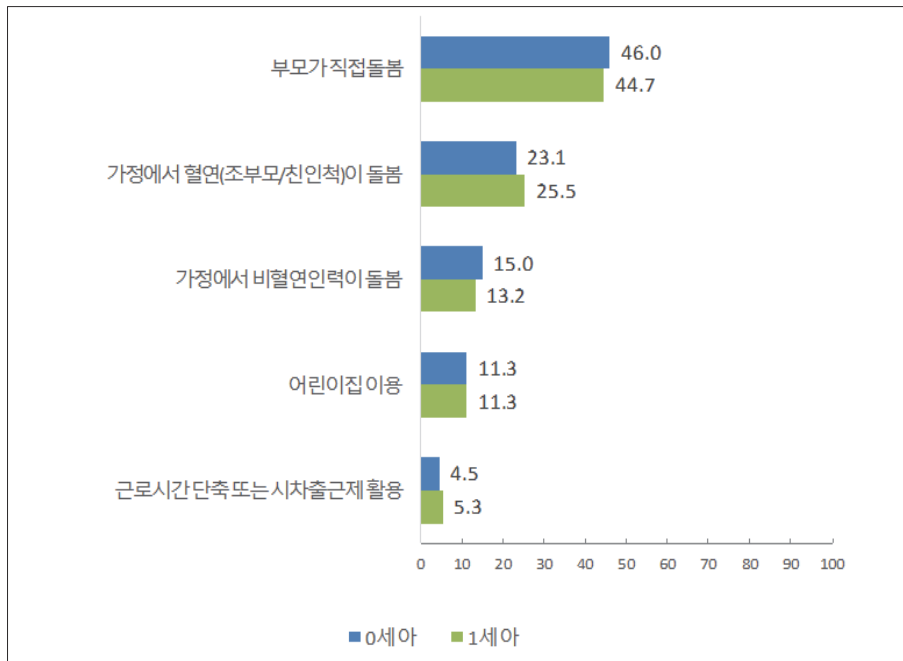
주: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1$

[그림 V-2-2] 맞벌이 가구에 적합한 양육방식(1순위): 0세아/1세아 비교

단위: %



주: 각 항목의 응답 비율은 1순위 응답 기준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라.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1)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0세아(0~11개월)의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제도가 평균 3.81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3.80점, 가정양육수당 3.75점,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72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맞벌이 가구는 보육서비스 중에서 특히 연장보육과 시간연장형보육 지원에서 각각 3.74점과 3.75점으로 높은 수요를 보인 반면에 홀벌이 가구에서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한 수요가 3.82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2-22〉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1)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높음		
0~2세 보육료 지원(기본보육)	1.8	6.7	34.4	45.1	12.1	100.0 (506)	3.59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2.0	4.5	30.8	44.9	17.8	100.0 (506)	3.72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2.4	7.9	33.6	37.4	18.8	100.0 (506)	3.62
시간제보육	1.6	6.7	30.6	45.3	15.8	100.0 (506)	3.67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1.6	9.5	31.8	41.9	15.2	100.0 (506)	3.60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1.8	7.5	31.6	46.2	12.8	100.0 (506)	3.61
육아종합지원센터	2.8	4.9	33.2	42.9	16.2	100.0 (506)	3.65
공동육아나눔터	2.0	8.1	34.0	43.3	12.6	100.0 (506)	3.57
육아휴직	2.4	4.5	26.9	41.9	24.3	100.0 (506)	3.8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6	6.5	28.3	43.9	19.8	100.0 (506)	3.74
시차출근제	1.4	4.7	29.2	43.5	21.1	100.0 (506)	3.78
배우자 출산휴가	1.4	6.5	25.9	43.1	23.1	100.0 (506)	3.80
아동수당	2.4	7.5	29.6	40.1	20.4	100.0 (506)	3.69
가정양육수당	2.0	5.9	28.7	41.7	21.7	100.0 (506)	3.75

주: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2-23〉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2) 맞벌이 가구 여부별
단위: 점(명)

구분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5점 평균					(수)
	전체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모두 근로안함	F	
0~2세 보육료 지원(기본보육)	3.59	3.62	3.57	3.00	4.941*	(506)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72	3.74	3.70	3.38	0.681	(506)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3.62	3.75	3.49	3.50	4.651**	(506)
시간제보육	3.67	3.68	3.65	4.00	0.641	(506)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3.60	3.61	3.59	3.63	0.030	(50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3.61	3.63	3.60	3.13	1.354	(506)
육아종합지원센터	3.65	3.72	3.62	2.38	9.097***	(506)
공동육아나눔터	3.57	3.61	3.52	3.25	1.160	(506)
육아휴직	3.81	3.80	3.83	3.75	0.067	(50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74	3.75	3.72	3.88	0.144	(506)
시차출근제	3.78	3.78	3.77	4.13	0.623	(506)
배우자 출산휴가	3.80	3.81	3.78	4.00	0.267	(506)
아동수당	3.69	3.69	3.68	3.88	0.161	(506)
가정양육수당	3.75	3.69	3.82	4.00	1.565	(506)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표 V-2-24〉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점(명)

구분	0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5점 평균					(수)
	전체	전일제+전일제	전일제+시간제	시간제+시간제	F	
0~2세 보육료 지원(기본보육)	3.62	3.63	3.66	3.00	1.196	(261)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74	3.73	3.82	3.75	0.181	(261)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3.75	3.77	3.68	3.25	0.726	(261)
시간제보육	3.68	3.67	3.74	3.50	0.198	(26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3.61	3.59	3.66	3.75	0.127	(26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3.63	3.64	3.58	3.75	0.145	(261)
육아종합지원센터	3.72	3.71	3.76	3.50	0.282	(261)
공동육아나눔터	3.61	3.61	3.71	2.75	2.335	(261)
육아휴직	3.80	3.79	3.89	3.25	0.858	(2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75	3.75	3.82	3.00	1.504	(261)
시차출근제	3.78	3.79	3.79	3.50	0.090	(261)
배우자 출산휴가	3.81	3.81	3.89	3.00	1.619	(261)
아동수당	3.69	3.70	3.71	2.75	1.894	(261)
가정양육수당	3.69	3.71	3.58	3.25	0.579	(261)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한편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0세아의 경우에도 양육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인지도와 서비스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는 홀벌이 가구는 물론 부모 5와 같이 육아휴직 중인 맞벌이 가구에도 서비스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우는 직장 여건과 경력 등 일의 중요도 인식에 따라 그 선호도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 4와 같이 자녀를 직접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단축근로가 선호되며, 부모 5와 같이 경력관리가 보다 중요시되는 경우는 단축근로로 인한 경력상 불이익이 우려되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는 조금 더 육아에 더 집중을 하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일을 많이 못해도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개인 가치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근로시간 단축은 환영하는 입장이예요. 그렇다고 육아를 완전 전업으로 들어가면 우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내 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이렇게 병행할 수 있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 4)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배우자 출산휴가와 공동육아나눔터 여요. 혼자 육아를 하는 게 힘들었어요. 누군가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뭔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당근마켓에 공동육아나눔을 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모 5)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해서) 짧게 일한다는 거는 회사를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커리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거면 맞벌이를 안 하죠. 커리어를 포기하면서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는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부모 5)

2) 1세아 대상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1세아(12~23개월)의 양육을 위한 육아지원정책 및 제도의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육아휴직제도가 평균 3.84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시차출근제가 공히 3.81점,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79점, 가정양육수당 3.7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2-25〉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 인식: 1)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높음		
0~2세 보육료 지원(기본보육)	1.2	4.2	32.4	50.0	12.3	100.0 (506)	3.68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1.0	5.9	27.9	43.3	21.9	100.0 (506)	3.79

구분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높음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1.2	9.1	29.2	40.1	20.4	100.0 (506)	3.69
시간제보육	1.8	7.1	30.0	42.7	18.4	100.0 (506)	3.69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2.4	7.5	30.2	41.3	18.6	100.0 (506)	3.6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2.0	6.9	29.8	45.1	16.2	100.0 (506)	3.67
육아종합지원센터	2.6	6.9	31.0	42.1	17.4	100.0 (506)	3.65
공동육아나눔터	1.8	7.5	31.4	43.3	16.0	100.0 (506)	3.64
육아휴직	1.2	6.3	26.3	39.9	26.3	100.0 (506)	3.8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8	5.5	27.5	44.5	21.7	100.0 (506)	3.81
시차출근제	0.6	6.7	27.7	40.9	24.1	100.0 (506)	3.81
아동수당	1.6	6.7	29.6	38.5	23.5	100.0 (506)	3.76
가정양육수당	2.2	6.3	27.1	40.3	24.1	100.0 (506)	3.78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앞서 다룬 0세아와 마찬가지로 1세아 맞벌이 가구는 보육서비스, 특히 연장보육과 시간제보육 지원에서 각각 3.84점과 3.76점으로 높은 수요를 보인 반면, 홀벌이 가구에서는 가정양육수당의 도움 정도가 3.85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2-26〉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 인식: 2) 맞벌이 가구 여부별

단위: 점(명)

구분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5점 평균					(수)
	전체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모두 근로안함	F	
0~2세 보육료 지원(기본보육)	3.68	3.67	3.68	3.75	0.041	(506)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79	3.84	3.73	4.00	1.097	(506)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3.69	3.74	3.64	4.00	1.126	(506)
시간제보육	3.69	3.76	3.62	3.25	2.288	(506)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3.66	3.68	3.63	3.88	0.374	(50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3.67	3.71	3.62	3.63	0.613	(506)
육아종합지원센터	3.65	3.71	3.59	3.25	1.808	(506)
공동육아나눔터	3.64	3.67	3.61	3.63	0.265	(506)
육아휴직	3.84	3.87	3.80	3.88	0.423	(50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1	3.84	3.76	4.13	1.015	(506)
시차출근제	3.81	3.86	3.76	3.88	0.770	(506)
아동수당	3.76	3.77	3.75	3.50	0.328	(506)
가정양육수당	3.78	3.73	3.85	3.25	2.307	(506)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2-27〉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점(명)

구분	1세아 대상 양육지원제도의 도움 정도 인식: 5점 평균					(수)
	전체	전일제+전일제	전일제+시간제	시간제+시간제	F	
0~2세 보육료 지원(기본보육)	3.67	3.65	3.84	3.25	1.631	(261)
0~2세 보육료 지원(연장보육)	3.84	3.82	3.95	3.75	0.359	(261)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3.74	3.72	3.84	3.50	0.408	(261)
시간제보육	3.76	3.74	3.89	3.50	0.668	(261)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3.68	3.69	3.66	3.25	0.478	(261)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3.71	3.70	3.76	3.75	0.051	(261)
육아종합지원센터	3.71	3.68	3.95	3.00	2.598	(261)
공동육아나눔터	3.67	3.66	3.74	3.75	0.153	(261)
육아휴직	3.87	3.88	3.87	3.50	0.323	(26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4	3.81	4.03	3.75	1.037	(261)
시차출근제	3.86	3.85	3.95	3.50	0.504	(261)
아동수당	3.77	3.76	3.89	3.25	0.914	(261)
가정양육수당	3.73	3.73	3.74	3.75	0.002	(261)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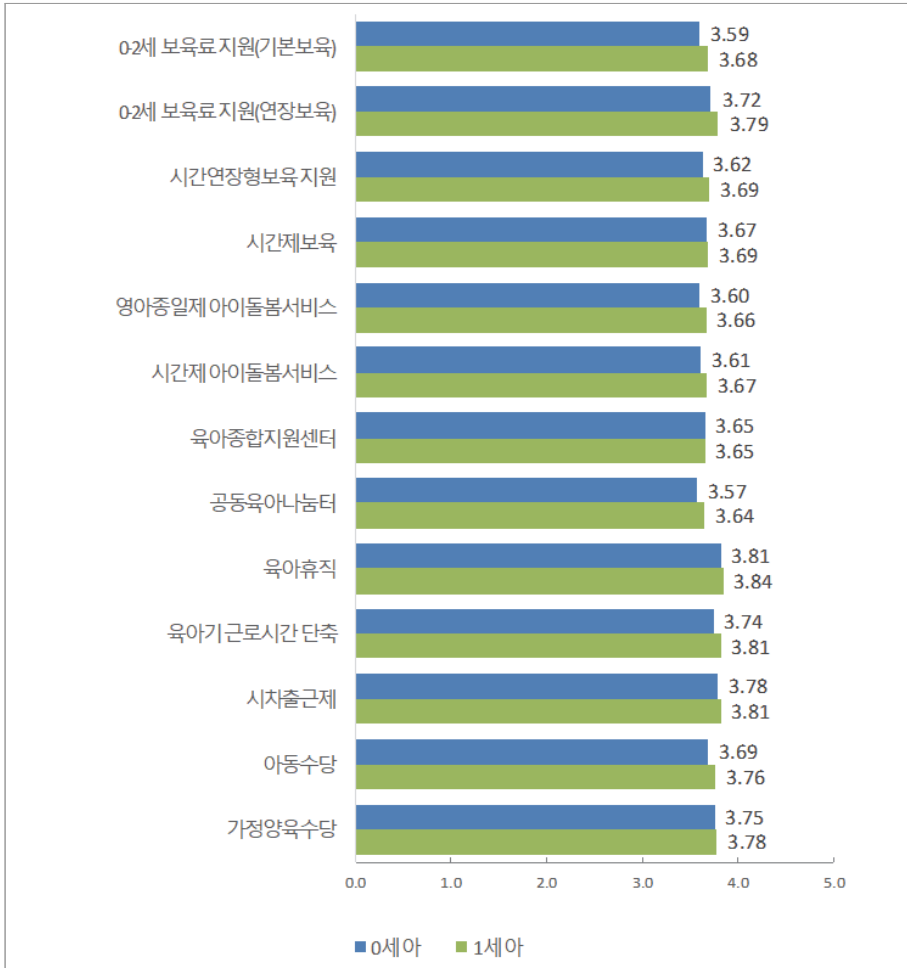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는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육아휴직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주목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특히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의 접근성이 강조하고 있다. 부모 16과 같이 조부모 등 혈연인력의 돌봄이 어렵고 비용 문제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도 어려운 경우는 어린이집이 유일한 선택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근처에 모든 어린이집을 뒤져봤는데 19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기를 걸었음에도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어서 모든 어린이집에 다 전화를 했는데 걸어서 15~20분 정도 걸리는 가정 어린이집에 자리가 있어서 다행히 좋은 곳이어서 만족하고 있는데, 마포에 아이들이 많고 어린이집이 많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수가 너무 적고 시터를 쓰자니 전일제 시터 너무 비싸고 월급의 절반 이상이 나가고 남편이 또 수원 출퇴근이어서 거의 밤늦게 들어오는데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팠는데 그런 상황에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어려웠어요. 조부모가 멀리 있고 제가 시터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부모 16)

[그림 V-2-3] 양육지원제도 도움 정도 인식: 0세아/1세아 비교

단위: 점



주: 평균값은 각 제도별 도움 정도 인식을 5점('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3.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과 지원방식에 관한 요구

영아수당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도움 정도와 지원방식 등 도입방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현금지원이 중요한 자녀연령,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선택권 보장 가능성 및 힘든 경우 그 사유,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와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영아수당액과 지원방식 등을 주요 변인별로 분석하였다.

가. 아동연령별 현금지원의 필요도 인식

정부에서 현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세아와 0~1세아가 각각 평균 3.97점(5점 만점)과 3.95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V-3-1 참조).

맞벌이 여부별로 맞벌이 가구에서는 0~1세아(3.99점)가 더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홀벌이 가구에서는 2세아(3.98점)가 더 높은 수요를 보였다. 근로형태별로는 전일제+시간제에서 영유아기에 현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나타났다.(표 V-3-2, 표 V-3-3 참조).

〈표 V-3-1〉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1)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현금지원의 시기별 필요도 인식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	높음		
임신 및 출산 시기	2.0	4.5	35.6	40.5	17.4	100.0 (506)	3.67
영아기1: 0~1세아(0~23개월)	0.6	5.1	22.5	42.1	29.6	100.0 (506)	3.95
영아기2: 2세(24~35개월)	0.4	3.8	24.1	41.9	29.8	100.0 (506)	3.97
유아기(만 3~5세)	0.4	4.3	29.4	39.5	26.3	100.0 (506)	3.87
학령기(초등학생~고등학생)	1.8	7.5	33.6	35.8	21.3	100.0 (506)	3.67

주: 5점 평균은 '중요도 낮음' 1점 ~ '중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0~1세아 대한 현금지원 요구는 심층면담에서 자녀양육비 이외에도 특히 0세아의 경우 산후조리 비용을 비용부담에 포함하여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 4와 부모 14는 모두 산후조리 관련 추가비용이 과다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0세아의 경우는 해당 비용에 대한 보전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이 키우는 데 구비해야 하는 물건도 많고 비싸고, 기저귀, 분유 이런 것들이 정말 비싸서... 병원이나 출산 후에 엄마들이 다닐 수 있는 가슴 마사지라던가 약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그 시기에 지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주변의 도움도 받고 아이 패턴도 적응이 되서 괜찮을 것 같아요 (부모 4)

저는 출산 전에는 모유 수유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아이를 키우다보니까 때때로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분유가 예상외로 지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유식하고 이러면서 들어가는 돈 들이 있기는 한데 (부모 14)

〈표 V-3-2〉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2) 맞벌이 가구 여부별

단위: 점(명)

구분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5점 평균					(수)
	전체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모두 근로안함	F	
임신 및 출산 시기	3.67	3.67	3.65	4.00	0.595	(506)
영아기1: 0~1세(0~23개월)	3.95	3.99	3.91	3.88	0.502	(506)
영아기2: 2세(24~35개월)	3.97	3.95	3.98	4.50	1.666	(506)
유아기(만 3~5세)	3.87	3.87	3.85	4.38	1.409	(506)
학령기(초등학생~고등학생)	3.67	3.72	3.64	3.25	0.706	(506)

주: 1) 5점 평균은 '중요도 낮음' 1점 ~ '중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3-3〉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점(명)

구분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5점 평균					(수)
	전체	전일제+전일제	전일제+시간제	시간제+시간제	F	
임신 및 출산 시기	3.67	3.67	3.74	3.00	1.337	(261)
영아기1: 0~1세(0~23개월)	3.99	3.96	4.16	3.75	0.960	(261)
영아기2: 2세(24~35개월)	3.95	3.93	4.18	2.75	5.725**	(261)
유아기(만 3~5세)	3.87	3.84	4.05	3.75	1.054	(261)
학령기(초등학생~고등학생)	3.72	3.70	3.76	4.00	0.282	(261)

주: 1) 5점 평균은 '중요도 낮음' 1점 ~ '중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p < .01

따라서 정부가 2022년 출생아부터 새롭게 200만원 바우처(첫만남 꾸러미)를 지급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기존의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조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20. 12. 15: 9)는 자녀출산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의 우려가 높으므로 육아휴직 기간인 0세아에 대한 현금지원 요구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 5는 육아휴직 기간에 감소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모 6은 경력단절로 인해 자녀양육비의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직장에 계속 다닐 예정이라서 워킹 맘의 입장으로서 말씀 드리자면 육아휴직 중인 지금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일을 해서 급여가 원상태로 복귀되면 수당이 들어왔는지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0세가 가장 필요한 물품이 많다는 건 굉장히 동의를 하고 (부모 5)

저는 돈을 벌다가 지금은 소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접종을 했는데 1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2번을 맞춰야 되는데. 이래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아무리 유료라고 해도 안 맞출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자니 결코 작은 돈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의료비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카시트,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은 없으면 없는대로 살게 되지만 엄마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용품이 많잖아요. 그런걸 빌리자니 첫애니까 물려받기 싫고 육아용품은 너무 비싸고 하다보니까 0-1세에 많이 부담이 되고 돈 쓸 일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된다면 엄마도 조금 산후조리하는데 도움이 되고 아이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부모 6)

출생순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첫째아는 0~1세아에서 높은 수요를 보이다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셋째아 이상에서는 2세아에 대한 현금지원 요구가 0~1세아 보다 높게 나타난다(표 V-3-4 참조).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199만원 이하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2세아와 유아기의 현금지원 수요가 높은 반면, 4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0~1세아와 2세아 다음으로 학령기 자녀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는 데, 이는 교육비 지출에 따른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된다(표 V-3-5 참조).

〈표 V-3-4〉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4) 출생순위별

단위: 점(명)

구분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5점 평균					(수)
	전체	첫째	둘째	셋째 이상	F	
임신 및 출산 시기	3.67	3.70	3.65	3.47	1.062	(506)
영아기1: 0~1세(0~23개월)	3.95	4.03	3.89	3.66	2.849	(506)
영아기2: 2세(24~35개월)	3.97	3.99	3.94	4.00	0.160	(506)
유아기(만 3~5세)	3.87	3.91	3.81	3.91	0.742	(506)
학령기(초등학생~고등학생)	3.67	3.73	3.59	3.63	1.296	(506)

주: 1) 5점 평균은 '중요도 낮음' 1점 ~ '중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3-5〉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5) 월평균 가구소득별

단위: 점(명)

구분	현금지원의 시기별 중요도 인식: 5점 평균										(수)
	전체	199 만원 이하	200~ 299 만원	300~ 399 만원	400~ 499 만원	500~ 599 만원	600~ 699 만원	700~ 799 만원	800 만원 이상	F	
임신 및 출산 시기	3.67	3.93	3.74	3.55	3.66	3.64	3.71	3.72	3.77	0.714	(506)
영아기: 0~1세(0~23개월)	3.95	3.80	4.01	3.84	4.05	3.91	3.90	4.10	4.06	0.906	(506)
영아기: 2세(24~35개월)	3.97	4.00	3.94	3.93	4.04	3.95	4.04	4.17	3.85	0.568	(506)
유아기(만 3~5세)	3.87	4.07	3.82	3.88	3.82	3.92	3.83	4.03	3.81	0.414	(506)
학령기(초등학생~고등학생)	3.67	3.53	3.56	3.60	3.67	3.79	3.58	3.90	3.87	1.112	(506)

주: 1) 5점 평균은 '중요도 낮음' 1점 ~ '중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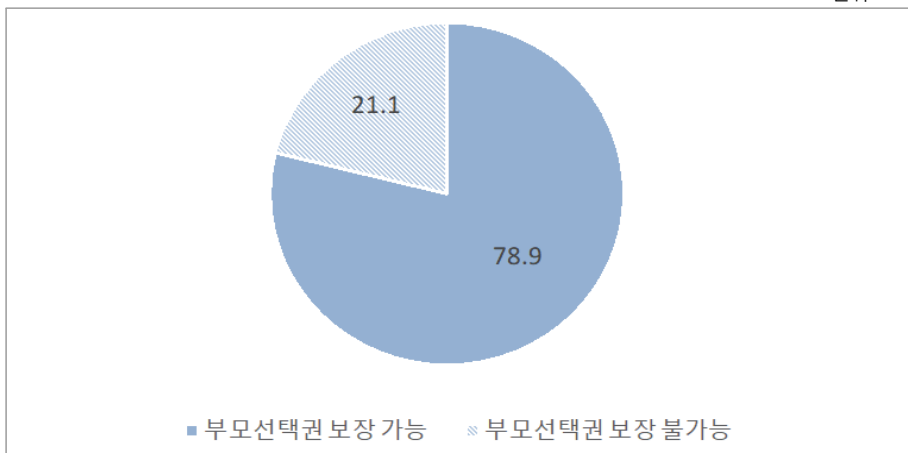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나.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방식의 선택권 보장 가능성

영아수당을 새롭게 도입할 경우 영아자녀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률이 78.9%로 조사되었다.

[그림 V-3-1]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방식 선택권 보장 여부

단위 : %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주요 변인별로 자녀연령, 맞벌이 가구 여부,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차이를 보인다. 즉,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는 부모 선택권 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비율이 40%에 달하는 반면, 7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해당 비율이 평균에 비해 높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80% 선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V-3-6〉 영아수당 지급 시 희망하는 육아 가능성 여부: 1) 전반

단위: %(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방식 선택권 보장 여부		계(수)
	가능	불가능	
전체	78.9	21.1	100.0 (506)
자녀연령			
0~11개월	78.4	21.6	100.0 (208)
12~23개월	79.2	20.8	100.0 (298)
$\chi^2(df)$	0.051(1)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80.1	19.9	100.0 (261)
홀벌이 가구	77.6	22.4	100.0 (237)
모두 근로안함	75.0	25.0	100.0 (8)
$\chi^2(df)$	0.516(2)		
출생순위			
첫째	78.9	21.1	100.0 (279)
둘째	80.0	20.0	100.0 (195)
셋째 이상	71.9	28.1	100.0 (32)
$\chi^2(df)$	1.088(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60.0	40.0	100.0 (15)
200~299만원	76.5	23.5	100.0 (68)
300~399만원	81.4	18.6	100.0 (129)
400~499만원	87.1	12.9	100.0 (85)
500~599만원	75.0	25.0	100.0 (76)
600~699만원	65.4	34.6	100.0 (52)
700~799만원	82.8	17.2	100.0 (29)
800만원 이상	84.6	15.4	100.0 (52)
$\chi^2(df)$	14.996*(7)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 $p < .01$, *** $p < .001$

주양육자별로는 영아수당 도입으로 희망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부모가 양육하는 가구에서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 74.4%로 평균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표 V-3-7〉 영아수당 지급 시 희망하는 육아 가능성 여부: 2) 주양육자별

단위: %(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방식 선택권 보장 여부		계(수)
	가능	불가능	
전체	78.9	21.1	100.0 (506)
현재 주양육자			
부모(육아휴직 포함)	82.3	17.7	100.0 (299)
어린이집	74.4	25.6	100.0 (125)
아이돌보미	76.9	23.1	100.0 (26)
조부모	70.4	29.6	100.0 (54)
민간 육아도우미	100.0	0.0	100.0 (2)
기타	0.0	0.0	0.0 (0)
χ^2 (df)	6.510(4)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영아수당을 도입할 시에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는 가구 중에서 ‘부모가 직접양육(육아휴직 포함)’ 하기를 희망하는 가구의 해당 응답률은 4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3-8〉 영아수당 지급 시 희망하는 육아 가능성 여부: 3) 희망하는 양육방식별

단위: %(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양육방식 선택권 보장 여부		계(수)
	가능	불가	
전체	70.1	29.9	100.0 (107)
희망하는 양육방식			
부모(육아휴직 포함)	60.0	40.0	100.0 (45)
어린이집	87.5	12.5	100.0 (16)
아이돌보미	77.4	22.6	100.0 (31)
조부모	37.5	62.5	100.0 (8)
민간 육아도우미	100.0	0.0	100.0 (6)
기타	100.0	0.0	100.0 (1)
χ^2 (df)	12.334(5)*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한편 영아수당을 지급하여도 0~1세아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힘든 이유로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나 휴직급여가 낮아서 활용하기 어려움’ 28.0%, ‘어린이

집 이용을 희망하나 믿을만한 어린이집이 집 근처에 없어서' 19.6%,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이용하기 쉽지 않아서' 18.7%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3-9〉 영아수당 지급 시에도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힘든 이유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7.5	11.2	28.0	19.6	18.7	14.0	0.9	100.0 (107)
자녀연령								
0~11개월	6.7	17.8	26.7	13.3	22.2	13.3	0.0	100.0 (45)
12~23개월	8.1	6.5	29.0	24.2	16.1	14.5	1.6	100.0 (62)
$\chi^2(df)$	5.939(6)							
자녀수								
1명	6.8	16.9	25.4	20.3	18.6	10.2	1.7	100.0 (59)
2명	7.7	5.1	30.8	17.9	17.9	20.5	0.0	100.0 (39)
3명 이상	11.1	0.0	33.3	22.2	22.2	11.1	0.0	100.0 (9)
$\chi^2(df)$	7.403(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11.5	19.2	25.0	19.2	17.3	7.7	0.0	100.0 (52)
홀벌이 가구	3.8	3.8	32.1	18.9	18.9	20.8	1.9	100.0 (53)
모두 근로안함	0.0	0.0	0.0	50.0	50.0	0.0	0.0	100.0 (2)
$\chi^2(df)$	15.692(12)							
출생순위								
첫째	6.8	16.9	25.4	20.3	18.6	10.2	1.7	100.0 (59)
둘째	7.7	5.1	30.8	17.9	17.9	20.5	0.0	100.0 (39)
셋째 이상	11.1	0.0	33.3	22.2	22.2	11.1	0.0	100.0 (9)
$\chi^2(df)$	7.403(12)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16.7	16.7	16.7	33.3	16.7	0.0	0.0	100.0 (6)
200~299만원	6.3	18.8	37.5	6.3	25.0	6.3	0.0	100.0 (16)
300~399만원	8.3	8.3	25.0	29.2	20.8	8.3	0.0	100.0 (24)
400~499만원	9.1	9.1	36.4	18.2	9.1	18.2	0.0	100.0 (11)
500~599만원	10.5	10.5	26.3	15.8	15.8	21.1	0.0	100.0 (19)
600~699만원	5.6	11.1	27.8	11.1	16.7	27.8	0.0	100.0 (18)
700~799만원	0.0	20.0	20.0	20.0	40.0	0.0	0.0	100.0 (5)
800만원 이상	0.0	0.0	25.0	37.5	12.5	12.5	12.5	100.0 (8)
$\chi^2(df)$	na							

주: 1) ①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시간제보육시설(일시돌봄)이 집 근처에 없어서 ②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집 근처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사랑놀이터 등)이 부족해서 ③ 육아휴직을 희망하나 휴직급여가 낮아서 활용하기 어려움 ④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집근처에 없어서 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이용하기 쉽지 않아서 ⑥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싶으나 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2)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함.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그밖에도 심층면담에 의하면, 홀벌이 가구의 경우는 시간제보육의 접근성이 어린이집 입소 시기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부모 1은 시간제보육시설을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그 이용가능성이 제약이 있으므로 아이돌봄서비스 접근성도 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홀벌이 가구인 부모 2와 부모 3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홀벌이 가구의 경우도 지역사회내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희망하는 시기까지 자녀를 직접양육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따라서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선택권 보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이외에도 시간제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가정내 양육 가구를 위한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확충 노력이 지속으로 요구된다.

저도 어린이집을 일찍부터 대기를 걸어봤는데 어린이집이 안된다고 하면 조금 보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시간제보육이어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전반적으로 시설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러웠어요. 최대 아이 3명까지 가능하고, 저는 접근성이 너무 좋았어서 안 쓸 이유가 전혀 없었고 되게 만족스러워서 이용수기까지 남길 정도로 만족스러웠어요 (부모 1)

30만원이라고 하면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더 큰 비용이 된다면 시간제 보육의 장점이 단점이 급할 때 돌봄을 부탁하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보낼 순 없는데 영아 니까 일정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예약이 꽉 차 있고 한 부모가 3주치를 다 예약해놓으면 도무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변수가 너무 많은 서비스이다 보니까 구멍이 생길 때가 있어요. 만약에 영아수당을 조금 더 받는다면 집에 아이돌보미 라던가 다른 옵션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가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 1)

아이가 첫째고 13개월 여자 아이고, 가족 중심으로 보육하고 있고,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적은 없었는데 육아지원센터에서 아이사랑놀이터는 10개월 때 1~2번 정도는 갔어요.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어서 지금 너무 이용하고 싶는데 이용을 못해서 요새는 키즈카페를 이틀에 한번 꼴로 가고 있어요. 아이 사랑놀이터가 아이들 놀기도 쾌적하고 만족스러웠어요 (부모 2)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근 거리에 있어서 처음에는 시험 삼아 가봤는데 생각보다 만족도도 높고 다른 대안이 사실 없었어요. 아이가 너무 어리면 키즈카페에 갈 수가 없어서 이용을 시작했고 4개월 정도 다녔어요. 한 10개월 정도에 가서 14개월까지 4개월 동안 다녔어요. 그게 인터넷 예약을 미리 해야 되서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나머지 방역이나 관리 차원에서는 만족도가 높아요 (부모 3)

주양육자별로는 부모가 양육 중인 가구에서 낮은 육아휴직 급여로 인한 선택의 어려움과 믿을만한 어린이집이 부족한 경우를 우려하였으며, 어린이집 이용가구에

서는 낮은 육아휴직 급여 이외에도 아이돌봄서비스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V-3-10 참조).

〈표 V-3-10〉 영아수당 지급 시에도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힘든 이유: 1) 주양육자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7.5	11.2	28.0	19.6	18.7	14.0	0.9	100.0 (107)
현재 주양육자								
부모(육아휴직 포함)	0.0	0.0	30.2	30.2	20.8	17.0	1.9	100.0 (53)
어린이집	12.5	21.9	31.3	0.0	25.0	9.4	0.0	100.0 (32)
아이돌봄비	16.7	33.3	0.0	50.0	0.0	0.0	0.0	100.0 (6)
조부모	18.8	18.8	25.0	12.5	6.3	18.8	0.0	100.0 (16)
민간 육아도우미	0.0	0.0	0.0	0.0	0.0	0.0	0.0	0.0 (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0 (0)

주: ①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시간제보육시설(일시돌봄)이 집 근처에 없어서 ②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집 근처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사랑놀이터 등)가 부족해서 ③ 육아휴직을 희망하나 휴직급여가 낮아서 활용하기 어려움 ④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집근처에 없어서 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이용하기 쉽지 않아서 ⑥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싶으나 비용이 부담되어서 ⑦ 기타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희망하는 양육방식에 따라서는 부모가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낮은 휴직급여 수준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선택하기 어려운 점과 아이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이 낮은 점을 주된 방해요소로 인식하였다(표 V-3-11 참조).

〈표 V-3-11〉 영아수당 지급 시에도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힘든 사유: 2) 희망하는 양육방식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계(수)
전체	6.3	15.6	34.4	12.5	21.9	9.4	100.0 (32)
희망하는 양육방식							
부모(육아휴직 포함)	11.1	11.1	38.9	0.0	27.8	11.1	100.0 (18)
어린이집	0.0	0.0	0.0	100.0	0.0	0.0	100.0 (2)
아이돌봄비	0.0	14.3	28.6	14.3	28.6	14.3	100.0 (7)
조부모	0.0	40.0	40.0	20.0	0.0	0.0	100.0 (5)
민간 육아도우미	0.0	0.0	0.0	0.0	0.0	0.0	0.0 (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

주: ①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시간제보육시설(일시돌봄)이 집 근처에 없어서 ②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집 근처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사랑놀이터 등)가 부족해서 ③ 육아휴직을 희망하나 휴직급여가 낮아서 활용하기 어려움 ④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집근처에 없어서 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이용하기 쉽지 않아서 ⑥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싶으나 비용이 부담되어서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심층면담에서 맞벌이 가구는 육아휴직의 실제 이용가능성이 낮고 여성 위주로 활용되며, 낮은 휴직급여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대체로 지적하고 있다 (부모 7, 9, 12, 13). 정책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약이 모든 맞벌이 가구에서 온전히 해결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 다른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계가 많이 흔들려서... 소득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복직이나 경력에 문제가 없거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썼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돌전까지 남편이 회사를 다니느라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어리니까 당연히 뭔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 7)

눈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엄마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권리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9)

남자도 쓸 수 있다고 하고 의무화된다고 하면 최근에 남편의 육아참여도도 높아야 한다는 사회 인식도 강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도 육아를 해봐야 이게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1년 정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비용적 부담도 있지만 남자는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진 면에서 불리한 게 사실이더라고요. 월급을 지원한다고 해도 만약에 남편이 내가 쓰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보면 저는 쓰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월급이 3개월 정도 지원이 나온다고 해도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 12)

저는 실제로 (남편에게 육아휴직을) 쓰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 회사에서도 주변에 쓴 선배들이 몇 명 있긴 해요. 그런데 막상 쓰라고 하니깐 남편이 안 쓰더라고요. 써도 되는 시기, 쓸 수 없는 시기 이런 게 있는데 그 시기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고 아무래도 기업은 평가 위주로 승진을 시키는데... 어쨌든 10만급 성과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승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부모 13)

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방식의 도움 정도 인식

0~1세아(0~23개월) 대상 영아수당의 도입이 이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각 부문별로 5점 척도로 평가한 바로는 '자유로운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이 평균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가 3.74점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추가출산을 연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평가가 낮았다.

〈표 V-3-12〉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1)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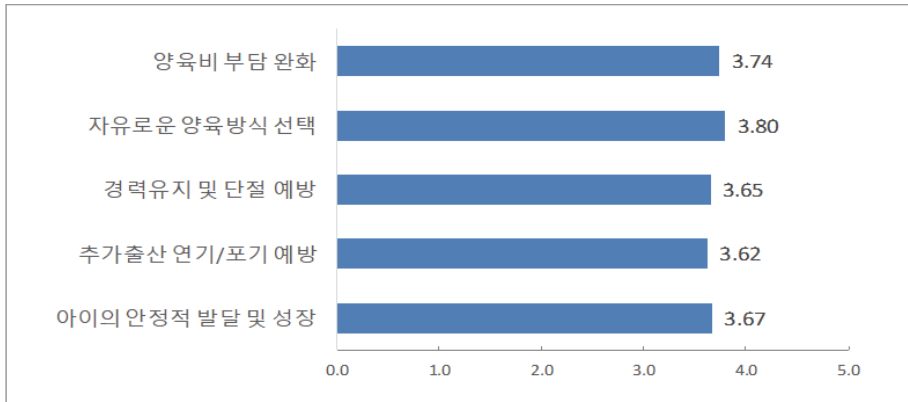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높음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0.4	3.2	30.4	54.0	12.1	100.0 (506)	3.74
자유로운 양육방식 선택	1.4	3.2	27.3	50.6	17.6	100.0 (506)	3.80
경력 유지 및 단절 예방	1.8	5.9	33.8	42.5	16.0	100.0 (506)	3.65
추가출산 연기/포기 예방	1.6	8.7	30.0	45.1	14.6	100.0 (506)	3.62
자녀의 안정적 발달 및 성장	1.2	5.1	34.2	44.5	15.0	100.0 (506)	3.67

주: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그림 V-3-2〕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항목별 평균점수 비교

단위: 점



주: 평균 점수는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대해서는 생산직과 전문직, 맞벌이 가구, 전일제 근로가구에서 평균보다 높은 기대를 나타내며, 양육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에서 평균보다 높은 기대를 보였다.

〈표 V-3-13〉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2) 직업별

단위: 점(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수)
	전체	사무직	생산직	전문직	서비스· 판매직	전업 주부	기타	F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3.74	3.73	3.75	3.79	3.59	3.79	3.75	0.315	(506)
자유로운 양육방식 선택	3.80	3.75	3.89	4.02	3.68	3.78	4.00	1.404	(506)
경력 유지 및 단절 예방	3.65	3.66	3.50	3.87	3.64	3.45	3.88	1.864	(506)
추가출산 연기/포기 예방	3.62	3.60	3.61	3.80	3.50	3.54	4.06	1.655	(506)
자녀의 안정적 발달 및 성장	3.67	3.66	3.68	3.77	3.59	3.55	4.19	1.666	(506)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기타 직업에는 학생 포함

3)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3-14〉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3) 맞벌이 가구 여부별

단위: 점(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수)
	전체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모두 근로안함	F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3.74	3.77	3.71	3.63	0.492	(506)
자유로운 양육방식 선택	3.80	3.85	3.73	3.88	1.381	(506)
경력 유지 및 단절 예방	3.65	3.72	3.57	3.75	2.082	(506)
추가출산 연기/포기 예방	3.62	3.64	3.60	4.00	0.824	(506)
자녀의 안정적 발달 및 성장	3.67	3.70	3.62	4.13	1.797	(506)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3-15〉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4)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점(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수)
	전체	전일제+전일제	전일제+시간제	시간제+시간제	F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3.77	3.76	3.87	3.50	0.658	(261)
자유로운 양육방식 선택	3.85	3.86	3.87	3.25	1.134	(261)
경력 유지 및 단절 예방	3.72	3.71	3.82	3.50	0.360	(261)
추가출산 연기/포기 예방	3.64	3.63	3.74	3.00	1.210	(261)
아이의 안정적 발달 및 성장	3.70	3.70	3.74	3.50	0.136	(261)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3-16〉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5) 자녀수별

단위: 점(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수)
	전체	1명	2명	3명 이상	F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3.74	3.76	3.71	3.78	0.260	(506)
자유로운 양육방식 선택	3.80	3.81	3.77	3.81	0.139	(506)
경력 유지 및 단절 예방	3.65	3.68	3.60	3.69	0.516	(506)
추가출산 연기/포기 예방	3.62	3.65	3.56	3.75	0.897	(506)
자녀의 안정적 발달 및 성장	3.67	3.70	3.65	3.53	0.732	(506)

주: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심층면담에 의하면, 이하 항목 중에서 특히 추가출산 연기 및 포기 예방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부모 9는 현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희망하는 자녀수를 초과하여 자녀를 낳을 짓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양육비용 부담으로 추가출산을 포기하려는 부모 8은 영아수당이나 양육수당액이 늘어난다면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는 증액된 급여수준을 전제한 것이므로 추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에 달하는 급여수준의 상향 조정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전 5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 애기를 낳고 안 낳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전혀 영향이.. 약간에 도움은 되겠지만 전혀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애 하나 키우는데 한 달에 50만원만 들진 않잖아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모유가 안 나와서 분유를 먹이는데 엄마들이 먹이는 분유가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유식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유식뿐만 아니라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0세, 1세 이 사이에 30-50만원 증액이 이 금액은 전혀 출산과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9)

수당액이 늘어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은 한 자녀 밖에 양육을 안 하고 있지만, 신랑이랑 제가 얘기하는 게 '한 아이만 잘 키우자.' 물론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기도 하고 이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어도 신랑은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둘이 되면 지금 100만원이 드는데 150만원으로 늘어나. 170만원이 돼. 그럼 추가되는 금액을 어디서 가져올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내색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다자녀를 출산했을 때 구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영아수당이나 양육수당을 늘려준다면 아니면 기간을 늘려준다면 신랑에게 우리가 다음 자녀를 낳았을 때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겠죠 (부모 8)

또한 부모 11은 경력단절 예방 효과에 대해 믿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력단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분유 값 등 소모품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줄 수 있지만 경력유지 등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선생님의 부재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돈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 11)

부모 12와 13은 양육비 부담 완화의 측면에 한정하여 일부 그 기대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유사하게 맞벌이 가구인 부모 15는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감소에 대한 일정한 보존이 기대된다고 언급하였다.

양육비 부담 완화 정도만 효과가 좀 있으니까 싫어요. 양육비도 일정기간 주어지는 거라서 지금 재난 지원금 처럼... 약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을 조금 덜 덜어주는 것뿐이지 해소는 전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부모 12)

저도 양육비 부담 완화를 제외하면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그렇기는 한데...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입장에서 분유 값이나 기저귀 값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없잖아요. 도움은 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는 엄마들 입장에서 아이가 아프면 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이를 낳게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회사에다가 무조건 아플 때 휴가를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고 (부모 13)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는 조금 빠듯하게 살긴 했어요. 둘째는 아토피도 심해서 기저귀를 사도 조금 더 비싼 걸 사줬어야 했고 매번 분유를 사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외벌이로는 지금 사회에서 살아가기엔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하게 살긴 했어요. 또 휴직을 하면서 저랑 같이 들어갔던 동기들에 비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 다보니까 승진도 사실 밀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좀 더 빨리 복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득이나 승진 관련 부분이란 같이 (부모 15)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월평균 가구소득이 199만원 이하에서는 경력단절 예방, 추가출산 연기 또는 포기를 방지하거나 자녀의 안정적인 발달 및 성장에 대한 기대가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은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V-3-17〉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6) 월평균 가구소득별

단위: 점(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의 도움 정도 인식										(수)
	전체	199만원 이하	200~299만원	300~399만원	400~499만원	500~599만원	600~699만원	700~799만원	800만원 이상	F	
부모의 양육비 부담 완화	3.74	3.67	3.65	3.70	3.80	3.83	3.71	3.90	3.71	0.702	(506)
자유로운 양육방식 선택	3.80	3.80	3.72	3.82	3.87	3.80	3.67	3.72	3.88	0.427	(506)
경력 유지 및 단절 예방	3.65	3.80	3.66	3.53	3.66	3.76	3.65	3.55	3.75	0.705	(506)
추가출산 연기/포기 예방	3.62	3.87	3.65	3.52	3.61	3.74	3.54	3.52	3.79	0.972	(506)
자녀의 안정적 발달 및 성장	3.67	3.87	3.75	3.53	3.66	3.76	3.62	3.59	3.85	1.291	(506)

주: 1) 5점 평균은 '도움 정도 낮음' 1점 ~ '도움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라.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영아수당의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영아수당을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또는 양육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평균 3.8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수에 따라 영아수당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는 정도가 3.81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V-3-18〉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1)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높음		
영아수당 일괄 지급 (0~1세아에게 동일하게 지급)	1.0	5.9	30.4	48.8	13.8	100.0 (506)	3.69
영아수당을 돌봄서비스 이용료 또는 가정양육비용으로 활용	1.0	3.2	28.5	47.2	20.2	100.0 (506)	3.82
영아수당 지급: 0~1세 / 아동수당 지급: 2세	2.2	4.7	31.6	46.4	15.0	100.0 (506)	3.67
연장보육료 일부 부모 부담	1.0	6.5	29.6	48.2	14.6	100.0 (506)	3.69
자녀수에 따른 영아수당액 차등 지급(둘째아부터 증액)	0.8	4.3	29.1	44.7	21.1	100.0 (506)	3.81

주: 5점 평균은 '동의 정도 낮음' 1점 ~ '동의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이에 따라 영아수당을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거나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내에서 직접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수용될 여지가 높다고 보여진다.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지원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영아수당의 기대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아동수당제도와와의 관계 설정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표 V-3-19〉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2) 맞벌이 가구 여부별

단위: 점(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수)
	전체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모두 근로안함	F	
영아수당 일괄지급 (0~1세아에게 동일하게 지급)	3.69	3.69	3.69	3.63	0.023	(506)
영아수당을 돌봄서비스 이용료 또는 가정양육비용으로 활용	3.82	3.86	3.79	3.63	0.629	(506)
영아수당 지급: 0~1세 / 아동수당 지급: 2세	3.67	3.71	3.62	4.00	1.290	(506)
연장보육료 일부 부모 부담	3.69	3.79	3.57	4.25	6.267**	(506)
자녀수에 따른 영아수당액 차등 지급(둘째아부터 증액)	3.81	3.74	3.88	4.00	1.980	(506)

주: 1) 5점 평균은 '동의 정도 낮음' 1점 ~ '동의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1$

〈표 V-3-20〉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3) 맞벌이 가구 근로형태별

단위: 점(명)

구분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					(수)
	전체	전일제+전일제	전일제+시간제	시간제+시간제	F	
영아수당 일괄지급 (0~1세아에게 동일하게 지급)	3.69	3.74	3.42	3.25	2.027	(261)
영아수당을 돌봄서비스 이용료 또는 가정양육비용으로 활용	3.86	3.87	3.82	3.75	0.090	(261)
영아수당 지급: 0~1세 / 아동수당 지급: 2세	3.71	3.71	3.71	3.75	0.004	(261)
연장보육료 일부 부모 부담	3.79	3.76	3.97	3.50	1.346	(261)
자녀수에 따른 영아수당액 차등 지급(둘째아부터 증액)	3.74	3.74	3.76	3.75	0.017	(261)

주: 1) 5점 평균은 '동의 정도 낮음' 1점 ~ '동의 정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2) (수)는 전체 응답자 수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5$

마. 적정 영아수당액

0~1세아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적정한 영아수당액은 평균 606,300원으로 조사되었으며, 41~50만원 27.3%, 51만원 이상이 30.2%를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양극화 현상을 보여 199만원 이하 가구에서 평균 706,000원으로 높고, 700만원~799만원 이상과 800만원 이상 가구에서는 각각 860,300원과 879,8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맞벌이 가구는 635,300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3-21〉 24개월 미만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대로 양육하기 위한 영아수당액: 1) 전반

단위: %(명), 만원

구분	10만원 이하	11~20 만원	21~30 만원	31~40 만원	41~50 만원	51만원 이상	계(수)	평균 (만원)
전체	4.9	13.8	19.4	4.3	27.3	30.2	100.0 (506)	60.63
자녀연령								
0~11개월	5.3	11.5	14.9	4.3	28.4	35.6	100.0 (208)	64.99
12~23개월	4.7	15.4	22.5	4.4	26.5	26.5	100.0 (298)	57.59
$t/\chi^2(df)$			8.551(5)					1.389
맞벌이 여부								
맞벌이 가구	4.6	14.2	20.3	2.7	26.8	31.4	100.0 (261)	63.53
홀벌이 가구	4.6	13.9	18.6	6.3	27.8	28.7	100.0 (237)	56.96
모두 근로안함	25.0	0.0	12.5	0.0	25.0	37.5	100.0 (8)	74.88
$F/\chi^2(df)$			12.807(10)					0.883
출생순위								
첫째	4.3	14.0	20.4	3.2	29.0	29.0	100.0 (279)	57.73
둘째	6.2	14.9	19.0	5.6	22.6	31.8	100.0 (195)	63.21
셋째 이상	3.1	6.3	12.5	6.3	40.6	31.3	100.0 (32)	70.22
$F/\chi^2(df)$			9.589(10)					0.944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33.3	6.7	6.7	0.0	6.7	46.7	100.0 (15)	70.60
200~299만원	7.4	16.2	27.9	1.5	20.6	26.5	100.0 (68)	48.90
300~399만원	6.2	14.0	20.2	4.7	27.9	27.1	100.0 (129)	56.00
400~499만원	1.2	16.5	18.8	4.7	32.9	25.9	100.0 (85)	54.55
500~599만원	2.6	11.8	19.7	3.9	34.2	27.6	100.0 (76)	60.38
600~699만원	1.9	23.1	25.0	3.8	19.2	26.9	100.0 (52)	53.37
700~799만원	0.0	10.3	10.3	13.8	20.7	44.8	100.0 (29)	86.03
800만원 이상	5.8	3.8	9.6	3.8	32.7	44.2	100.0 (52)	87.98
$F/\chi^2(df)$			73.090(35)***					1.771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01$

주양육자별로는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 평균 541,1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으로 그 이용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한 데 기인한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에 희망하는 양육방식 별로 민간 육아도우미를 선호하는 가구에서는 평균 636,790원으로 기타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V-3-22, 표 V-3-23 참조). 희망하는 양육방식의 주를 이루는 부모의 직접 양육, 어린이집 이용, 아이돌보미, 조부모를 선호하는 가구에서는 적정 영아수당액이 평균 535,400원임을 감안하면 돌봄서비스 이용료와 상관없이 50만원 선의 급여액을 고려할만하다(표 V-3-23 참조).

〈표 V-3-22〉 24개월 미만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위한 영아수당액: 2) 주양육자별

단위: %(명), 만원

구분	10만원 이하	11-20 만원	21-30 만원	31-40 만원	41-50 만원	50만원 이상	계(수)	평균 (만원)
전체	4.9	13.8	19.4	4.3	27.3	30.2	100.0 (506)	60.63
현재 주양육자								
부모(육아휴직 포함)	5.0	13.0	19.7	4.7	26.4	31.1	100.0 (299)	61.42
어린이집	5.6	16.0	20.0	3.2	28.8	26.4	100.0 (125)	54.11
아이돌보미	7.7	7.7	11.5	3.8	30.8	38.5	100.0 (26)	80.58
조부모	1.9	16.7	18.5	5.6	27.8	29.6	100.0 (54)	61.57
민간 육아도우미	0.0	0.0	50.0	0.0	0.0	50.0	100.0 (2)	65.00
기타	0.0	0.0	0.0	0.0	0.0	0.0	0.0 (0)	0.00
F/ χ^2 (df)			8.491(20)					1.143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표 V-3-23〉 24개월 미만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위한 영아수당액: 3) 희망하는 양육방식별

단위: %(명), 만원

구분	10만원 이하	11-20 만원	21-30 만원	31-40 만원	41-50 만원	50만원 이상	계(수)	평균 (만원)
전체	4.7	15.9	24.3	4.7	25.2	25.2	100.0 (107)	53.54
희망하는 양육방식								
부모(육아휴직 포함)	0.0	24.4	20.0	4.4	24.4	26.7	100.0 (45)	54.67
어린이집	12.5	6.3	37.5	0.0	18.8	25.0	100.0 (16)	54.38
아이돌보미	0.0	12.9	32.3	6.5	29.0	19.4	100.0 (31)	48.29
조부모	12.5	0.0	12.5	12.5	37.5	25.0	100.0 (8)	46.25
민간 육아도우미	33.3	16.7	0.0	0.0	16.7	33.3	100.0 (6)	63.67
기타	0.0	0.0	0.0	0.0	0.0	100.0	100.0 (1)	150.00
F/ χ^2 (df)			32.894(25)					1.340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한편 심층면담에서는 부모 8과 부모 9와 같이 영아수당으로 보육료를 전액 지출해야 하므로 현행과 다를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보육료와 별개로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영아수당액의 차등지원의 기준으로 부모 9는 자녀수, 부모 7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저는 기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는게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주변에 어린이집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해서 놀이학교를 보내는데 7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런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양육수당으로는 많이 부족한 거잖아요 (부모 8)

저는 사실 50만원으로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육료가 있는데 보육료는 내고 따로 양육수당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영아수당 자체에서 보육료를 결제한다고 하면 별로 그냥 현행과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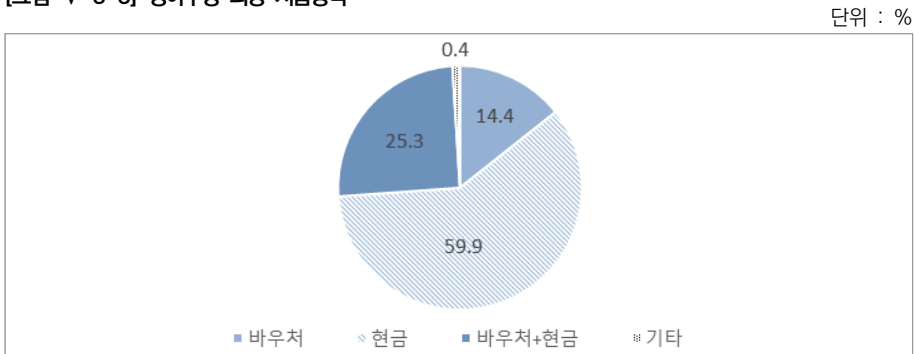
자녀수에 따라서 만약에 영아수당을 1~2만원이라도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더 많이 드는 건 사실이니까. 해줘야 하는 게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건 맞으니까. 구에서도 한 자녀보다 두 자녀 많이 주고 세 자녀는 더 많이 주고 그렇잖아요 (부모 9)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많은 지원이 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는 돈은 비슷할 텐데 소득이 다르면 아무래도 소득이 적은 집은 아이 키우기가 더 힘들잖아요. 해줘야 되는 것도 못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면 아이가 조금 (부모 7)

바. 양육수당 지급방식과 바우처 항목

0~1세아(0~23개월) 대상의 영아수당의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이 59.9%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바우처와 현금을 합한 방식 25.3%, 바우처 14.4%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V-3-3] 영아수당 희망 지급방식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현금지원 방식은 근본적으로 목적 부합성이 낮다는 한계를 지나나, 다른 한편으로 각종 보육 인프라의 공급 수준이 지역적 격차를 보이므로 바우처 방식은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본다.

〈표 V-3-24〉 영아수당 희망 지급방식

단위: %(명)

구분	바우처	현금	바우처+현금	기타	계(수)
전체	14.4	59.9	25.3	0.4	100.0 (506)
월평균 가구소득					
199만원 이하	40.0	40.0	20.0	0.0	100.0 (15)
200~299만원	7.4	48.5	44.1	0.0	100.0 (68)
300~399만원	14.7	69.8	15.5	0.0	100.0 (129)
400~499만원	10.6	65.9	23.5	0.0	100.0 (85)
500~599만원	6.6	63.2	30.3	0.0	100.0 (76)
600~699만원	23.1	51.9	25.0	0.0	100.0 (52)
700~799만원	27.6	44.8	27.6	0.0	100.0 (29)
800만원 이상	17.3	57.7	21.2	3.8	100.0 (52)
$\chi^2(df)$		59.953(21)***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 $p < .001$

심층면담에 의하면, 현금지원에의 선호는 대체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모 5와 같이 육아휴직 중 또는 휴직 이후 직장복귀 후에 조부모의 자녀돌봄을 희망하므로 해당 비용의 지출이 가능해야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부모 7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 이외에 양육비에 지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저는 현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혈연보육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로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혈연보육일 경우도 제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는 현금이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거는 수당을 주는 정부 입장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보육함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만이 다 교육은 아니잖아요. 저는 7월에 제주도에 가서 한달 정도 여행을 할 계획인데 그때는 어린이집 비용을 제가 모두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연장보육 같은 경우에 바우처로 들어오면 여행을 갔을 때 사용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돈이 될 거라서 그럴 때는 현금을 줘야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교육활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바우처를 주면 아이를 보육하는 수단을 제한하는 것 같은 기분이예요 (부모 5)

지금 아직 10개월에 불과하지만 지금도 최대한 많이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경험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사교육이지만 영아 친구들한테는 어떤 느낌?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런 경험들이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 차이는 이런 데서 난다고 생각해요. 정형화된 기관에 보내는 거는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나지 않지만 추가적인 문화센터에 가는 거는 정말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추가항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 5)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많잖아요. 많이 지원을 해주면 좋긴 한데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줘야 될까 싶은 것도 있어요. 센터 가는 거나 육아용품 쓰는 거 그런 거는 아이한테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지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그런데 식비로 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원이 되면 좋긴 하겠죠. 어떻게든 아이한테 쓰긴 할 것 같아요 (부모 7)

다음으로 영아수당이 그 제도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바우처 방식을 적용할 경우, 사용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평균 3.94점(5점 만점), 온라인(육아용품)구매비용 3.81점,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 3.80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 부담 이용료 3.7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V-3-25〉 (바우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영아수당 바우처의 사용 항목

단위: %(명), 점

구분	영아수당 바우처 사용 항목 필요도					계(수)	5점 평균
	①	②	③	④	⑤		
	낮음	←		→	높음		
조부모 손자녀 돌봄 비용	1.0	6.0	27.9	51.7	13.4	100.0 (201)	3.71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료	1.0	4.0	30.3	43.8	20.9	100.0 (201)	3.80
민간 육아시설(키즈카페 등) 이용료	2.0	8.0	34.8	37.8	17.4	100.0 (201)	3.61
사교육비(방문학습서비스 등)	2.0	10.0	30.8	41.3	15.9	100.0 (201)	3.59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 부담 이용료	1.0	3.5	28.9	50.2	16.4	100.0 (201)	3.78
장난감/도서 대여료	0.5	5.5	30.3	45.3	18.4	100.0 (201)	3.76
온라인(육아용품) 구매 비용	1.0	4.0	31.8	39.3	23.9	100.0 (201)	3.81
의료비	1.5	5.0	17.4	50.2	25.9	100.0 (201)	3.94

주: 5점 평균은 '필요도 낮음' 1점 ~ '필요도 높음'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영아자녀의 양육 실태와 요구 조사

4. 소결

앞서 다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그리고 세부 도입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이하와 같다.

첫째, 영아수당은 0~1세아를 둔 부모의 직접양육에 대한 선호와 현금지원 수요에 부응하고 이들 자녀의 양육 시 주된 어려움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그 도입을 고려할만하다. 0~1세 자녀에 대해 부모는 직접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희망하는 지원방식으로 가정내 양육 시 현금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다. 0~1세아의 자녀양육 시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나므로(1순위 기준: 36.4%, 1+2순위 47.8%),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금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현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자녀연령으로 0~1세아는 2세아와 유사한 수준(평균 3.95점, 3.97점, 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도 0세아의 육아용품과 돌봄서비스 지출비용은 각각 평균 557,100원과 993,200원으로 1세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심층면담에서 확인한 바와 특히 첫째 자녀의 경우는 육아용품 전반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고, 모(母)의 산후조리 비용의 추가로 지출되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가구소득 손실이 우려되므로 해당 시기에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현금지원을 모색할만하다고 본다. 현재 아동수당은 모든 0~1세아에게 지급되나 소득기준, 출생순위, 자녀연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가정양육수당은 0세와 1세아에 각각 월 20만원과 15만원이 지급되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아는 최대 월 30만원까지 보장되나, 해당 급여만으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는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둘째, 영아수당의 기대효과로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에 주목할 만하다. 앞서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 영아수당으로 서비스 비용과 육아용품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면,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 점수가 각각 3.80점(만점 5점)과 3.74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가정내 양육을 희망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조부모나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정내보육서비스 이용비용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홀벌이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외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고립된 육아의 고충으로 이른 시기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향을 일부 완화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주양육자가 희망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부모(또는 친인척) 돌봄 42.6%와 어린이집 32.0%로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이들 가구에서 희망하는 양육방식은 부모의 직접양육과 아이돌보미가 각각 42.1%와 29.0%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가구에서 어린이집 최초이용 시기는 평균 11개월이었으나, 해당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한 가구가 6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어린이집에 보내기에 적합한 시기는 평균 32개월이고 맞벌이 가구에서도 유사한 수준을 보여 특히 보육 실수요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 영아수당으로 인한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양육 시의 주된 어려움으로 양육비 부담이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그 효과가 기대된다. 홑벌이 가구에서 월평균 양육비용은 돌봄서비스는 평균 약 62만원, 육아용품 구입비용은 평균 약 39만원선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맞벌이 가구의 해당 비용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며, 특히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도 서비스 병행이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약 80만원선을 초과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녀출산으로 양육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일하는 부모들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으로 인해 가구소득이 출산이전 시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가구의 경우도 홑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양육비 부담을 우려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가정내양육을 선호하나 가정내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이 부족한 가구, 출산률 제고는 양육비 부담으로 추가출산을 포기 또는 지연하려는 가구에 한하여 그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들 효과는 앞서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과 양육비 부담 완화 효과와 비교하여 간접효과에 한정되어 부수적인 성과로서 기대할만하다고 본다. 나아가 영아수당이 온전히 아동의 양육을 위해 사용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영아수당을 통해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히 맞벌이 여부에 따라 다음의 선결과제가 요구되므로 그 충족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근본적으로 실제로 '자유로운' 선택인지, 그리고 '모든' 가구에서 선택권이 보장되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0~1세아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지가 실질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상황이거나, 일부 가구에겐만 선택권이 보

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영아수당을 지급해도 희망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응답한 가구(76.%)에서 그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구체적인 이유로는 육아휴직급여가 낮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 아이돌보미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해당 제도의 이용이 어려운 가구에는 믿을만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홀벌이 가구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기보다 이른 연령에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내 육아지원서비스 즉, 시간제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접근성 제고도 요구된다. 현재 이들 기관의 공급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격차도 두드러지므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지역적 균형 배치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육아지원 욕구에 주목하면, 특히 0~1세아를 둔 맞벌이 가구에서 선호하는 양육방식으로는 홀벌이 가구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직접양육이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나, 그 다음으로는 가정내보육서비스 수요가 높게 나타난다. 또한 육아지원 정책 및 제도별로 도움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다음으로 어린이집 연장보육과 시간연장형보육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았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가 적합한 시기는 심층면담 결과에 의하면, 그 수요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같은 수요는 영아수당이 결과적으로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말해준다.

넷째, 영아수당의 세부 도입 방안과 관련하여 지원방식, 지급방식, 지원수준의 측면에서 각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아수당 지원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으로 지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는 육아용품 구입 등 양육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때 어린이집을 종일 동안 이용하는 가구는 영아수당을 보육료로 전액지출하게 됨에 따라 향후 연장보육은 실수요자 위주로 운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영아수당의 지급방식은 현금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나, 보육 실수요자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바우처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현금과 바우처를 병행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어린이집 보육료는 바우처로, 이외 서비스

비용 등은 현금으로 지원하여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심층면담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현금지원 시에 조부모 돌봄에 대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외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이용료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린이집 이용가구는 영아수당액이 2025년에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됨에 따라(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1: 18-19) 해당 년도 이전에는 어린이집 보육료 중 부모 부담분에 못 미치는 상황여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바우처 방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단적으로 말해 영아수당액이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에도 이용가구에서 그 차액을 개별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 가구에는 영아수당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아수당액은 기존 계획대로 최대 50만원을 고려할만하며, 해당 급여액은 보육료 지원수준과 연동하여 책정될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말해 영아수당을 주로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으로 지출하는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층의 비용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앞서 설문조사에서 희망하는 영아수당액은 평균 약 6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나, 맞벌이 가구에서 어린이집과 병행이용 중인 서비스의 지출비용은 약 80만원선에 달하므로 해당 비용의 부담 완화 문제가 제기된다. 장시간보육 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연장보육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장시간보육에의 기피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나,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은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의 공급이 미흡한 지역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서비스 병행이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연장보육의 도입 목적을 감안하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수당제도를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력은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가구소득이 낮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현금급여의 수준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은 앞서 다룬 외국사례에서 확인된 바이며,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에서도 대체로 그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양육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양육비가 증가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아동수당은 물론, 지방정부의 현금지원도 포괄하여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VI

정책 방안

01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02 영아수당의 세부 도입 방안

03 영아수당의 중장기 발전방안

VI. 정책 방안

제6장에서는 앞서 다른 실증분석 결과와 외국사례 등을 종합하여 영아기 집중투자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보다 명료화하고, 그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때 내년부터 도입 예정된 영아수당의 기대효과를 진단하여 2025년까지의 단기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영아기 집중투자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1.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아동 관련 수당제도는 서비스 지원에 비해 현금지원의 성격상 그 목적 부합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대효과를 명료화하여 효과성을 면밀하게 진단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영아기의 집중투자는 이외 다른 제도와의 관계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고유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앞서 다른 외국사례에 의하면, 영아기에 집중된 현금지원은 각 국가별로 그 도입 배경 및 강조점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직접양육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한 보전이다. 다른 하나는 공보육 인프라의 공급 부족으로 가정내보육서비스 등 이외 서비스를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된 경우에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자녀출산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프랑스와 핀란드 사례에서와 같이 그 지원범위를 출산 시기까지 확장하여 별도의 수당제도를 구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영아기의 수당은 아동수당과는 구분되는 차별화된 목표를 지니며, 이는 곧 아동의 전(全)생애주기 중에서 특히 영아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서 외국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동수당제도는 대개 그 적용은 보편적이거나, 지급수준은 가구소득이나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이러한

제도 설계는 자녀 여부에 따른 가구소득의 격차를 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아동수당법」 제1조에서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1. 5. 15 인출). 이에 반해 영아기 수당은 아동수당에 더하여 부가적으로 지급되므로 해당 시기의 ‘추가적인 수당’에 대한 필요성과 차별화된 기대효과가 요구되며,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영아수당은 그 목표로서, 비용-시간-서비스 지원을 종합하여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의 조성을 추구한다. 동 계획에 의하면, 영아수당은 아동 중심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의 소득 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제시된다(대한민국정부, 2021: 51). 즉, 아동을 개별적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제도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확대, 주거지원 등과 더불어 영아수당의 도입이 추진된다. 이처럼 영아수당은 저출산 대응의 주요 과제 중에서 아동 기본권의 보편적 보장의 일환으로 ‘아동가구의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되며, 구체적으로 0~1세아에게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적절한 비용·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1: 77). 또한 0~1세아에 대한 집중투자의 근거로서 낮은 어린이집 이용률과 부모의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에 따라 기관 중심의 보육료 지원만으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그 다양한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이외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금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부모의 직접양육을 지원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제도 이용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여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표도 강조된다.

이러한 제도 도입의 설명에 의하면, 영아수당의 목표는 첫째, 아동에 대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고, 둘째, 어린이집 이외의 육아지원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들 목표는 영아수당의 특성상 통합적으로 이해가 요구된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첫 번째 목표는 언뜻 보아 아동수당의 목표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동관련 수당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동에 있음을 떠올린다고 해도 그 투자가 0~1세에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다. 아동수당의 지원대상을 현재의 미취학 자녀에서 학령기까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아동의 전(全)생애에 걸친 소득보장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영아수당은 단지 아동수당제도의 연장선 또는 보완이 아니라, 부모가 여건에 맞는 양육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이상의 영아수당 도입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서 다룬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결과에서 파악된 영아수당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아동기 전반에 걸쳐 현금지원은 영아기에 집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아부터 학령기 자녀에서는 서비스 지원 즉, 보육 및 교육서비스 부문에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에 반해 영아는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현금지원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서비스 지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OECD 국가에 의하면, 초기 아동기(0~5세)에는 현금과 세제지원이 집중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하다(유해미·최효미·강신혜, 2017: 27-28). 또한 초기 아동기(만 0~5세)의 현금수당은 만 3~5세아에 비해 만 0~2세아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에서도 앞서 다룬 바와 같이 0~1세아를 둔 가구는 정부의 현금지원은 영아기에 집중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0~세아: 3.95점, 1~2세아: 3.97점, 만점 5점). 또한 0~1세아의 정부 지원방식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0~1세아의 양육 시 어려움으로 양육비용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이들 가구에 수당을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필요성 측면에서 이외 연령대에 비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영아기에는 육아용품을 새롭게 구입하는 등 양육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나, 이에 반해 해당 자녀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또는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으로 가구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양육비 부담이 보다 가중되는 시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소득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영아수당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올해 3월에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고영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8803) 영아기 추가수당의 목적으로는 육아지원의 형평성이 거론된다. 즉, 영아기에는 부모의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가 높으나, 어린이집 보육료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최대 2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에서는 그 법적 근거로서 영아수당이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다양한 보육 수요를 고려한 돌봄 방식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고 보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a: 20).

나. 영아수당의 기대효과

영아수당의 기대효과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지닌 공통적인 목표로서 아동의 성장 및 발달과는 구분되는 차별화된 지점이 요구된다. 0~1세아에게 아동수당에 더하여 다른 연령대에는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추가적으로 모든 가구에 지급하려면 고유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제4장에서 다룬 외국사례에 의하면, 영아기에 부가되는 수당은 그 목표로서 부모권의 보장을 위해 자녀출산 이후의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고,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다양한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에서도 일부 확인된다. 0~1세아를 둔 가구에서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는 ‘양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과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 완화’가 각각 평균 3.80점과 3.74점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는 주요 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가구특성 등에 상관없이 대체로 유사한 수요를 지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른 한편 이들 항목에 비해 경력단절 예방, 추가출산 지연 및 포기 예방, 자녀의 안정적인 발달 및 성장에 대해서는 그 도움 정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들 항목은 영아기에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짐작된다. 대표적으로 앞서 다룬 심층면담 결과 여성과 같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수당지원 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보육

시설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출산의 경우도 0~1세아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수당으로 출산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199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는 이들 항목 모두에 걸쳐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보인다는 점에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출비용이 부족하므로 근로시간에 부합하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집 근처에 없다면 경력단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양육비용이 부담되어 추가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가구의 비율이 높으며, 양육비가 부족하여 자녀의 성장 및 발달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소득층 가구에서 영아수당의 기대효과와는 양육비 부담 완화의 연장선 이기는 하나 더 광범위하게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내년에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그 지원대상이나 지원수준에서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효과성 측면에서 향후 소득에 따른 차이가 야기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영아수당의 기대효과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강화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때 도움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양육방식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중한 평가를 요한다. 무엇보다 앞서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서 ‘영아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희망하는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이유로는 육아휴직을 희망하나 급여수준이 낮아 활용하기 어렵거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집 근처에 없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는 데, 이는 곧 영아수당만으로 다양한 부모 수요에 온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이로써 영아기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직접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완화함과 동시에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이 선결과제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영아수당으로 인한 계층화와 성별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보육 등 서비스 수요가 존재하나, 양육비의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 비중이 높을 경우는 저소득층 아동의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지출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

성의 가정내 양육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보육 인프라의 접근성이 저하되어 결과적으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경력단절이 야기되는 상황이 지속될 우려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2. 영아수당의 세부 도입 방안

영아수당의 도입 방안으로는 “제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그 지원대상을 0~1세아로 한정하되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특히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이 제시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영아수당의 지원내용 및 그 함의를 진단하고,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영아수당의 적정 지원액과 지원방식, 그리고 관련 고려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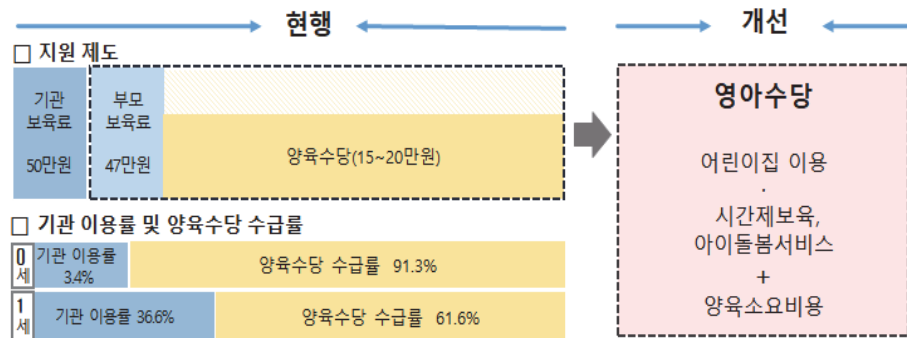
가. 지원내용

영아수당은 기존에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지원방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받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통합하여 영아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c: 12). 이로써 0~1세아를 둔 가구에서는 영아수당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에는 보육료를 지출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시에는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와 돌봄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그림 VI-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아수당으로 서비스 즉,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보육 등을 이용하거나 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시에는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c: 12).

그런데 영아수당을 이와 같이 통합적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수요자는 영아수당의 지출방식을 매 순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되었다. 그로 인해 영아수당의 활용 방식에 대한 책임은 수요자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따라

서 영아자녀를 둔 가구의 다양한 육아지원 수요에 보다 부응하고자 한다면, 향후 프랑스나 핀란드와 같이 가구여건이 반영된 수당제도의 정교화도 모색할만하다.

[그림 VI-2-1] 영아수당 도입 방안



자료: 보건복지부(2021c). 보도자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2. 22). p. 12.

더욱이 이 같은 통합적 지원방식은 특히 서비스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은 물론 시간제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그 전제로 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현재와 같이 어린이집이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상황이라면 보육 실수요와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룬 시기 부터 이용하는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맞벌이 가구는 물론, 고립된 육아의 어려움에 처한 홀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통합적 지원으로 가구여건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으려면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영아보육의 접근성을 보장함은 물론, 시간제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확충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제보육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공급 수준은 그 수요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고 지역적 격차도 두드러지므로 이들 기관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나. 지원대상

내년부터 실시되는 영아수당은 0~1세아를 둔 가구에 지급되는 것으로 제시되며, 그 구체적인 대상범위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지원대상 연령범위만

확정되고 세부 적용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지원대상 연령범위로서 0~1세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의 직접양육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부모가 직접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자녀의 연령은 평균 약 33개월을 초과하며,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시기로는 평균 약 32개월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부가 현금지원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는 0~1세아와 2세아가 유사한 수요를 보였다. 외국사례에서도 영아기 집중투자 기간은 만 2세까지 포괄되는 경향을 보인다. 누리과정이 만 3세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2세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해도 어린이집 이외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모두 사용하여도 총 24개월이므로 영아수당의 적용 시기는 0~1세아가 적합하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따라서 영아수당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영아수당의 지급대상은 기관 이용 여부 즉, 양육수당 가구에 한정하든지 또는 모든 가구로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로 좁혀진다.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정부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가구에게 추가로 영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다(고영인 의원, 2021: 2). 그러나 서비스 비용지원은 원칙적으로 그 수요에 기반하므로 보육료 지원 수준과 가정내 양육가구의 현금지원 수준을 형평성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 지원수준

아동수당의 지급액은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2025년까지 최대 5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면 명확하게 제시된 내용이 없으며, 그 책정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희망하는 양육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되는 영아수당액으로 평균 약 6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조사결과에 기반하면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하여 최대 50만원선이 고려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하되, 30만원을 시작으로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2025년에 50만원에 도달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a: 18-19) 해당 목표 년도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모 부담분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급 수준과의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제기된다.

한편 현실적으로 보아 영아수당의 지급수준을 도입 초기에 30만원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영아수당의 적용시기가 2022년 출생아부터 이므로 해당 년도에 0~1세아에 해당하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이때 기존의 지원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모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현재 기준으로는 아동수당 10만원에 가정양육수당 최대 20만원을 추가하여 총 30만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 내년 출생아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폐지되는 대신 영아수당 30만원이 추가되어 결과적으로는 현재보다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이때 어린이집 이용 시는 현재와 같이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영아수당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시기 등을 감안하면 내년 제도 도입 시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현재와 같이 보육료 방식으로 지원받고, 어린이집 미이용 시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덧붙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감소된 가구소득은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일부 보전될 것으로 기대되나, 근로소득과 연계된 실질적인 소득의 보장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라. 지원방식

영아수당의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응답률 59.9%), 바우처를 희망하는 비율은 14.4%에 그쳤다. 현금을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특히 조부모 돌봄에 대한 지출비용과 자녀와의 체험활동 등 다양한 양육비로 활용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시간제보육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므로 그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지원의 수준이 높을 경우, 자녀에게 소요되는 지출 비중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2025년까지는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보다 영아수당액이 적어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바우처 방식으로 일괄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의 지급방식으로 어린이집 이용시는 바우처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시에는 현금으로 지원하여 시간제보육 등 돌봄서비스와 기타 양육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1a: 20).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영아수당의 지급방식은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바우처와 현금을 동시에 운영하되, 2025년을 기점으로 그 전환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영아수당의 중장기 발전방안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3. 영아수당의 중장기 발전방안

가. 타 제도와의 정합성 제고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0~1세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을 폐지하고 양육방식에 상관없이 통합적으로 그 지원방식을 일원화하는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2세아부터 적용되는 가정양육수당 등 육아지원제도는 그 방향성 전반에서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요구된다.

또한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과 추가수당 간의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비와 특히 현금지원제도 간의 통합적 지원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때 통합적 자원 마련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영아수당과 이외 유관 제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하와 같다.

1) 아동수당제도와의 관계

아동수당제도와의 관계는 현금급여 전반의 설계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현재 영아수당은 그 법적 근거를 「아동수당법」에 두고자 추진되고 있는데, 해당 근거로서 보건복지부는 영아수당이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되는 보편적 수당임을 들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1a: 22). 이처럼 영아수

당이 아동수당에 부가되는 수당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아동수당의 확대는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간 아동수당의 확대는 주로 연령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관련 법률 안에서 해당 연령으로는 12세 미만, 18세 미만 등이 제기된다(정춘숙의원 등, 2021; 유기홍의원 등, 2021; 고영인의원, 2021).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외국사례 등에 의하면 아동수당의 적용대상 연령으로 학령기를 포괄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1b: 7).

나아가 현금지원의 체계상 영아수당은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에 더하여 추가적인 욕구로 인한 부가적인 수당의 성격을 지니므로 이외 아동관련 수당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때 현재 입양수당을 제외하면 한부모가족과 장애아동 등에 지원되는 추가수당은 소득기준이 적용되어 선별적으로 지원된다. 그러므로 프랑스 등과 같이 부가적 성격을 지닌 영아수당의 경우에도 해당 연령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급여액의 조정 등을 포괄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진단을 토대로 욕구 수준에 따른 급여체계의 전환이 필요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가정양육수당제도와의 관계

0~1세아 대상 영아수당의 도입으로 가정양육수당은 2세아 부터 지급되는데, 이는 제도 간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누리과정은 만 3세부터 적용되므로 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제도 간 상충이 야기된다고 지적되어왔다. 아동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누리과정의 도입과 가정내 양육 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그 목표가 상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아수당의 도입에 따라 가정양육수당제도의 폐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현재 계획된 바와 같이 0~1세를 둔 가구에 영아수당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될 경우(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1a: 18-19) 0~1세아에 아동수당 10만원을 합하여 총 월 60만원이 지급되나, 만 2세아 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단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2세아 이후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률이 높아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이러한 비용지원 방식의 전환은 누리과정 적용대상인 만 3~5세아의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덜하다고 여겨지나, 2세아는 부모들이 인식하는 어린이집 적정

이용 시기 등을 감안하여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영아수당 도입으로 2세 부터 급감하는 현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정양육수당액을 상향조정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가정양육수당과 무관하게 2세아의 현금지원을 영아수당에 포괄하여 다룰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해당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모(母)의 직장복귀를 늦추는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3)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의 관계

영아수당의 적용대상 및 지원수준 등은 보다 근본적으로 보육서비스 지원과의 관계에서 그 중요도를 어디에 둘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설정이 요구된다. 단적인 예로 여성의 노동권을 일차적으로 강조하는 스웨덴에서는 영아기에 별도로 지원하는 수당제도가 부재하며 아동수당은 자녀연령이 반영되고 최근에 다자녀가구 지원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육아 휴직 이후에 여성이 서둘러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현금지원의 강화로 여성에 의한 가정내 돌봄 노동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표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반면에 핀란드는 가정양육수당을 유지하여 보육 인프라의 부족 시에는 가정내 양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영아수당의 도입은 단적으로 말해서 0~1세아 양육지원의 방향이 보육료 지원 위주에서 가정내 양육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여전히 낮은 상황에서 영아수당의 도입이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립된 육아가 지속되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도록 영아보육의 접근성을 보장함은 물론, 가정내 양육가구를 위한 시간제보육 등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족한 양육비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이 전적으로 가정내 양육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시간제보육시설 등의 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여성에 의한 자녀 돌봄이 강화되고, 가정내보육서비스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 기관보육을 선택하는 가구가 점차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어린이집 영아보육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나. 영아수당의 목적 부합성 제고를 위한 정교화

영아수당의 목표는 앞서 제기한 바와 같이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다. 이는 이 연구에서 수요자의 인식을 반영한 결과이며,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21a: 17-20). 그런데 보다 면밀하게는 현재 영아수당이 그 욕구별로 설계된 방식이 아니므로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영아기의 양육비 부담 완화는 부모의 직접양육에 의한 근로소득의 감소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과 연동하여 그 지원액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그 지원수준은 보편적으로 하고, 저소득층 가구나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는 수당액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영아수당이 아동수당의 성격을 지니므로 보편적인 적용이 요구된다면, 수당액이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등 저소득층 가구의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제도적 발전이 모색될 수 있다.

그 밖에도 영아기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측면에서 출산에 따른 수당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녀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 비용이나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출 등은 특히 0세아의 자녀양육비에 추가하여 소요되므로 해당 시기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된다. 따라서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자녀 양육비가 부족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가비용에 포함하여 다룰만하다고 본다. 단,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2년부터 ‘첫만남 꾸러미’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그 효과성에 주목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의 보장을 위한 가정내보육서비스 지원은 기관보육의 접근성이 미흡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즉, 보육 인프라의 공급이 미흡하여 가정내보육서비스를 불가피하게 이용하게 되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프랑스와 핀란드에서와 같이 그 지원대상은 ‘공적 부문’의 가정내보육서비스 즉,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보편적인 보육료 지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어린이집의

접근성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고 본다. 다른 한편 어린이집 이용가구에서 가정내보육서비스를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 해당 비용은 맞벌이 가구에서 약 80만원선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연장보육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방향으로 보아 육아지원의 일관성을 견지함은 물론 재정효율성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영인의원(202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 고용노동부(2021). 2021년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 국회보건복지위원회(2021a).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고용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803호).
- 국회보건복지위원회(2021b).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862호).
- 곽금주·성현란·장유경·심희옥·이지연·김수정·배기조(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 권미경·박원순·엄지원(2016). 가정내 양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나영·도남희·이동하·조혜주(2016). 육아지원을 위한 시간정책의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나영·황선영·엄지원(2019). 영아 양육지원 수요 분석 및 종합적 대응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김수정(2006). 스웨덴 가족정책의 삼중동학-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가족과 문화, 18(4), 1-33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운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주·서영희(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육아 경험 연구. 육아지원연구, 7(1), 93-113.
- 김은지·정가원·배호중·김수진·성경·이상건·최영·안현미(2019). 양육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노대명·김대중·김영아·김은경·나병균·박찬용·박혜미·신운정·심창학·이성애·봉인식(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나남
- 대한민국정부(202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 도미향(2013). 핀란드의 보육 및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탐색적 연구. 코칭연구,

6(1), 1-108.

박성연(2006). 아동발달. 서울: 교문사.

박은정(2019a). 독일 가족정책의 현금급여 분석과 시사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7-221.

박은정(2019b). 독일 정부의 가족정책 프레임 분석: 2002년 이후 기독교 연합당과 시민당의 정책 프레임 변화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29(2), 94-120.

보건복지부(각년도).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21a). 202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21b). 2021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1c). 보도자료: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2021. 2. 22).

서문희·최혜선(2007).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송다영·박은정(2019). 양육수당의 제도적 정합성 분석: 한국과 독일의 양육수당 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64, 93-135.

신윤정(2008). 2007년 프랑스 가족수당 정책의 개관(Vos Prestations 2007).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

여성가족부(2021a). 2021년 가족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21b).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여성가족부(2021c). 2021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여성가족부(2021d).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2025 세상 모든가족 함께.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21a). 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여성가족부 내부자료(2021b). 2021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개요.

유기홍의원등(202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380호).

유주연(2020). 맞벌이 가정 영아의 어머니 및 교사 애착안정성 비교: 영아 기질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1), 153-176.

유해미(2009). 양육지원 정책에서의 '선택권' 스웨덴 사례를 통한 교훈, 사회와이

- 론, 15, 297-329.
- 유해미·김아름·김진미(2015). 국내 육아지원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배운진·김문정(2014).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IV):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 자녀 양육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이규림·이민경(2016). 영아 대상 기관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20). 2019 영유아 주요통계.
- 윤승희(2015).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 비교 연구: 제도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4, 1-24.
- 이대균·황주미(2008).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초보 어머니의 어려움과 기쁨. 유아교육학논집, 12(5), 103-132.
- 이미화·민정원·엄지원·윤지연(2013). 영아보육의 실태 및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사라·이주연·박민선·송승민·박선영(2013). 영아 발달. 경기: 파워북.
- 이영(2000). 영아 발달과 보육. 2000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영아보육의 현황과 21세기의 과제. 한국아동학회.
- 이영·이미란·홍희영·한성희·민성혜·박신진·유영미·신혜원·민현숙·정지나·문영경(2015). 영아 발달. 서울: 학지사.
- 이용복(2004).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의 비교연구-저출산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아동복지연구, 2(2), 97-113.
- 이정원·이윤진·김희수(2017).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권미경·이윤진·이혜민(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원·이정림·도남희·최효미·이재희·이윤진·윤지연·염혜경(2018). 2018년 전국 보육실태조사-가구조사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이현주·김근혜·송지원·신정완·주은선·최연혁·Jonas Edlund(2018). 스웨덴 사회 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나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보도자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더 촘촘 하게 만들겠습니다(2020.12.15.).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2019.2).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
- 정춘숙의원등(202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62호).
- 주스웨덴 대사관(2016). 스웨덴의 아동양육정책.
-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 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 홍희정·홍성현(2019). 스웨덴에서 한국의 미래를 꿈꾸다. 이담북스.
- Allocations Familiales.(2020) Guide des Prestations de la CAF, <https://viesdefamille.prismamedia.com/?token=bf47e9df55bf1362259e55179f2fb8313ea009cd47dc971daf780f6eeba7fe1d> 에서 2021. 4. 1. 인출.
- Allocations Familiales, Caf du Loiret. (2017). Guide 2020 Prestation de Service Unique.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caf/451/PSU/Guide%20Psu%202020_04_24.pdf 에서 2021. 4. 1. 인출.
- Barnas, M. V., & Cummings, E. M.(1994). Caregiver stability and toddlers' attachment-related behavior towards caregivers in day care.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7(2), 141-147.
- Bertram, H., & Bujard, M.(2012). Zur Zukunft der Familienpolitik. Zeit, Geld, Infrastruktur-zur Zukunft der Familienpolitik. *Special Issue Soziale Welt*, 19, 3-24.
- Bertram, H., & Deuflhard, C.(2013). Das einkommensabhängige Elterngeld als Element einer nachhaltigen Familienpolitik. *Journal of Family Research*, 25(2), 154-172.
- BMF(2017). Datensammlung zur Steuerpolitik. BMF.
- BMFSFJ(2013). Informationen zum Betreuungsgeld. BMFSFJ.

- BMFSFJ(2020). Elterngeld, ElterngeldPlus und Elternzeit. Berlin: BMFSFJ.
- Böhmer, M., Matuschke, M., & Zweers, U.(2008). Dossier: Kindergeld in Deutschland-Familien wirksam fördern, BMFSFJ.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Attachment (Vol. 1). New York: Basic books.
- Esping-Andersen(1999). Gøsta.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Familienkasse(2020). Merkblatt Kindergeld, Familienkasse.
- Familienkasse(2021a). Merkblatt Kindergeld, Familienkasse.
- Familienkasse(2021b). Merkblatt Kinderzuschlag, Familienkasse.
- Gauthier, A. H.(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Gerlach, I.(2010). Familienpolitik,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Springer.
- Haataja, A. (2013). Father's parental leaves and participation in childcare in Finland.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제도와 실행 효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 심포지엄, 2013년 8월 28일.
- Howes, C. (1990). Can the age of entry and the quality of infant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292-303.
- Howes, C., & Spieker, S. (2008). Attachment relationships in the context of multiple caregivers.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17-332). New York, NY: Guilford Press.
- Huebener, M., Müller, K. U., Spieß, C. K., & Wrohlich, K. (2016). Zehn Jahre Elterngeld: Eine wichtige familienpolitische Maßnahme. *DIW-Wochenbericht*, 83(49), 1159-1166.
- Lamb, M. E., Bornstein, M. H., & Teti, D. M. (2002). *Development in infancy* (4th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Mahwah, New Jersey.

- Leitner, Sigrid. (2003). "Varieties of familialism: The caring function of the family in comparative perspective." *European societies*. Vol. 5. Nr. 4, 353-375.
- Lindgren, J. (1978). Finland. In S. B. Kamerman & A. J. Kahn (Eds.),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rgan, K. (2002). Does anyone have a "Livres Choix"? Subversive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french child care policy. In S. Michel &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143-167, Routledge. New York·London.
- Observatoire National de la Petite Enfance(2020). L'accueil de jeune enfant en 2019.
https://www.caf.fr/sites/default/files/cnaf/Documents/Dser/observatoire_petite_enfance/32709%20-%20Cnaf%20Rapport%20Onape%20Accueil%20jeune%20enfant%202019_v9.pdf 에서 2021. 4. 1. 인출.
-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ecurite Social (2020). Programme de Qualite et d'Efficiencie <Famille>.
<https://www.securite-sociale.fr/files/live/sites/SSFR/files/medias/PLFSS/2020/PLFSS-2020-ANNEXE%201-Famille.pdf> 에서 2021. 4. 1. 인출.
- Rainer, H., Bauernschuster, S., Danzer, N., Hener, T., Holzner, C., & Reinkowski, J. (2012). Kindergeld, ifo Forschungsberichte.
- Regeringens skrivelse 2020/21:10. <https://www.riksrevisionen.se/om-riksrevisionen/kommunikation-och-media/nyhetsarkiv/2020-03-31-regeringen-bor-se-over-flerbarnstillagget-i-barnbidraget.html> 2021. 4. 2. 인출.
- Repo, K. (2010). Finnish child home care allowance-users' perspectives and perceptions. In J. Sipila, K. Repo & T. Rissanen (Eds.), *Cash for childcare: The consequence for caring mothers*, Edward Elgar Pub.
- Samtleben, C., Schaeper, C., & Wrohlich, K. (2019). Elterngeld und Elterngeld Plus: Nutzung durch Väter gestiegen, Aufteilung zwischen

- Müttern und Vätern aber noch sehr ungleich. DIW Wochenbericht, 86(35), 607-613.
- SCB(2008). Valfärd Nr 4. <https://www.yumpu.com/sv/document/read/20488354/barnbidraget-en-pigg-60-aring-pdf> 에서 2021. 4. 3 인출.
- Toulemon, L., Pailhé, A., Rossier, C. (2008) France: High and stable fertility Demographic Research, 19(16), 503-556.
- Verschueren, K., & Koomen, H. M. (2012). Teacher-child relationships from an attachment perspective.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14(3), 205-211.

【국내 참고 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에서 2021. 5. 15 인출.
- 복지로. <http://bokjiro.go.kr> 에서 2021. 4. 28. 인출.
-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http://childcare.go.kr> 에서 2021. 4. 28. 인출.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 에서 2021. 4. 28. 인출.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에서 2021. 4. 28. 인출.

【국외 참고 사이트】

- 독일 경제·사회학 연구소 WSI GenderDatenPortal.
https://www.wsi.de/data/wsi_gdp_SO-Elterngeld-01.pdf 에서 2021. 4. 3. 인출.
- 스웨덴 Barnbidrag.info. <https://barnbidrag.info/barnbidragets-historia> 에서 2021. 4. 2. 인출.
- 스웨덴 사회보험청 <http://Forsakringskassan.se> 에서 2021. 4. 20. 인출.
- 스웨덴 The Local. <https://www.thelocal.se/20080328/10764> 에서 2021. 4. 13. 인출.
- 스웨덴 riksrevisionen. <https://www.riksrevisionen.se/om-riksrevisionen/>

kommunikation-och-media/nyhetsarkiv/2020-03-31-regeringen-bor-se-over-flerbarnstillagget-i-barnbidraget.html 에서 2021. 3. 31.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adoptio> 에서 2021. 5. 24.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elatustuki> 에서 2021. 5. 24.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ero-perheessa> 에서 2021. 5. 24.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jos-lapsi-sairastuu> 에서 2021. 5. 24.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en/child-benefit-amount-and-payment> 에서 2021. 4. 20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stod-for-hemvard> 에서 2021. 4. 20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web/sv/barnbidrag-belopp> 에서 2021. 4. 14.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vanhempainpaivarahat> 에서 2021. 4. 14.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joustava-hoitoraha> 에서 2021. 4. 14. 인출.

핀란드 사회보험청 <https://www.kela.fi/osittainen-hoitoraha> 에서 2021. 4. 14. 인출.

OECD (2021).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에서 2021. 4. 1. 인출.

【참고 법령】

「아동수당법」 [법률 제16737호]



부록

부록 1. 설문조사표: 부모용

영아 자녀의 양육 실태 및 요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를 보다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는 수시과제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영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의 필요도 및 도움 정도 인식과 관련 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와 제34조에 의거하여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응답자 확인 사항〉

SQ1. 귀하는 0~23개월 자녀를 1명 이상 두고 있습니까?

- ☐ ① 예 ☞ 문 SQ1-1번으로
☐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SQ1-1. (그렇다면) 0~23개월 자녀는 몇 명인가요?

- ☐ ① 1명
☐ ② 2명
☐ ③ 3명 이상

SQ1-2. 자녀의 연령을 어떻게 되시나요? 만약 2명 이상이면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개월

SQ2. 전체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총 ()명 (범위: 1~10명)

SQ3. 귀하의 취업 여부	☐ ① 예 ☞ SQ3-1번으로	☐ ② 아니오 ☞ SQ3-1번으로
SQ3-1. 귀하의 직업	↓ ☐ ① 사무직 ☐ ② 생산직 ☐ ③ 전문직 ☐ ④ 서비스 및 판매직	↓ ☐ ⑤ 전업주부 ☐ ⑥ 학생 ☐ ⑦ 무직 ☐ ⑧ 기타
SQ4. 가족형태	☐ ① 부부+자녀 ☐ ② 한부모+자녀 ☐ ③ 3세대 이상 가족 ☐ ④ 기타(구체적으로:)	
SQ5. 맞벌이 가구 여부	☐ ① 맞벌이 가구임 ☞ SQ5-1번으로 ☐ ③ 둘다 일 안함 ☞ SQ6번으로	☐ ② 홀벌이 가구임 ☞ SQ6번으로 ☐ ④ 해당사항 없음 ☞ SQ6번으로
SQ5-1. 맞벌이 가구 유형 ※ 전일제 근로: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근로	☐ ① 전일제근로+전일제근로 ☐ ② 전일제근로+시간제근로 ☐ ③ 시간제근로+시간제근로	

※ 이하 질문에 대하여 0~23개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SQ6. 귀하는 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현재 휴직 중
☐ ② 과거 휴직 경험 있음
☐ ③ 직장을 다니고 있으나, 육아휴직은 하지 않음(출산후가후 복귀 포함)
☐ ④ 해당 사항 없음

SQ7. 응답자녀의 출생순위

- ☐ ① 첫째 ☐ ② 둘째
☐ ③ 셋째 ☐ ④ 넷째 이상

1. 영아 자녀의 양육 실태 및 애로사항

1. 귀하의 이 자녀는 주로 누가 양육합니까?

※ 평일 낮시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돌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응답합니다.

- ☐ ① 부모(육아휴직 포함) ☐ ② 어린이집
☐ ③ 아이돌보미(정부지원) ☐ ④ 조부모(또는 친인척)
☐ ⑤ 민간 육아도우미 ☐ ⑥ 기타(구체적으로:)

1-1. 문 1번의 주양육자는 귀하가 희망하는 양육방식입니까?

- ☐ ① 예 ☞ 문 2번으로
☐ ② 아니오 ☞ 문 1-2번으로

1-2. (희망하는 양육방식이 아닌 경우) 이하 중 희망하는 양육방식은 무엇입니까?

- ☐ ① 부모(육아휴직 포함) ☐ ② 어린이집
☐ ③ 아이돌보미(정부 지원) ☐ ④ 조부모(또는 친인척)
☐ ⑤ 민간 육아도우미 ☐ ⑥ 기타(구체적으로:)

2. (문 1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귀 자녀가 최초로 어린이집을 이용한 때는 몇 개월입니까?

최초 이용 시 자녀연령	() 개월 (범위: 1~23개월)
--------------	---------------------

2-1. 문 2번의 최초 어린이집 이용 시기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십니까?

- ☐ ① 적합한 시기임 ☞ 문 3번으로
☐ ② 적합한 시기보다 빨리 입소함 ☞ 문 2-1-1번으로
☐ ③ 적합한 시기보다 늦게 입소함 ☞ 문 2-1-2번으로

2-1-1. (문 2-1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의 이 자녀(24개월 미만)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기보다 빨리 입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원하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려고 미리 입소함
☐ ② 직장예 복귀해야 해서(또는 학업을 계속해야 해서)
☐ ③ 다른 자녀(동생 등) 함께 양육하는 것이 힘들어서
☐ ④ 혼자 자녀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서(자녀가 1명인 경우)
☐ ⑤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2-1-2. (문 2-1에서 ③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의 이 자녀(24개월 미만)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기보다 늦게 입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 ① 어린이집 입소대기 기간이 길어져서
☐ ② 집 근처에서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지 못해서
☐ ③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못해서
☐ ④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근로시간과 맞지 않아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3. 귀하는 이 자녀(24개월 미만)의 양육을 위해 평일 기준으로 현재 어린이집 이용과 병행하여 부모(귀하 또는 배우자)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 ☐ ① 예 ☞ 문 3-1, 문 3-2번으로
☐ ② 아니오 ☞ 문 4번으로

3-1. (문 3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돌봐주는 사람(또는 기관)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아래 표의 해당 란에 모두 표기(정기적으로 돌봐주는 사람 모두 표기)

3-2. 어린이집 이외에 추가로 돌봐주는 사람(또는 기관)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0원으로 표기

※ 정기적으로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2021년 1분기 기준(1~3월까지) 월 평균액 기입

(범위: 0만원~1000만원)

3-1. 돌봐주는 사람(또는 기관)	3-2. 월평균 지불비용(만원)
☐ ① 조부모/친인척	
☐ ② 민간 베이비시터 (파출부, 가사도우미 포함)	
☐ ③ 아이돌보미(정부 지원)	
☐ ④ 이웃	
☐ ⑤ 기관(구체적으로:)	
☐ ⑥ 방문(학습)서비스(구체적으로:)	
☐ ⑦ 기타(구체적으로:)	

※ 귀하께서 영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이하 각 항목별로 기입해주십시오(문 4~5번).

4. 보육 및 돌봄서비스에 지출되는 비용(어린이집, 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조부모 등)은 월평균 총 얼마입니까?

4-1. 귀하는 문 4번의 보육 및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이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해당 비용의 부담 정도는 이하 ①~④번 중에서 응답해주십시오.

5. 보육서비스 이외에 육아용품 등 물품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5-1. 귀하는 문 5번의 양육비용 구입 비용이 얼마나 부담이 되십니까?

※ 해당 비용의 부담 정도는 이하 ①~④번 중에서 응답해주십시오.

구분	월 평균 비용	문 4-1. 문5-1. 비용 부담 정도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 ② 별로 부담되지 않음 ☐ ③ 약간 부담됨 ☐ ④ 매우 부담됨
4. 보육 및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원	
5. 양육용품 등 구입 비용	()원	

6. 귀하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 이하 <보기> 중에서 이 자녀(24개월 미만)의 양육 시 어려움 정도를 감안하여 1순위와 2순위를 각각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2순위

〈보기〉

- ☐ ① 자녀의 양육비용이 많이 듭니다
- ☐ ②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이 없음
- ☐ ③ 집 근처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은 있으나 믿을 만한 기관이 없음
- ☐ ④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음
- ☐ 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직장내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어려움
- ☐ ⑥ 종일 동안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
- ☐ ⑦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잘 모름
- ☐ ⑧ 기타(구체적으로: _____)

7. 귀하는 이 자녀(24개월 미만)의 출산 또는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예 ☞ 문 7-1번으로
- ☐ ② 아니오 ☞ 문 8번으로

7-1. (문 7번에서 ①번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직장을 그만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가장 주된 이유를 한 가지만 응답해주시시오.

- ☐ ① 육아휴직을 희망하였으나 실제 이용하기 힘들어서
- ☐ ②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 ☐ ③ 직장 여건이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 ☐ ④ 애초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해서
- ☐ ⑤ (부모가) 직접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어서
- ☐ ⑥ 기타(구체적으로: _____)

8. 귀하가 이 자녀를 직접양육하기를 희망하는 시기는 자녀가 몇 개월까지입니까?

직접양육을 희망하는 자녀 연령	() 개월 까지 (범위: 1~84개월)
------------------	-----------------------------------

9. 귀하는 이 자녀가 어린이집 입소하는 데 적합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어린이집 입소에 적합한 자녀연령	() 개월 (범위: 0~84개월)
-------------------	--------------------------------

II. 0~1세아(0~23개월) 육아지원 요구

10. 귀하는 0~1세아(24개월 미만)에 적합한 정부의 비용지원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0세아, 1세아 각각 아래 <보기>에서 1, 2순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보기 >

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육아휴직 시는 휴직급여 외 추가로 현금지급)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민간 육아도우미 등)이 돌볼 경우 비용지원
 ④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⑤ 시간제보육(일시돌봄)시설 이용 시 비용지원
 ⑥ 기타(구체적으로:)

자녀 연령	1순위	2순위
15. 만 0세(0~11개월)		
15-1. 만 1세(12~23개월)		

11. 귀하는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0~1세아(24개월 미만)를 누가 돌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세아, 1세아 각각 아래 <보기>에서 1, 2순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보기 >

① 부모가 직접돌봄(육아휴직 포함)
 ② 가정에서 혈연(조부모/친인척)이 돌봄
 ③ 가정에서 비혈연인력(아이돌보미 등)이 돌봄
 ④ 어린이집 이용
 ⑤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시차출근제 활용하여 돌봄
 ⑥ 기타(구체적으로:)

자녀 연령	1순위	2순위
16. 만 0세(0~11개월)		
16-1. 만 1세(12~23개월)		

12. 귀하는 0세아(0~11개월) 양육을 위해 이하 제도는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 도움 정도를 ① ~ ⑤ 표기함,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점수가 높음

구분	①	②	③	④	⑤
	도움 정도 낮음	←---		---→	도움 정도 높음
1. 0~2세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9:00~16:00)					
2. 0~2세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16:00~19:30)					
3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19:30~24:00)					
4. 시간제보육(월~금, 9:00~18:00)					
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7. 육아종합지원센터					
8. 공동육아나눔터					
9. 육아휴직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 시차출근제					
12. 배우자 출산휴가					
13. 아동수당					
14. 가정양육수당					

제도별 지원내용		
제도 및 사업명(문 12번)		지원내용
4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 (6개월~36개월 미만) 일시돌봄(월~금 9:00~18:00 지원 ※ 시간 당 이용료 1,000원
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아이돌보미 가 정으로 방문하여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목욕 등 돌봄서비스 제공 ※ 기본 3시간 이상 신청 가능하며 평일 주간과 야 간 등에 이용가능, 월 200시간, 이용요금 시간 당 10,040원단, 야간 이용시는 요금 할증됨)

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 가능(연간 840시간, 시간당 10,040 원, 돌봄아동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 시는 시간 당 13,050원)
7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부모에게 육아종합서비스(상담,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부모참여 놀이공간 제공 등) 제공
8	공동육아나눔터	취학전후 아동 및 부모에게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 이 지원(자녀 돌봄 공간, 양육경험 및 정보 교류,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
9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80~150만원), 나머지 9 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70~120만원)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 대상 부모 모 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 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50만원)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최 대 1년간 주당 15시간~35시간 단축 허용, 최초 5 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 80%(50~150만원)
11	시차출근제	출퇴근시간 조절 가능
1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 유급 10일 (상한액 382,770원)
13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14	가정양육수당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20만원 지급

13. 귀하는 1세아(12~23개월) 양육을 위해 이하 제도는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 도움 정도를 ① ~ ⑤ 표기함, 도움 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점수가 높음

구분	①	②	③	④	⑤
	도움 정도 낮음	←---		→--	도움 정도 높음
1. 0~2세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9:00~16:00)					
2. 0~2세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16:00~19:30)					

3.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19:30~24:00)					
4. 시간제보육(월~금, 9:00~18:00)					
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7. 육아종합지원센터					
8. 공동육아나눔터					
9. 육아휴직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 시차출근제					
12. 아동수당					
13. 가정양육수당					

Ⅲ.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도움 정도 인식

14. 귀하는 정부에서 현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시기는 이하 중 언제라고 판단되십니까?

※ 각 연령별로 중요도를 ① ~ ⑤ 표기, 중요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점수가 높음

구분	①	②	③	④	⑤
	중요도 낮음	←---		---→	중요도 높음
1. 임신 및 출산 시기					
2. 영아기: 0~1세(0~23개월)					
3. 영아기: 1세~2세(24~35개월)					
4. 유아기(만 3~5세 / 36개월~초등학교 입학 이전)					
5.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생)					

15. 정부가 0~1세아(0~23개월)를 대상으로 영아수당을 지급한다면, 해당 연령의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 영아수당은 0~1세아에게 현재 지급되는 아동수당(10만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임.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부모가 직접 양육할 시에는 양육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① 예 ☞ 문 16번으로
☐ ② 아니오 ☞ 문 15-1번으로

15-1. (문 15번에서 ②번에 응답한 경우) 영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도 영아(0~23개월)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 ①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시간제보육시설(일시돌봄)이 집 근처에 없어서
- ☐ ② 직접양육하고 싶으나 집 근처에 육아종합지원센터(아이사랑놀이터 등)이 부족해서
- ☐ ③ 육아휴직을 희망하나 휴직급여가 낮아서 활용하기 어려움
(SCRIPT: SQ3=(1), SQ6=(3) 응답자들에게만 제시)
- ☐ ④ 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집근처에 없어서
- ☐ 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이용하기 쉽지 않아서
- ☐ ⑥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고 싶으나 비용이 부담되어서
- ☐ ⑦ 기타(구체적으로:)

16. '0~1세아(0~23개월)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은 귀 자녀(24개월 미만)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하 각 항목별로 도움 정도를 판단해주시시오.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	
영아수당(월 50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양육하는 경우에는 육아용품 구입 비용으로 활용	
※ 현행: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보육료 지원(47만원) + 기관보육료 50만원	
-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 지원(0세아: 20만원 / 1세아: 15만원)	
시간제보육,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소득기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변경후: 모든 0~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으로 어린이집 이용료(부모부담 보육료)지급함	
-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10~20만원)은 폐지되고, 영아수당을 지급함	

구분	①	②	③	④	⑤
	도움 정도 낮음	←---		---→	도움 정도 높음
1. 자녀양육비 부담이 완화 된다					
2. 영아기(24개월 미만) 자녀의 양육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부모 직접양육 등)					

3. 일하는 어머니(母)의 경력유지 또는 경력단절이 예방된다					
4. 자녀 (추가)출산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5. 아이가 안정적으로 발달 및 성장할 수 있다					

17. 귀하는 0~1세아(0~23개월) 영아수당 도입으로 이하 제도가 변화하는 데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구분	①	②	③	④	⑤
	동의 정도 낮음	←---		---→	동의 정도 높음
1.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0~1세아에게 동일한 금액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2. 영아수당은 돌봄서비스(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 이용료로 활용하고, 부모가 자녀를 직접양육하는 경우는 양육비용으로 활용한다					
3. 영아수당은 0~1세까지 지원하고, 2세아 부터는 아동수당(적정액)만 지급한다(양육수당 폐지)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 이용비용은 기존대로 지급					
4. 어린이집 연장보육(오후 4시반부터 7시반까지)을 이용할 경우 일부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					
5. 자녀수가 많을수록 영아수당액을 높게 지급한다(첫째 자녀는 동일하게 지급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수당액이 더 높아짐)					

18. 귀하는 0~1세아(0~23개월) 이하 자녀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위해 적합한 영아수당액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적합한 영아수당액	월 () 만원 (범위: 1만원~1000만원)
-----------	----------------------------------

19. 0~1세아(0~23개월) 영아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기를 희망하십니까?

☐ ① 모두 바우처로 지급 문 19-1번으로

※ 바우처 방식: 이용가능한 서비스 금액 등이 표기된 이용권을 의미함.
구매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 종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② 모두 현금으로 지급

☐ ③ 일부 금액은 바우처 +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 ➡ 문 19-1번으로

※ 바우처 방식: 이용가능한 서비스 금액 등이 표기된 이용권을 의미함.
구매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 종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④ 기타(구체적으로:)

- 19-1. (문 19번에서 ①, ③번에 응답한 경우) 0~1세아(0~23개월) 영아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할 경우, 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 시간제보육(일시돌봄) 이외에 사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용 시에 허용이 필요한 정도를 ①~⑤번으로 표기해주시요.

※ 바우처 방식: 이용가능한 서비스 금액 등이 표기된 이용권을 의미함.

구매하는 서비스 또는 상품 종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구분	①	②	③	④	⑤
	필요도 낮음	←---		→--	필요도 높음
1. 조부모 손자녀 돌봄 비용					
2.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료					
3. 민간이 운영하는 육아시설 이용료 (예시: 키즈카페 / 문화센터 등)					
4. 사교육비(예시: 방문학습서비스)					
5. 육아종합지원센터(예시: 아이사랑 놀이터 등) 프로그램 실비 이용료 (이용자 부담 비용)					
6. 장난감/도서 대여료					
7. 온라인 (육아용품) 구매 비용					
8. 의료비(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 한 비용)					

Ⅳ. 응답자 및 자녀의 일반적 특성

※ 응답 가구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연령	만 ()세 (범위: 16세~60세)	
DQ2.	귀하의 성별	☐ ① 남	☐ ② 여
DQ3.	귀하의 최종학력	☐ ① 고졸 이하	☐ ② 전문(3년제)대학 졸
		☐ ③ 4년제 대학 졸	☐ ④ 대학원 이상

DQ4.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 | |
|--------------------------------------|--------------------------------------|
| ☐ ① 149만원 이하 | ☐ ② 150~199만원 |
| ☐ ③ 200~249만원 | ☐ ④ 250~299만원 |
| ☐ ⑤ 300~349만원 | ☐ ⑥ 350~399만원 |
| ☐ ⑦ 400~499만원 | ☐ ⑧ 500~599만원 |
| ☐ ⑨ 600~699만원 | ☐ ⑩ 700~799만원 |
| ☐ ⑪ 800만원 이상 | |

DQ5. 귀하의 가구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까?

-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함
- ☐ ② 차상위계층에 해당함
- ☐ ③ 해당하지 않음
- ☐ ④ 모름

DQ6.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 | |
|--|------------------------------------|
| ☐ ① 대도시(광역시) 지역 | ☐ ② 중소도시 지역 |
| ☐ ③ 농산어촌(군 지역) 지역 | |

부록 2. 심층면담 질문지: 부모용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도와 도움정도 인식_심층면담 질문지(부모용)

- 조사내용: 0~1세 자녀 양육실태 및 애로사항, 영아기 자녀의 희망 양육방식,
- 진행 절차/소요 시간: 취지 및 주요 질문내용 소개 / 약 90분 소요
- ※ 개인정보/음성녹음: 사전협조 요청

1. 아동 및 가구특성 / 양육 실태 전반
1) 자녀 및 가구특성은 어떠합니까? - 자녀특성: 자녀 연령(막내 자녀 연령 및 출생순위), 총 자녀수 - 가구특성: 맞벌이 가구 여부(근로특성: 시간제/교대제/야간근로 등 포함/평균 근로시간), 모(母)의 경력단절 경험 및 사유, 재취업 의향 여부 및 해당 요건
2) 0~1세아 자녀의 양육 실태는 어떠합니까? - 주 양육자: 어린이집 이용 등 - 어린이집 이용 시: 최초 이용 시기 및 사유와 적정 시기 부합성, 서비스 이용시간과 보육 수요 충족 여부, 현재 이용기관의 만족도 전반 및 불만족 사유, 개선 요구 - 어린이집 미이용 시: 기관 미이용 사유, 희망 이용 시기(자녀 연령) 및 기관유형, 어린이집 입소 대기 현황, 이외 육아지원서비스(시간제보육/아이돌봄서비스/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경험 - 자녀돌봄 시 지원인력 여부: 긴급보육 시 대응 방안(조부모, 이웃 등 도움 정도)
3) 추가 출산 의향이 있습니까? - 추가출산 의향 및 추가출산 포기 사유, 희망자녀수 - 출산 연기 또는 포기 경험 및 그 사유

2. 0~1세 자녀의 양육 시 애로사항 및 요구
1) 자녀연령/가구특성(및 근로특성)에 따른 양육 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타 연령 대비 영아기 자녀양육의 어려움 - 가구특성 일반: 가구소득/자녀 수에 따른 돌봄 시 애로사항 -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 한부모가족 등 - 근로특성에 따른 자녀 돌봄 시 애로사항: 맞벌이 가구 및 근로특성 등

2) 0~1세 자녀의 적합한 양육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0~1세아 자녀의 적합한 양육방식 및 해당 이유: 1) 부모 직접양육(육아휴직), 2) 기관(어린이집) 이용(적정 아동연령)
- 0~1세아 자녀의 희망하는 양육방식 및 이유
- 0~1세아 자녀에 대한 적합한 비용지원 방식 및 해당 이유: 1)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현금지원, 2) 비혈연 돌봄인력이 보육할 경우 비용지원, 3)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 0~1세아 부모가 모두 일할 경우 적합한 육아지원 방식: 1) 부모 직접돌봄(육아휴직의 적정 아동연령) 지원, 2) 유연근무제도(탄력근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차출근) 활용성 제고, 3) 가정에서 혈연/비혈연 돌봄인력(아이돌봄서비스/민간 베이비시터) 보육시 비용지원, 4)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3) 0~1세아의 양육을 위해 이하 제도는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 연령 변화에 따른 제도 이용 의향 변화
- 연령별 서비스 병행 이용 의향

제도별 지원내용		
제도 및 사업명		지원내용
4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36개월 미만) 일시돌봄(월~금 9:00~18:00 지원) ※ 시간 당 이용료 1,000원
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아이돌보미 방문
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 방문
7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부모에게 육아종합서비스(상담,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부모참여 놀이공간 제공 등) 제공
8	공동육아나눔터	취학전후 아동 및 부모에게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자녀 돌봄 공간, 양육경험 및 정보 교류,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등)
9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80~150만원), 나머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70~120만원)지급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 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지급(상한 250만원)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35시간 단축 허용,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 80%(50~150만원)
11	시차출근제	출퇴근시간 조절 가능
12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 유급 10일(상한액 382,770원)
13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14	가정양육수당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20만원 지급

구분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거의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1. 0~2세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9:00~16:00)					
2. 0~2세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16:00~19:30)					
3. 시간연장형보육 지원(19:30~24:00)					
4. 시간제보육(월~금, 9:00~18:00)					
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6.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7. 육아종합지원센터					
8. 공동육아나눔터					
9. 육아휴직					
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1. 시차출근제					
12. 배우자 출산휴가					
13. 아동수당					
14. 가정양육수당					

3. 영아수당 도입의 필요도 및 도움 정도 인식
1) 타 연령 대비 0~1세아 가구에 대한 현금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유 -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지원이 필요한 아동연령 ※ 현행: 7세 미만: 10만원 아동수당 / 기관 미이용 가구: 10~20만원(0세아) 양육수당
2)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통합적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십니까? - 희망하는 양육방식과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 인식: 경력단절 경험 여부 및 도움정도 등 -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이유 및 전체조건 ※ 통합적 지원: 영아수당(월 50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고, 직접양육 시는 양육비용으로 활용 ※ 현행: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차등지원 -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 보육료 지원(47만원) + 기관보육료 50만원 - 가정양육 시: 양육수당 지원(0세아: 20만원 / 1세아: 15만원) 시간제보육,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소득기준),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 이하 각 차원별 영아수당의 도움 정도(5점 척도)를 평가, 해당 사유

세부 항목	① 전혀 도움 안됨	② 거의 도움 안됨	③ 보통	④ 도움됨	⑤ 매우 도움됨
1. 양육비 부담 완화					
2. 영아기 자녀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부모 직접양육 가능성 제고 등)					
3. 모(母)의 경력유지, 경력단절 예방					
4. (추가)출산의 포기 및 지연 예방					
5. 아동의 안정적 성장 및 발달 보장					

3) 영아수당 도입에 따른 이하 제도 변화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동의/반대 해당 이유

세부 항목	① 전혀 동의 하지 않음	② 동의 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1. 어린이집 이용과 상관없이 모든 0~1세아에게 동일 한 액수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2. 영아수당은 돌봄서비스(어린이집/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용 시는 해당 이용비용으로,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 할 시는 양육비용으로 활용한다				
3. 영아수당은 0~1세까지 지원하고, 2세아 부터는 아 동수당(적정액)만 지급한다(양육수당 폐지)				
4. 어린이집 연장보육 이용비용이 영아수당보다 많은 경우는 일부 비용을 부모가 부담한다				

4) 영아수당의 희망하는 지급방식과 해당 사유는 무엇입니까?
- 바우처 또는 현금 및 해당 사유

5) 희망하는 양육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영아수당을 지급할 경우 적합한 연 령
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 0~1세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유
- 0~1세아 아닌 경우 적정 연령 및 해당 사유

6) 0~1세아를 희망하는 방식으로 양육하기 위해 적합한 영아수당액은 얼마라고 판단되십니까?
- 30~50만원까지 확대 시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가능 여부 인식

4. 이외 육아지원 인식 및 요구
1)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은 무엇이라고 판단되십니까?
2) 0~1세아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외 연령대와 차별화된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십니까?
3) 자녀를 둔 모든 가구에 근로 여부 등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십니까?
4) 0~1세아 대해서는 전액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십니까?

〈부모용〉 심층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보다 나은 육아지원정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니,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련번호: 부모 () 번

D1. 연령	만 ()세					
D2. 성별	☐ ① 남		☐ ② 여			
D3. 최종학력	① 고졸 이하 ③ 4년제 대학 이상		② 전문(3년제)대학 졸 ④ 대학원 이상			
D4. 직업	☐ ① 사무직 ☐ ③ 전문직 ☐ ⑤ 전업주부 ☐ ⑦ 기타		☐ ② 생산직 ☐ ④ 서비스 및 판매직 ☐ ⑥ 무직			
D5. 취업 여부 ※ part-time 등 포함	☐ ① 예		☐ ② 아니오			
D5-1. 취업 상태	☐ ① 자영업자(혼자 운영) ☐ ③ 상용근로자(정규 출퇴근) ☐ ⑤ 일용근로자 ☐ ⑦ 기타()		☐ ② 고용주(종업원 등) ☐ ④ 임시근로자 ☐ ⑥ 무급가족종사자			
D5-2. 주당 평균 근로시간	주당 평균 () 시간					
D6. 가구특성 (해당 항목 모두 표기)	구분		해당 여부			
			☐ ① 예	☐ ② 아니오		
	다문화가정		① ②			
	한부모/조손가정		① ②			
	장애부모 가정		① ②			
	장애아 자녀를 둔 가정		①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① ②			
	차상위계층 가구		① ②			
	북한이탈주민 가구		① ②			
	맞벌이 가구(부부 모두 1일 8시간 이상 근로)		① ②			
D7. 자녀 특성	구분	연령 (만)	기관 이용 여부		재학	
			①미이용 ③유치원	②어린이집 ④기타	①초등 ③고등	②중등 ④대학
	첫째 자녀	() 세				
	둘째 자녀	() 세				
	셋째 자녀	() 세				
	넷째 자녀	() 세				
	총 자녀수	() 명				
D8. 거주지역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D9. 월평균 가구소득	☐ ① 149만원 이하 ☐ ③ 200~249만원 ☐ ⑤ 300~349만원 ☐ ⑦ 400~499만원 ☐ ⑨ 600만원 이상		☐ ② 150~199만원 ☐ ④ 250~299만원 ☐ ⑥ 350~399만원 ☐ ⑧ 500~599만원 ☐ ⑩ 700만원 이상			

심층면담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